

교회법

(Book of Forms)

캐나다 장로교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2021 년 개정판

차 례

	섹션
머리말 (Preface)	
역사적, 신앙고백적 기초 (Historical and Confessional Base)	001-003
교회 의결기관의 일반 규정 (General Rules for Church Courts)	004-104
당회 (The Session)	105-138
회중과 관리 (The Congregation and its Management)	139-173
다이어코널 사역단 (The Order of Diaconal Ministries)	174-175
노회 (The Presbytery)	176-258
대회 (The Synod)	259-276
총회 (The General Assembly)	277-312
사법 절차 (Judicial Process)	313-443
기준과 가입 (Standards and Subscription)	444-451
부록(APPENDICES)	섹션
양식, 회의록 예시 등 (Sample Forms, Minutes etc.)	A
교단 기구 관리 규정 (Regulations governing agencies of the church)	B
신탁 양도 문서 (Trust Deeds)	C
디아코날 사역자 협의회 (Diaconal Ministries, Council of the Order of)	D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선언 (Declaration of Faith Concerning Church and Nation)	E
상응하는 보조 신조들 (Parallel secondary standards)	F
기록보관소 (Archives)	G

법률 용어 정의 (Definitions of legal terms)	H
회중과 협력하는 목사 (Minister in association with a congregation)	I
목사후보생 목회 돌봄에 관한 절차 (Procedure in the pastoral care of candidates)	J
대회 해산 절차 (Procedures for the dissolution of a synod)	K
동성결혼 및 LGBTQI 안수에 관한 정책 (Policy Regarding Same-sex Marriage and the Ordination of LGBTQI Persons)	L

색인 (INDEX)

선언법 (DECLARATORY ACTS)

서 문

1933 년 판

캐나다 장로교회는 1875 년에 연방의 여러 장로교회가 통합되었을 때, 완전한 교회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규모 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듬해 이 위원회는 교회법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고, 특별 위원회가 임명되어 준비된 내용을 다음 총회에 제출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지 벨 목사(George Bell, L. L. D.)가 맡았습니다. 두 차례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후, 1878 년 총회는 위원회를 약간 확대하여 “교회법 (*Book of Forms*)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회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정한 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출판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해 말에 이 책은 출판되었고, 1879 년 총회에 제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1883 년 총회는 교회법의 첫판이 소진되자 개정 작업을 위한 위원회를 임명하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존 랭 목사(Rev. John Laing, D.D.)를 위원장으로 하여 매해 개정 경과를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1887 년에 개정 교회법은 노회들의 검토를 위해 노회로 보내졌고, 이후 접수된 비판과 제안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1889 년 총회는 “현재 총회에 제출된 교회법을 교단의 회원, 직분자, 의결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로 승인하고 채택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1900 년 총회는 로버트 캠벨 목사(Rev. Robert Campbell, D.D.)를 위원장으로 하는 또 다른 개정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교단의 현재 헌법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변경도 하지 말 것, 즉 교회법을 노회로 보내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회 및 노회의 서기들과 소통하며 제안을 요청했고, 1902 년 총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후 “법제도의 발전과 교회의 관행 변화로 불가피해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책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3 판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러 차례 재인쇄되었지만 1925 년에 소진되었고, 그해 총회는 또 다른 개정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주어진 지침 중에는 “개정이 완료되면 총회의 권위를 가지고 발행되며 교단의 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입장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법이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에 겪은 오류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제안이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제안이 교회의 역사적 입장이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고, 새 판본의 긴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초안은 1928 년과 1930 년에 다시 검토를 위해 노회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비판과 제안이 접수되어 신중하게 검토되었고, 대다수 노회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 교회법의 지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1932 년 총회는 위원회에 “캐나다 장로교회의 승인된 관행을 요약하고, 그동안 캐나다 장로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제정한 구체적 규정으로 보완하며, 교단의 모든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단 내 직분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그리고 “교단의 법과 관행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교회법을 완성하고 출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식집의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칙에 기초해 교회법의 역사적 성격과 발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색인과 함께 새로운 배열이 이 책을 참조해야 하는 직분자 및 회원들에게 더욱 유용한 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록에는 여러 가지 예시 서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회의록 예시는 오래된 자료에서 가져온 것으로, 정확히 따라야 하는 모델이 아니라 본문에 구현된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예시로서 제공되었습니다.

부총회장인 스투어트 C. 파커 박사 (Dr. Stuart C. Parker)와 다른 위원회 위원들, 또한 노회의 여러 서기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의 충실한 협력이 없었다면 이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개정된 교회법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업무를 질서 있게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발행합니다.

T. 워들러 테일러 (T. WARDLAW TAYLOR)

위원장

고더리치, 온타리오.

February 1, 1933

2006 년 개정판

교회법의 주요 개정은 1981 년, 1993 년, 2002 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81 년 개정판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표현(inclusive language)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며, 낱장 형식을 사용한 최초의 판으로 향후 개정이 더 쉬워졌습니다. 1993 년 개정판은 많은 변경 사항을 통합하고 수년에 걸쳐 교회법에 나타난 언어와 구조의 불일치를 수정했습니다. 이 해에는 새로운 대형 판형도 도입되었습니다. 2002 년 개정판에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 용어를 삭제하는 등 많은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2006 년 개정판에는 이전에 교회 권징으로 알려진 사법 절차 부분을 완전히 수정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역사적, 신앙고백적 기초

캐나다 장로교회

1. 캐나다 장로교회는 1560 년에 개혁된 스코틀랜드 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1875 년에 재결합한 네 개의 교단은 스코틀랜드의 분리 교회(Secession Church) 가운데 한 계열의 교단의 지명 하에 구성된 노회와 대회에서 기원하였다.

1. 1 다음의 노회와 대회가 포함된다: 1786 년 연합총회(Associate Synod, 버거파 Burgher)에 의해 조직된 트루로(Truro) 노회, 1795 년 연합반대총회(General Associate Synod, 안티-버거파 Anti-burgher)에 의해 조직된 픽투(Pictou) 노회, 1818 년 연합총회(Associate Synod, 버거파)에 의해 조직된 캐나다 노회(Presbytery of the Canadas), 1831 년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계된 캐나다 장로교회 대회(Synod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Canada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of Scotland), 1833 년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계된 노바스코샤 대회(Synod of Nova Scotia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of Scotland), 1833 년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계된 뉴브런즈윅 노회(Presbytery of New Brunswick in connection with the Church of Scotland), 그리고 1834 년 스코틀랜드 분리교회 연합총회(Associate Synod of the Secession Church in Scotland)와 연계된 캐나다 선교 노회(Missionary Presbytery of the Canadas).

2. 1875 년 연합의 기초(Basis of Union)에 따라, 캐나다 장로교회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오류 없는 유일한 규범으로 수용한다. 또한 1647 년 스코틀랜드교회 총회가 승인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주요 부속 신조(principal subordinate standard)로 채택한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치리와 예배는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치리 양식서(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 Government)"와 "공예배 지침서(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로교회에서 인정된 원칙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

(선언법(Declaratory Act): A&P 2001, p.239, 41)

3. "장로교회의 원칙과 실행"은 특히 1578 년 규율집 제 2 권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을 인정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헌법, 법률, 제도 및 직분을 임명하셨으며, 교회의 치리와 권징은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구별된 직분자들에 의해 집행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직분자들은 당회(session), 노회(presbytery), 대회(synod), 총회(General Assembly)로 모여 숙의하고 협력하되, 인적 위계가 아닌

구조적 위계를 통해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권위는 봉사적이며 선포적(ministerial and declarative)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바를 선포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교회법을 적용함을 인정한다.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문

전문은 부록 E 를 참조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FOI VIVANTE, 산 믿음)

캐나다 장로교회의 하위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www.presbyterian.ca 에서 볼 수 있다. (A&P 1998, p. 42, A&P 2015, p.45).

병행 보조 신조

전문은 부록 F 를 참조하십시오.

교회 의결기관의 일반 규정

기본 원칙

4. "모든 폭정의 기회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의 교회의 임원들이 "형제의 상호 동의와 권한의 평등으로, 각자의 직무에 따라 다스릴" 것을 원한다. (교리와 규율집 II, 4)

4.1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칙은 의결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의결기관의 모든 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4.2 모든 긴급 회의의 경우 각 회원은 처리할 사안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4.3 의결기관이 구성원을 나누거나 의결기관의 업무 중 어느 부서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책임을 면제시키는 방식으로 기능을 분배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의결기관 자체가 해당 부서와 관련하여 항소심 관할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4.4 그러나 의결기관은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의결기관" 또는 위원회에 수시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보통 위임 의결기관에서 선발되며, 캐나다 장로교회의 목사,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단 정회원 또는 당회에서 활동하는 장로들로 구성된다.

회의

5.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결기관은 반드시 (또한 당회도 필요하다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음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교리와 규율집 VII, 3)

5.1 정기적인 회의 사이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의장이 소집한 특별 회의(이하 긴급회의라고 함. 190 항 참고)는 이 규칙의 예외이다.

6. 의결기관은 의장에 의해서만 소집될 수 있다.

6.1 서기는 "의장의 명령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회람공문에는 이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의결기관은 상위 의결기관의 허가 없이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만 회의를 열 수 있으며, 허가를 요청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회 직전 또는 직후의 노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선언법 A&P 1986, p. 292, 37 참조.)

8. 의결기관은 상위 의결기관의 허가없이 의결기관의 요청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상위 의결기관에 출석할 수 없다.

8.1 당회는 총회 회의 중 회의를 열수 있는 부재 허가가 있으며, 그러한 회의가 열리는 경우 총대인 회의 구성원이 총회에서 돌아와 회의록을 확인하였을 때 총회 참석하지 못한 동안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이의 또는 이의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81, 382 항 참조).

8.2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회의 중일 때 의결기관의 허가 없이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속할 수 없다.

9. 교회 의결기관의 모든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며, 이 개회와 폐회는 기록되어야 하며 출석도 기록되어야 한다.

10. 당회를 제외한 교회 의결기관은 공개 의결기관이지만, 발의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다.

10.1 이는 일반적으로 일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경우에 고려된다.

11. 모든 의결기관은 그 구성원의 출석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 (G.A. 1562, G.A. 1564)

11.1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석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의결기관은 결석한 구성원의 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구성원이 나타나지 않거나 결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의결기관은 모독 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불충분한 설명은 모독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권징의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345-355 항 참조).

11.2 안수 서약에 따라 모든 목사와 장로는 목사와 장로 후보자의 안수와 설교과 성례의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온전한 사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나의 예외는 목사와 시무 장로가 성소수자(미혼 또는 기혼)의 장로직 및 설교와 성례의 직무, 사역 안수, 취임 및 임직 참여에 대한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노회는 교단 법과 교리를 어길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없지만, 양심 문제에 대한 사안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이해, 전체 교단의 평화와 일치를 향한 관심과 민감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선언법 (A&P 2021, p. 55) 또한 (A&P 1981, p. 90, A&P 1989, p. 271, 65 참조)

12. 의결기관의 구성원은 허가 없이 출석을 철회해서는 안된다.(회의 중 나가서는 안된다)

12.1 2016 년 삭제됨

의장

13.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결기관에서는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구성원 중 한 명이 의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G.A. 1563)

13.1 노회, 대회, 총회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 의결기관의 의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13.2 의장이 설교와 성례의 목사가 아닌 경우, 의장은 설교와 성례를 위한 안수를 받은 목사 또는 목사들을 임명하여 해당 성례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

14. 당회 이상의 모든 의결기관에는 "소집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 동의에 의해" 자체 의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교리와 규율집 VII, 4)

14.1 따라서, 어떤 의결기관도 자유 선거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5. 의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판관일 뿐이며, "안건을 알리고, 투표를 집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교리와 규율집 VII, 4)

16. "당회를 주관하는 목사는" 당회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막거나" 교회의 법률과 관습에 동의하고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어떤 사안을 지지하는 논리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G.A. 1638)

16.1 이 규칙은 모든 의결기관에 적용된다. 의장은 의결기관이 요구할 경우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를 종료할 수 없다. 의장이 동의안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또는 상위 의결기관에 반대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81, 382 항 참조).

17. 의장(또는 위원회 소집권자)은 하나의 결정권(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7.1 당회를 제외하고, 의장은 의결기관 앞에서 사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의장석을 떠날 수 있지만, 이 경우 즉시 의장석으로 돌아와야 하며, 의장석에서만 적법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서기

18. 모든 의결기관은 자체적으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18.1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임기는 종신직이 아니다.

- 19. 노회, 대회 및 총회의 서기직은 의결기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맡을 수 있다.
- 20. 서기는 의결기관의 기록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 20.1 당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목사에게 세례 및 고백 교인 명부를 보관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명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기에서 목사로 이전된다.
- 21. 서기는 의결기관의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발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선언법: A&P 1991, p. 254, 37)
 - 21.1 서기는 의결기관의 권한 없이 발췌를 제공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 21.2 서기가 서신이나 문서에 서명할 때 그들의 공식 명칭을 덧붙이면, 이는 그 문서에 의결기관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2. 삭제됨

- 23. 상위 의결기관은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하도록 서기에게 지시하며, 이를 무시했을 경우 서기에게 책임을 묻는다.
- 24. 상위 의결기관의 서기는 하위 의결기관에서 서류를 받으면, 서류에 수령 날짜를 기재하고, 서류에 번호를 매기며, 서명 또는 이니셜로 이를 인증한다.

기록

- 25. 교회 의결기구에는 기록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관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A&P 1876)
- 26. 의장은 회의록이 의결기관의 진행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27.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27.1 각 페이지의 번호는 인쇄되지 않은 경우 숫자로 완전히 기재되어야 한다.
 - 27.2 모든 페이지는 서기가 서명하고, 각 회의록은 의장과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의장이나 서기가 사망하거나 물러난 경우, 회의록이 확정될 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당시 직무를 대행하는 의장이나 서기가 의결기관에서 서명해야 한다.
 - 27.3 각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인쇄되지 않은 경우 모두 수기로 명시해야 한다.
 - 27.4 모든 페이지에는 적절한 여백이나 해당 페이지 내에 색인이 있어야 한다.

27.5 각 페이지의 상단 여백에는 회의 장소와 날짜가 짧게 표시되어야 한다.

27.6 인쇄되지 않은 경우 모든 숫자는 문자와 숫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27.7 모든 삭제, 취소, 삽입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은 서기의 이니셜과 함께 여백에 기재되어야 한다.

27.8 의결기관의 회의록 사이에 불필요한 빈 공간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A&P 1876)

27.9 일반적으로 루즈 리프 형태의 페이지(타자, 등사, 인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작된 것)는 허용된다. 회의록은 잉크가 반대편에 비치지 않는 품질의 종이에 작성되어야 하며, 상업용 바인더의 견고한 고정 형태로 임시 제본되어야 한다. 링 타입의 제본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언법: A&P 1991, p. 254, 37)

27.10 당회 회의록은 복제할 수 없으며, 당회 서기가 단일 사본을 작성해야 한다. 당회가 동의할 경우, 의장과 서기의 감독 하에 모든 당회원에게 배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료만을 수록한 회의록 요약본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선언법: A&P 1988, p. 288, 35 및 1991 p. 254,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록의 사본 한부를 원본 회의록과 별도로 만들어 금고나 안전 금고에 보관하고, 5 년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이크로필름은 캐나다 장로교 기록 보관소에 기탁된다. 이후 추가 사본은 당회의 참관 아래 파기된다.

27.11 단락 사이의 일반적인 간격을 제외한 모든 빈 공간은 선으로 그어지고 서기의 이니셜이 표시되어야 한다.

27.12 회의록의 페이지가 100 페이지가 되면 상업적인 책 형태로 제본해야 하며,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이 이 상업적 제본에 완전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당회 회의록은 기밀 유지를 위해 서기의 면밀한 감독 하에 제본되어야 한다.

28. 회의록이 통과된 후, 상위 의결기관의 요청 없이는 의결기관 기록의 일부를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다.

29. 의결기관은 자신의 기록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상위 의결기관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음), 기록하지 않기로 결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야 한다.

30. 교회 의결기관은 모든 사법 절차에 대한 완전한 회의록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13-443 항 참조). 징계 소송 (345-380 항 참조)에서는 판결이 완료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때까지 영구

기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때 어떤 판결이든, 혐의, 답변, 판결 및 권징이 의결기관의 회의록에 기록되며, 모든 기타 기록과 회의록 (소환장, 소환장 송달 증명서, 의결기관의 조치 및 명령, 수집된 증거 포함)은 함께 첨부되어 봉인되고 서기가 별도로 보관한다.

31. 서기에 의해 별도로 봉인되어 보관되는 회의록과 기타 서류는 의결기관 앞에서 목록화되며, 해당 의결기관 또는 상위 의결기관의 명령 없이 봉인이 해제될 수 없다

32. 의결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명령된 모든 기록물(제본한 책)은 상위 의결기관이 매년 검토하고 인증해야 하며, 원한다면 노회는 2 년에 한 번씩 당회 기록을 인증을 위해 요청할 수 있다. 대회가 해산된 노회의 경우, 다른 노회가 총회에서 승인된 해산 계획에 따라 기록을 인증할 권한을 가진다. (선언법: A&P 1991, p. 254, 37, 259.2 항, 부록 K 참조)

토론의 절차 및 규칙

33. 의장은 정해진 시간에 의장석에 앉고, 회원들에게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며, 기도로 의결기관을 시작한다.

34. 의결기관이 처음 모였을 때,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자를 기록한다. 이후에 도착하는 회원들은 서기에게 보고하여 이름을 기재한다.

35. 마지막 정기 회의와 그 사이에 열린 모든 특별 회의의 회의록을 읽고, 승인된 후 의장이 서명한다.

36. 의결기관에 제출될 모든 보고서와 기타 서류는 서기가 수집한다. 그 후 회의록에서 발생한 사안과 새로운 사안으로 구성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여러 사안을 다룰 순서를 결정한다. 대회 및 총회에서는 서류가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36.1 "소수 보고서"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하나의 보고서만 있을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회의 한 명 이상의 회원은 "소수 관점"이라는 제목의 위원회 보고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이 항목은 권고안에 대한 수정 제안 또는 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된 수정안은 위원회 보고서가 검토 중인 시점에 권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는 한 의결기관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위원회의 보고서가 의결기관에 제출되고 보고서가 접수된 후, 의결기관이 구체적으로 지명된 비위원을 토론 중에 발언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선언법: A&P 1983, p. 250, 74)

37. 의장은 의결기관의 특별 규칙이나 결의에 의해 임명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를 지명한다. 소집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로 명명된 회원이 소집자가 되며, 그가 없을 때는 두 번째로 명명된 회원이 소집자가 된다.
38. 어떤 사안이 발의되고 의결기관에 상정된 경우, 해당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9. 발의가 의결기관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발언자는 발의와 관련된 사항에 집중해야 하며, 벗어나면 질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40. 모든 발의나 수정안은 작성 후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정식으로 재청될 때까지 논의할 수 없다.
41. 발의안이나 수정안이 서기의 손에 들어간 후 논의가 시작되면, 의결기관의 허가 없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42. 논의 중인 발의안은 의결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의결기관의 휴회, 토론 휴회, 발의안 상정, 위원회로 회부, 수정 또는 즉시 표결 요청을 제외한 다른 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발의는 이 순서대로 우선 순위가 있다.
43. 휴회 발의는 항상 허용되며, 토론없이 투표된다.
44. 상정된 발의안은 토론 없이 투표된다. 찬성으로 채택되면, 관련 주제와 발의 및 대기 중인 수정안이 목록에 남아 있으며, 이후 회의에서 의결기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로만 다시 상정할 수 있다
45. 발의안과 대기 중인 수정안은 심의와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선언적 행위 2001, p. 272-73, 21)
46. 발의안은 특정 단어 또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특정 단어 또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결의안의 단어 또는 문구를 대체함으로써, 또는 "결의되다"라는 단어 이후 모든 것을 삭제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다른 발의안을 대체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47.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해 추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를 처리하기 전에는 다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수정안이 채택되거나 거부되면, 다른 수정안을 하나씩 고려하고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수정안이 처리된 후,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해 "이 발의안을 이렇게 수정할 것인가 - 찬성 또는 반대?"라는 질문에 대해 투표한다. 찬성으로 결정되면, 주 발의안은 해당

수정안으로 수정되고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다른 수정안이 순서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 모든 수정안이 처리되면, "이 발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 찬성 또는 반대?"라는 질문에 대해 주 발의안에 대해 투표한다.

48. 즉시 표결 발의는 토론 없이 진행된다. 찬성으로 채택되면, 대기 중인 수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 없이 의결기관에 제출된다. 이후 추가 수정안이 없으면 주 발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주제가 처리된다. 발의가 거부되면, 해당 발의가 없었던 것처럼 토론이 계속된다.

48.1 즉시 표결 발의가 선언법 또는 경계법(Barrier Act)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경우, 통과하려면 2/3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

49. 의결기관의 결정을 재고하자는 발의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회의에서는 다룰 수 없으며, 이전 회의에서 이 발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도 접수할 수 없다. 재고 발의는 다수표를 던진 회원들만이 발의하고 재청할 수 있다.

50. 논의 중인 발의안이 두 개 이상의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두 명의 회원이 요청하면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한다.

51. 회원이 발언하려고 일어나면, 의장이 그 회원의 이름을 호명한다.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의장이 누가 먼저 발언할지 결정한다.

52. 모든 발언자는 의장에게 발언하며, 다른 회원에게 직접 발언할 수 없다.

53. 발언 중인 회원은 질서 요청이 있을 때, 특정 시간에 정해진 특별 주문이 있을 때 또는 의결 기관 휴회 시간을 제외하고는 발언을 중단받을 수 없다. 회의가 재개되면 중단된 발언자가 발언권을 가진다.

54. 의장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회원은 의결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 의장의 판결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서기에 의해서 제기되고 토론 없이 결정된다.

55. 한 회원이 발언 중 다른 회원이 보기에 불쾌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후자는 서기에 그 말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후, 발언자는 계속 발언할 수 있다. 삭제된 단어는 이후 의결기관에서 검토되고, 비난할 만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발언자는 징계 소송에 따라 처리된다 (345 항 참조). 의결기관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는 이러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이 권징을 받을 수 있다.

56. 회원은 의결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발의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도 한 번 이상 발언할 수 없으며, 설명이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주 발의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의자는 답변할 권리가 있다.

57. 투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수로 진행되지만, 의장은 회원들에게 일어서서 투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참석한 회원의 1/3 이 요구하면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주 발의안에 대한 최종 투표 시, 의결기관의 두 회원이 요구하면 출석 명부를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표 상태는 기록되지 않지만, 법원의 두 회원이 요구하면 기록될 수 있다.

58. 회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투표에서 제외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한 투표하지 않은 모든 회원은 다수결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59. 투표가 결정되면 의장은 문을 닫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토론이나 발언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수가 발견되면 투표를 다시 진행될 수 있다.

60. 토론의 자유를 더 높이기 위해, 의결기관은 특정 문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재청된 발의에 따라 전체 위원회로 전환될 수 있다. 정식 발의가 이루어지면, 소집자가 임명되고 의장은 의장석을 떠난다.

61.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심의된 발의안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으며, 회원은 어떤 발의안에 대해서도 두 번 이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의록이 작성된다. 위원회가 열리면 소집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결기관에 제출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휴회를 요청한다.

62. 2006 년 삭제 됨

63. 2006 년 삭제 됨

64. 절차상의 부정행위는 회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로 저지른 것으로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기관의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헌의안

정의

65. 헌의안은 교단 의결기관에 입법, 교리, 정책 또는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다른 행동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식 제안이다. 헌의안은 사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의결기관의 관할 내에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그 관할 내의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개시

66. 누구나 헌의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교단 내 의결기관에서 채택되어야 해당 의결기관에서 심의될 수 있다.

형식

67. 헌의안은 공손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이 제출되는 의결기관의 이름, 제안의 근거 및 제안 자체. 총회에 제출되는 경우, 다음 총회를 앞두고 특정 상임 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총회는 회부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부록 A-7a 참조).

전달

68. 의결기관이 헌의안을 채택한 후, 이를 제출할 의결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발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는 보통 총회에 전달된다. 노회 및 대회에서 오는 헌의안은 직접 총회에 전달될 수 있다. 당회의 제안은 노회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노회는 제안을 승인, 불승인, 또는 의견 없음 중 하나로 전달한다. 만약 형식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전달이 거부되면, 헌의안을 수정하여 재제출하거나 수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헌의안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섹션 381ff 참조).

69. 회부 요청을 포함한 총회에 대한 헌의안은 2 월 1 일까지 하위 의결기관 서기가 총회 서기들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부된 위원회가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회부 요청이 없는 경우 4 월 1 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총회는 이를 어떻게 심의할지 또는 어디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70. 4 월 1 일 이후에 접수된 헌의안은 다음 총회를 위해 보류된다. 단, 헌의안을 시작한 의결기관은 그동안 상임 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

정의

71. 청원은 청원자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교단 의결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요청이다. 청원은 교단 회원들이 교단 의결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청원은 사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섹션 324–392 참조).

개시

72. 청원은 하위 의결기관 또는 한 명 이상의 교단 회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청원은 청원자들을 감독하는 가장 낮은 의결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교단 회원의 청원은 먼저 그들의 당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형식

73. 청원은 공손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청원이 제출되는 의결기관의 이름, 청원의 근거 및 구체적인 요청. 청원은 상위 의결기관에 전달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단 해당 의결기관이 청원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74. 청원은 하위 의결기관의 절차를 상위 의결기관의 검토 아래에 두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시정 소송 및 항소가 이 목적으로 사용된다.

접수와 전달

75. 청원이 제출된 의결기관은 그것이 올바른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전달 요청이 없는 경우, 의결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상위 의결기관에 전달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 불승인, 또는 의견 없음 중 하나로 응답한다.

76. 청원자는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청원서 접수에 동의하는 모든 의결기관에서 청원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77. 의결기관이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청원자는 청원서를 반환해야 하며, 청원자가 청원서를 수정하여 재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종료된다. 청원자는 지위에 관한 383 항에 따라서 청원서 접수를 거절한 의결기관의 결정을 근거로 시정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관에서 시정 절차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만, 청원서는 직접 상위 의결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상위 의결기관은 청원서 접수하기 전에 하위 의결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8. 총회에 대한 청원서는 4 월 1 일 이전에 총회 서기들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79. 의결기관은 청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 청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출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록 A-7b 참조).

80. 삭제 됨

80.1 삭제 됨

80.2 300 항에 추가됨

하위 의결기관에서 상위 의결기관으로 사안 이전

81. 총회 아래의 모든 교회 의결기관의 결정은 다음 상위 의결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며, 다음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상위 의결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 일반 검토 및 통제; 참조; 항소; 또는 시정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 사안이 이렇게 이전되면, 하위 의결기관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81.1 그러나 이첩의 경우, 하위 의결기관은 이첩이 유지될지 여부에 대한 예비 질문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 검토 및 통제

82. 노회 및 대회 기록은 다음 상위 의결 기관에 의해 최소한 1 년에 한 번 검토되며, 당회 기록은 최소한 2 년에 한 번 노회에 의해 검토된다. 상위 의결기관은 언제든지 하위 의결기관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관이 기록을 보내지 않으면, 상위 의결기관은 즉시 또는 지정된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2.1 의결기관은 언제든지 그 관할권 내의 의결기관들에게 그들의 등록부, 명부 또는 다른 공식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2.2 상위 의결기관은 기록의 적법성, 기록의 정확성, 이전 인증서에 표시된 권고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총회의 모든 법령과 권고 사항의 실행에 대한 성실성을 조사한 후 기록을 인증하며, 필요시 불규칙성에 대한 메모와 함께 기록의 증명을 명령한다. 이러한 검토와 관련하여 상위 의결기관은 하위 의결기관에 특별 지침이나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불규칙한 기록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결정은 번복될 수 없으며, 사적인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문제를 되살릴 수 없다.

82.3 의결기관의 기록을 인준하기 전에, 의장은 다른 사람이 그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G.A., Act 9, 1700; 32 항도 참조) 심사하는 의결기관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그 기록에 의해 공개된 조치에 대해 심사하는 의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83. 하위 의결기관이 원할 경우, 그 기록에 대한 설명 또는 그 절차에 대한 변론을 들을 권리가 있다.

84. 심각한 태만이나 중대한 부정행위를 처리할 때, 하위 의결기관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여 그 행동에 대해 답변하도록 소환된다.

85. 기록을 인준하더라도, 검토 후 상위 의결기관이 하위 의결기관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알게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의결기관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86. 참고는 하위 의결기관이 상위 의결기관에 조언이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진술이다.

87. 특별히 어려운 문제나 미묘한 문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문제, 또는 구성원들이 의견이 크게 나뉘어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더 큰 단체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는 참고의 적절한 대상이다.

87.1 총회는 참고를 통해 추상적인 질문을 결정하지 않는다. (A&P 1895)

88. 참고는 전체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특정 사항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관은 참고를 하기 전에 가능한 한 자신의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상위 의결기관은 참고가 책임 회피가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89. 참고의 형식은 참고 결의의 발췌 기록으로 구성된다. 이 기록은 소송의 모든 절차에 대한 발췌 기록과 참고 사항을 적절히 심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참고는 이를 위해 임명된 위원이 진술한다. 판결을 위한 참고는 모든 당사자를 상위 의결기관에 출석시켜야 하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소환되어야 한다.

90. 상위 의결기관은 먼저 참고가 올바른 형식인지, 참고할 이유가 있는지 심의한다. 형식이 올바르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면 기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다. 참고가 승인되면, 소송의 당사자가 있으면 그들을 호출하고 들은 후, 상위 의결기관은 전체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하거나 참고에서 요구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며,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위 의결기관에 돌려보낸다

이의, 소장 및 항소

91. 질문에 대해 투표한 의결기관의 모든 회원은 그 판결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의를 기록할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판결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며, 이에 대한 권징을 피할 수 있다. 이의는 판결이 발표될 때 제출되어야 한다. 이의 사유는 그 시점 또는 10 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다. 적절한 언어로 된 경우 이는 회의록에 기재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결기관은 답변서를 준비하며, 이는 적절한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처리한다.

92. 소수에 투표한 회원들은 이의에 동조할 수 있으며, 당시 또는 다음 회의록이 확인된 후 다음 회의에서 이의를 기록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93. 하위 의결기관의 회원은 상위 의결기관에 소장을 제기하여 시정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381ff 항 참조). 항소할 권리가 있는 소송의 당사자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섹션 341, 376, 391 및 393ff 참조)

94. 2006 년에 삭제됨

95. 2006 년에 삭제됨

96. 의결기관은 소장 또는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상위 의결기관에서 일부 회원을 선임하여 상위기관에서 그 행동을 방어할 수 있다.

97. 2006 년에 삭제됨

98. 2006 년에 삭제됨

99. 2006 년에 삭제됨

100. 항소 이유가 경솔하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의결기관은 소장 또는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항소 될 수 있으며, 의결기관이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상위 의결기관의 권징을 받을 수 있다

101. 의결기관의 절차에 관한 형식상의 문제나 방법에 대한 소장은 절차를 중지시키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관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장이 모두 시정 소송을 통해 처리될 때까지 최종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섹션 381ff 참조)

102. 2006 년에 삭제됨

103. 2006 년에 삭제됨

104. 2006 년 에 삭제됨

당회

회원

105. 교회의 당회(이하 “당회”로 칭함)는 교회의 목사 또는 목사들 다이아코널 사역단의 활동중인 회원 (105.2항에 따라), 그리고 시무 장로로 구성된다.

105.1 목사는 이중 관계를 유지한다. 사법적 기능과 관련하여 목사는 당회의 구성원이므로 “목사와 당회”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목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목사는 노회의 집행자이며 따라서 당회와 구별됩니다.

105.2 목회지에 의해 사역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다이아코널 사역단의 회원은 해당 목회지에서 시무하는 기간 동안 당회의 구성원이다.

106. 장로 직분은 “목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역할”이며 직분의 자격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즉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법”에 근거한다. (교리와 규율집 2권 VI, 2, 3)

106.1 장로는 교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말과 행동, 사랑, 믿음과 순결에 있어 믿는 이들의 본보기”(딤후 4:12)가 되어야 한다.

106.2 안수받은 목사가 목회지가 없고 사법적인 징계로 인해 직분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 그 목사가 속한 교회에서 시무 장로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부록 I, 또한 선언적 해석: A&P 1978, 227쪽, 78 참조).

107. 개교회의 장로의 수는 제한할 수 없지만, 회중의 범위와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교리와 규율집 2권, VI, 2)

107.1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로의 수와 증원해야 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당회 결정에 속하지만, 이에 관해 당회에 청원할 권한은 교인에게 있다.

108. 합법적으로 부름받아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직분을 수행하는 장로는 종신 서임된다. 장로는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되거나 정직되지 않는 한 종신토록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가 장로 임기제를 도입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6년의 기간 동안 당회에서 장로 직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각 임기가 끝날 때마다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108.1 장로 임기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당회는 회중과 상의해야 하며, 노회에 그 의사를 통지하고 노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8.2 장로 임기제를 도입한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회의 1/3을 2년마다 선출해야 한다. 다른 임기제를 선택하는 당회는 일관된 시무 기간과 선출 빈도를 정해야 하며, 이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8.3 장로는 임기 중 언제든지 직분의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선언문 1985, 261, 52쪽)

의무 및 권한

관리와 감독

109. 장로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105.2항에 따라 교회의 선한 질서를 확립하고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목적으로 목사와 디아코널 사역단의 활동중인 회원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모든 당회원은 당회의 권한과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

109.1 당회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회원 및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당회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는 그러한 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109.2 당회는 114.6과 163조항에 따라 교회 건물 및 재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

109.3 당회는 장로의 선출과 인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회중의 투표로 장로 직분에 지명되거나 선출된 사람들의 자격을 판단하고, 자체 결의로 그들을 장로 직분에 인준하는 것은 당회의 의무이다. (섹션 132 ff 참조)

109.4 당회는 모든 정회원과 준회원의 이름을 장로에게 배정하며, 장로는 배정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목록을 보관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격려함으로써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109.5 당회는 고백교인 명부, 세례명부, 교회와 연결된 모든 정회원 및 준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14.4항 및 125-125.6항 참조).

회원자격과 목회적 돌봄

110. 당회는 고백교인이 될 사람을 찾고, 준비시키며 인준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목회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

110.1 당회는 고백교인 신청자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110.2 당회는 회원 입회를 위한 후보자 심사를 책임진다. 당회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성령을 성화하는 자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보자의 열정과 교회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한다. 당회는 사도신조에 명시되고 더 나아가 표현된 이 신앙고백 외에 어떤 교리나 특별한 자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

110.3 당회는 결의를 거쳐 고백교인 후보자의 입회를 허가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입회가 승인된 사람은 고백 교인 명부에 이름이 추가되고 교회의 모든 권한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신규 고백교인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110.4 당회는 세례 의식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이 성례전은 일반적으로 공예배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세례 받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신앙고백 및 고백 교인으로 입회 될 때, 유아에게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그리스도 교회의 고백 교인이고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을 때 집행되어야 한다. (A&P 1957, 230-31, 79쪽; A&P 1976, 396쪽, 47; A&P 1987, 245-46, 70, A&P 1993, 231-32, 54쪽)

110.4.1 공적 예배 외에 집행되는 목사의 긴급 세례는 당회에 보고하고 교회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110.4.2 목회자가 없는 목사는 세례가 이루어질 회중의 당회로부터 초청받지 않는 한 세례식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110.5 당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어느 교파에서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유지된 회원을 회중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이 있다. 신청자의 이름은 계류 중인 징계 문제 또는 교회 권한 정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법적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 증명서 또는 기타 교회 회원 자격과 관련된 증서를 받으면 고백교인 명부에 추가한다. 다른 교회에서 발급한 전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신청일로부터 5년이 넘은 날짜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공개적으로 신앙 재확인을 해야 한다.

110.6 당회는 회원 자격이 소멸된 회원으로서 복원을 신청하는 고백교인의 복원을 책임진다. 그러한 사람은 당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복원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재확인해야 한다.

110.7 당회는 고백교인과 준회원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다른 당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이관하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해당 회원이 이사한 지역의 당회 또는 노회에 연락하여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고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백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 증명서를 접수하는 당회에 전달하고, 고백 회원이 회원으로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거나 수령 당회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회원의 이름은 명부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된다. (섹션 125-125.6 참조).

110.8 당회는 고백 회원을 상담하고 격려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313-443항 참조), 회개와 신앙 회복에 근거하여 회원 자격을 복원함으로써 권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434ff항 참조).

110.9 장로는 당회에 사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당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가 다시 선출한 경우에만 당회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10.10 “명예 장로”라는 용어는 일정 기간 충실히 봉사한 후 은퇴하거나 당회에서 사임하는 장로에게 당회가 부여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더 이상 해당 당회의 선거인 명부에 없고 해당 당회에 다시 선출되지 않을 장로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예배

111. 목사는 노회의 임원으로서 공예배의 인도과 내용, 설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1.1 당회는 공예배의 시간과 형식을 정하고 특별 예배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지정된 시간을 결정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111.2 당회는 자발적이든 유급이든 오르간 연주자 및 기타 찬양 봉사 인도자의 임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당회는 그들이 치리의 대상이 되는 만큼 그들의 기독교적 성품과 행동을 확인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

112. 당회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112.1 당회는 안수 질문 서문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고백 교리 안에서 교회의 전체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 지원 및 평가할 책임이 있다. (447항 참조)

112.2 당회는 지역 사회를 향한 증거와 세상을 향한 선교에 있어서 전체 회중을 교육하고, 회원들이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격려할 책임이 있다.

112.3 당회는 교사와 인도자 모집, 임명, 훈련 및 지원, 기독교 교육에 사용될 자료와 프로그램의 선정 및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2.4 당회는 그들의 보살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에 내포된 의무와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공적 고백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112.5 당회는 자신과 자녀 또는 피후견인을 위해 세례식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112.6 당회는 부모들이 자녀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가정 생활을 장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안에서 자녀에게 계획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12.7 전문적인 교회 교육자를 필요로 하는 전임 또는 파트타임 직책을 만들 때, 당회는 관할 노회와 상의하고 직책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12.7.1 노회는 개교회에서 교회 교육자의 결정을 중재할 때 급여 및 혜택 보장이 총회가 정한 최소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12.7.2 제안된 전문 교회 교육자가 다이아코널 사역단의 정회원이 아닌 경우, 노회는 해당 교육자의 자격을 판단하고, 충족될 경우 교회 내 사역을 승인해야 한다.

112.7.3 모든 교회 전문 교육자는 다이아코널 사역이 수행되는 노회의 보살핌을 받고 그 노회의 권위를 따라야 하며, 노회는 그들의 행동과 다이아코널 사역의 정당한 해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지기직과 선교

113. 당회는 교회 내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청지기직과 선교에 대한 모든 측면을 책임진다.

113.1 당회는 세계 교회의 삶과 사역을 회중 앞에 알리고 기도와 봉사, 은사를 통해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113.2 당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그 밖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및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113.3 당회는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예배와 교육 및 교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도록 초대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준비한다.

113.4 당회는 교회가 회원들과 지역사회에서 재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당회는 이 목적을 위해 집사회를 선출하도록 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13.5 당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증거와 사역을 유지하고 전체 교회의 사명을 위해 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113.6 당회는 모든 수준에서 교회가 생활과 선교 프로그램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언제 어떻게 회중에게 제시할지를 포함한 청지기직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3.6.1 당회는 노회가 제출한 총회 예산(장로교인 나눔이라고 함)에 대한 할당액을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할당액에 대한 회중의 반응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113.6.2 당회는 총회 또는 교회의 다른 의결 기관이 지정한 헌금 외에 다른 종교적 및 자선적 목적으로 특별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

113.6.3 당회는 교회의 재정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113.6.4 교회가 운영위원회를 선출한 경우, 당회는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회 재정 업무의 모든 측면이 교회 의결기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113.6.5 당회는 재정 및 유지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른 의결기관과의 관계

114. 당회는 교단의 상급 의결기관이 지시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14.1 당회는 상급 의결기관으로부터 온 모든 조언 및 의리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발의 의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14.2 당회의 의무는 청원서와 소송을 접수하여 적절하게 심사하며, 모든 항소, 참조 및 관련 서류와 함께 이를 노회에 송부하는 것이다.

114.3 노회의 명령과 관련된 항소 또는 징계소송의 경우 당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114.4 당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 노회에 기록(회의록, 세례 명부, 입교인 명부, 결혼 등록부)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25-32항 및 82-85항 참조).

114.5 당회는 연례 통계 및 기타 보고서가 작성되어 지정된 날짜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4.6 당회는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교회 건물, 재산 및 그의 상공 권리에 대한 사용에 대해 노회에 책임을 진다(109.2 및 163항 참조).

114.7 당회는 당회원 중 한 명을 노회에 대표 장로로 임명한다(복수목회지인 경우, 노회가 추가로 "균등 장로"를 요청하지 않는 한, 한 번에 한 명의 당회만 대표 장로를 임명한다). 대표 장로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14.7.1 노회 회의에 참석하고, 노회의 심의에 참여하고, 노회의 결정, 조정 및 참조를 당회에 보고한다.

114.8 담당 직분이 갑자기 공석이 되거나 목사가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위해 특별히 임명된 위원이 없을 경우, 노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도움을 청하는 것은 대표 장로의 의무이다.

조직과 절차

115. 목사는 당연직(직책에 따라) 당회장이다. 두 명의 목사가 있는 경우,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하거나 서로 합의해서 진행한다.

115.1 목사가 두 명인 경우, 다른 권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다른 목사는 일반 회원으로 참석하여 투표한다.

115.2 당회장은 당연직으로(직책에 따라) 모든 당회 및 교회 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당연직 회원으로서 당회장의 참석은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116. 당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신중한 이유로 당회장이 회의 주재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회의 다른 목사가 당회장의 권한을 받아 당회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사가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해임되었거나 정직 중인 경우,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임명한다.

117. 당회장의 임무는 회의 진행, 질서 유지, 투표, 의결기관의 결정 발표 및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의장은 적합한 업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심의 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13~17.1항 참조).

118. 당회는 서기를 임명하며, 서기는 당회 절차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영구 기록으로 보관하며 모든 당회 문서를 담당하고 당회가 승인한 모든 회의록 및 서류의 발췌본을 작성 및 발행할 의무가 있다(18-24항 참조).

118.1 서기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당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당회장 및 서기”로 서명해야 한다.

119. 당회는 또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회계를 임명할 수 있다.

120. 당회는 가능한 한 안건 처리를 위해 명시된 회의를 개최하며, 신앙과 종교집회를 위한 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당회의 회의는 회중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당회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회의를 열 수 있다.

120.1 교회 회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룰 때, 당회와 모든 회원은 엄격하게 교회 회원의 사적 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를 해야 한다

121. 당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당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상급 교회 법원의 명령이나 장로 1/3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회의는 강단에서 통지하거나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당회장의 권한에 따라 소집된다.

121.1 공지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능한한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예배가 끝날 때 강단에서 소집하는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소한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

121.2 노회가 임명한 파송 장로(교회 의결기관을 돕기 위해 임명된 장로)는 반드시 개인 통지를 받아야 한다.

121.3 당회가 나중에 지정된 날짜에 회무를 마치기 위해 휴회하는 경우, 회의 소집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석하지 않은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22. 당회에서 당회장과 당회 시무 장로 중 25% 또는 두 명 (둘 중 더 많은 수)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어떤 이유로든 장로의 수가 정족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장로가 선출될 때까지 다른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평가자 (교회 의결기관을 돕기 위해 임명된 장로)를 노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평가자는 장로 및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이어야 하지만 현재 당회에서 봉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195.1항 참조)

122.1 2014년에 삭제됨.

123. 당회가 성립되면(섹션 9 참조) 출석한 회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마지막 정기 당회와 정기 당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당회의 회의록을 읽은 후, 회의록이 통과되는 경우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124. 모든 당회는 (1) 회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교인 명부, (2) 세례 명부, (3) 고백 교인 교인 명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125. 고백 교인의 교인 명부 보관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125.1 각 목회지에는 해당 책임 당회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교인 명부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고백 교인의 이름과 주소, 등록 또는 삭제 방법(즉, 등록의 경우 신앙 고백, 증명서 또는 당회의 특별 결의로 한 것인지, 삭제의 경우 사망, 이명 또는 당회의 특별 결의로 한 것인지)과 함께 등록 및 삭제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당회의 특별 결의에 의한 등록 또는 삭제의 모든 경우, 그러한 조치의 사유는 등록 또는 삭제된 사람의 이름 옆에 기록되어야 한다. 당회만이 이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다.

125.2 고백 교인의 이름은 전출 증명서에 의해서만 한 지역의 교인 명부에서 다른 지역의 교인 명부로 옮길 수 있다. 전출 증명서는 그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등록되고 교회와 회중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한 증명서는 발급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전출 증명서가 제출된 당회가 그 사람에게 교회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전출 증명서의 소지자에게 등록할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125.3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일은 담당 목사 또는 당회 서기에게 전입 증명서를 제출한 날짜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회가 명부에 이름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날짜로 한다. 삭제 날짜는 사망일, 전입 증명서 발급일 또는 당회가 이름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날로 한다. 고백 회원은 당회가 삭제할 때까지 명단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록"을 사용하거나 고백 회원을 분류하기 위한 기타 편의적인 방법은 거기에 이름이 기재된 회원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5.4 당회는 매년 한 번씩 교인 명부를 수정, 정정 및 확인해야 하며, 같은 회의에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로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목사 청빙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당회는 교인

명부의 마지막 개정 날짜를 노회에 알려야 한다. 그 날짜가 1년 이내가 아닌 경우, 당회는 125.5항에 따라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125.5 매년 교인 명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회는 예배, 특히 성찬식 참석, 회중 생활 및 활동 참여를 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배 참석에 충실하지 않고 회중의 삶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연락하고 가능한 경우 방문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렇게 연락을 받은 사람에게 1년이 지나도 헌신의 노력을 갱신하지 않으면 당회가 이들을 신앙생활이 충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여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회는 교인 명부의 이름 옆에 이러한 조치의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그러한 사람은 계속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당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교인 명부에 이름이 복원되고 회의록에 정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25.6 교인 명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관할 노회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는 이 법과 이 법의 다른 모든 요건이 주의 깊게 준수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A&P 1927)

126. 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회원은, 사법적 징계로 인해 금지되거나 당회가 조사를 요청할 만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에 따라 당회로부터 전출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26.1 소송으로 인해 전출 증명서가 보류되는 경우, 회원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26.2 당회 회의 사이에 당회장은 신앙생활이 충실한 회원에게 전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당회장이 조치를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127. 당회는 당회장에 대한 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

127.1 디아코널 사역자 정회원 또는 목사에게 대한 모든 절차는 소속 교회 당회가 아닌 그들이 속한 노회에서 시작해야 한다(324ff항 참조).

127.2 2006년 삭제됨.

127.3 당회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안에서 당회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나 디아코널 사역자에게 구속력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은 소속 노회에게 있다. 장로들 또는 그 중 몇 명이 개인 자격으로 서명하여 목사 또는 디아코니아 사역단 회원의 행동이나 가르침에 대해 비징계 사건(324ff항 참조)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350조, 351조 및 부록 A-48 참조) 노회에 제기할 수 있다.

128. 회중의 모든 관심사를 살피는 것은 당회의 의무이며(정치 제2장 제6조 4항), 회중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회중 업무와 관련된 어떤 목적으로 혹은 기타 권한 있는 방식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당회의 권리이다.

128.1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회는 때때로 회중과 관련된 운영 이사회, 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9. 당회는 모든 절차에서 노회와 교단 상급 의결기구의 검토와 지시를 따른다.

129.1 당회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가 요청할 때 심사를 위해 기록과 교인 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 내 문제에 대한 상급 의결기관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당회는 청원, 불만 제기 및 소장 등 통해 노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노회를 통해 상급 의결 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 (당회에 제기된 청원 및 소장과 자체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114.2항을 참조한다).

130. 한 당회는 다른 당회의 절차를 간섭하거나 검토할 수 없지만, 각 당회가 절차에 대한 자체 기록을 유지하는 한 여러 당회가 함께 모여 공통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0.1 당회가 다른 당회의 절차에 불만을 느낄 경우,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을 노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서면 진술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본은 먼저 해당 절차가 문제시되는 당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131. 정착된 교회든 공석인 교회든 모든 당회는 자신을 대표할 장로 한 사람을 노회와 대회에 파송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31.1 임명은 매년 이루어지며 노회가 지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131.2 하나의 목회지가 별도의 당회를 가진 두 개 이상의 회중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당회는 교회 의결기관에서 대표할 목적일때 하나의 당회로 간주된다.

131.3 당회가 대표 장로를 임명한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고 장로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하고, 노회 서기가 인증한 노회 명부는 그 장로가 대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131.4 당회는 회의록 발췌본에 표시된 대로 대표로 봉사할 장로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발췌록에 있는 대표의 이름은 대표가 노회와 대회에 출석할 권리의 충분한 증거가 되며, 대표는 노회가 발췌록에 표시된 순서대로 노회에 출석한다.

131.5 임명된 장로는 이러한 교회 의결 기관에 참석하는 데 있어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그들의 경비와 목회자 및 다이아코널 사역자 정회원의 경비는 회중이 부담해야 한다.

131.6 대표 장로가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지체없이 새로 선출해야 한다.

장로 선출, 안수 및 인준

132. 장로 직분으로 선출되는 것은 회중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장로 직분은 회중의 통치와 목회적 감독과 관련된 영적 직분이므로 적합한 남성과 여성만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공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합당한 판단력과 올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교회 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106-106.2항 및 449-449.4항 참조).

132.1 장로를 선출하는 권리는 회중의 고백 교인들에게 있다.

132.2 당회가 장로 수를 늘리기로 결의한 경우, 당회는 이를 회중에게 통지한다. 투표용지는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준비한다:

132.2.1 후보자 투표용지

- a. 당회 또는 당회의 공천 위원회, 교회의 고백 교인이 후보를 추천한다. 회원의 지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최소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해야 한다.
- b. 추천 기간은 최소 세 번의 연속된 주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 c. 당회는 후보자가 장로직에 적합한지(132항 참조), 선출될 경우 장로로 봉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d. 적합하고 봉사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한다.

132.2.2 회원 투표용지

당회는 시무 임기가 끝나고 재선출 자격이 있는 장로를 포함하여 모든 고백 교인의 이름으로 구성된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섹션 108 참조)

132.3 투표를 위해 모든 고백 교인에게 투표용지를 배포하거나, 투표용지 배포 및 장로 선출을 위해 최소 두 주일 전에 통지하고 공동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당회 회원에게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회원에게는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표용지는 장로 선출을 위해 소집된 공동 회의에서 배포된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 및 개표되어야 한다.

132.4 회원은 장로 직분으로 부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를 봉인된 봉투에 넣고 봉투에 회원의 서명을 받는다.

132.5 투표용지는 당회가 정한 기간 내에 투표되어야 한다.

132.6 당회 또는 당회가 임명한 장로 위원회는 봉투를 개봉하고 검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한다. 그들은 봉투를 폐기하고 투표용지를 개표하고 계수한다.

132.7 후보자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회는 각 후보자가 받은 득표 수와 필요한 추가 장로 수에 맞춰 회중의 지지율에 따라 선출될 후보자를 결정한다.

132.8 회원 투표를 사용하는 경우, 당회는 장로 직분에 대한 적합성(132항 참조), 각 후보자가 받은 투표 수 및 추가로 필요한 장로 수에 근거하여 장로로 봉사할 의향이 있는 후보자 중에 선출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장로 수에 도달하거나 인준된 후보자 목록이 모두 소진되면 당회는 후보자 선출을 중단한다. 후보자들은 봉사할 의사가 확인되면 장로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132.9 선거 후 당회는 안수식 최소 10일 전에 회중 앞에서 안수 및/또는 인회의 공고를 낭독하도록 지명한다. (부록 A-11 참조)

132.10 안수를 위해 지정된 날에 당회가 구성된다. 유효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당회장은 설교 후 장로 당선자들을 앞으로 불러서 규정된 질문을 한다(449항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은 당회장은 기도로 후보자들을 시무 장로 직분에 안수하고, 그들이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도움과 존경을 받도록 기도한다. 그런 다음 목사, 디아코널 사역자 정회원과 장로들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데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들에게 오른손 악수례를 한다. 새로 안수받은 장로와 사람들의 이름을 당회장이 호명하고, 장로의 이름이 당회 명부에 추가된다.

132.11 이전에 안수받은 장로는 재안수받지 않지만 당회원으로 인준을 받는다. 그들은 규정된 질문에 답함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해야 한다. (449항 참조)

132.12 장로는 회중 앞에서,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중에 안수 및/또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

133. 장로가 전출 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으면 해당 교회에서 직분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133.1 증서를 발급한 당회에 다시 반납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와 인준을 통해서만 그

직분으로 회복될 수 있다.

133.2 다른 교회로 전입하는 장로는 해당 교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새로운 임기로 재선출된 장로와 마찬가지로 당회원이 되기 전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직위 해제

134. 회중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교회에서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해 보이는 장로에 대해서, 비록 해당 장로에 대해 징계 소송 사건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장로가 종신직이든 또는 임기직이든 상관없이, 총회는 당회가 노회에 적절한 형식으로 진술하고 노회가 해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해당 장로의 교회내 장로직 수행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지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 소송을 시작할 권리(381ff항목 참조)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가진다

집사회

135. 집사 직분은 교회에서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직분이며(교회 정치 제2장 제8조 2), 그 직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있다. (장로회 조직 형태)

135.1 실제로, 캐나다 장로교회는 성서적으로 높은 직분이 낮은 직분을 포함하고, 목사, 디아코널 사역자 소속 정회원 및 장로도 집사라는 교리를 따른다.

136. 집사의 자격, 선출 및 인준은 장로와 동일하다. (교리와 장정 8권 2장)

137. 장로 이외의 집사들이 임명된 교회에서, 사람들의 연보를 모으고 분배하는 일은 목사 또는 디아코널 사역단의 활동중인 회원, 장로, 집사들로 구성된 회의, 일반적으로 집사의 의결기구로 불리는 회의에 맡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회의에 교회의행정 업무 관리도 위임될 수 있다.

138. 집사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장로직(집사가 아닌)의 판단과 임명...에 따라 행해야 한다”. (교리와 규율집 2권, VIII, 3)

138.1 규율집에 따르면 집사는 상의를 위해 당회와 만나지만, 자신의 직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다. 캐나다 장로교회에는 이후 제정된 집사 제도법이 없다. 1846년 자유 교회 총회는 장로와 집사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한 위원회는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교회에 권고했지만, 1856년에 같은 취지의 헌의안이 노회 과반수에 의해 부결되어 이 제안은 철회되었다. 이전 판의 서식집에 나타난 집사회에 대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권고했지만, 노회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회중과 관리

회중

139. 회중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지역에서 기독교 예배, 교육, 교제 및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조직에 관한 내용은 200 항을 참조.)

140. 회중의 "고백 회원"은 주의 만찬의 교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여 당회가 승인한 사람들로, 모든 교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

140.1 세례 받은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교회의 "언약 회원"이며, 당회의 재량과 부모의 동의 하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언약 회원"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적절한 연령이 되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당회에서 "고백 회원"으로 승인을 받을 책임과 특권이 있다.

141. 회원의 의무는 복음의 예식에 성실히 참석하고, 목사와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모든 구성원에게 존경과 격려, 순종을 다하며, 당회에 순종하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간직하며, 회중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회중의 전체적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사역의 유지와 국내외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의무이다.

142. 회중의 회원은 증명서를 받아 이동하거나 회중의 교제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사법 절차의 결과로 이름이 삭제되기 전까지 당회의 보호와 권위 아래 있다.

143. 회중 회원은 자신, 다른 회원, 회중 또는 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당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행동과와 관련된 문제는 노회에서 처리해야 한다(324 항 참조). 당회에 청원서나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구술로 진술된 것은 당회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장을 제기한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통상적으로 사법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313-434 항 참조).

144. 회중 회원은 당회를 통해서만 상위 의결기관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회는 청원서, 소장 또는 발의를 노회로 전달한다. 당회가 이러한 서류의 전달을 거부하면, 회원은 156-156.1 항과 381-392 항에 따라 소장을 제기하여 시정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145. 회중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고백 회원은 전출 증명서를 신청하면, 사법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백 회원이 아닌 회중 회원도 먼 곳으로 이주할 때 추천서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146. 회중을 비정상적으로 탈퇴한 회원은 전출 증명서를 신청하면 당회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지만, 증명서에는 당회가 교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 전에 당회가 당사자와 상의하는 것이 전제된다.

147. 회원이 회중의 교제에서 탈퇴하고 공개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당회의 관할을 거부하거나 사법 절차 중에 회중이 소속된 관할을 떠나는 경우, 당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고백 회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148. 양호한 증명서가 없거나 다른 회중의 고백 회원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된 회중 회원은 이전 관할 당회와의 소통 없이는 어떤 당회에서도 고백 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후 당회가 동의하면, 이전 당회는 신청자를 완전한 회중 특권을 회복하기 있도록 다룰 수 있다. 동의가 거부되면 소송은 노회에 회부된다.

149. 회중의 재산은 회중이 임명한 회계에 의해 회계 지침에 규정된 방식으로 관리된다. 회계는 반드시 교회의 고백 회원이어야 한다. 재정의 목적과 회계 및 그 후임자의 권한, 의무, 책임 및 임명 방식, 회계의 지속성을 명확히 정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이 마지막 사항이 중요하다. (선언법: A&P 1991, p. 250, 37)

150. 회중은 예배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 대한 노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선언법: A&P 1991, 250, 37 쪽)

151. 회중은 교회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협상하는 것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노회가 제재를 내리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노회 그 사안의 중대한 책임을 깨닫고 사건의 상황을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만 가능하다.(162.1 및 200.8 항 참조).

152. 회중 회의는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되며, 당회 자체의 결정이나 집사회 또는 운영 위원회의 요청, 또는 여러 고백 회원의 또는 상위 의결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회의는 주일에 회중 앞에서 공고하여 소집되며, 공고에는 회의 목적이 명시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최소한 일주일 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회중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153. 회중은 운영 위원회 또는 집사회의 보고를 받고 다른 정기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는 인쇄하여 회중 구성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다.

153.1 연례 회의 공지는 회의 이주일 전에 주어져야 한다. (A&P 1914)

154. 회중 회의는 회중의 목사 또는 노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주재한다. 목사가 부재하거나 주재를 거부하면 회의에서 한명을 회장에 임명한다. 또한 회의는 서기를 임명한다. 영적 목적을 위해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은 서기가 당회에 보고하며 당회 기록에 기재된다. 영적 목적이 아닌 회의의 회의록은 집사회 또는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들의 기록에 기재된다.

154.1 이는 운영 위원회의 행정이 당회의 행정과 대조되는 비영적 업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회와 운영 위원회 각각의 책임이 교회 전체 업무 내에서 두 가지 구별되는 책임 영역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155. 모든 고백 회원은 회중 회의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목사,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장로 및 집사를 선택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목사직에 관한 부록 I 참조). 회중의 일시적인 사안과 예배 순서, 교단 규율, 재산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와 그 예식에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신자들도 투표할 수 있다.

156. 회중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결정을 반대할 권리(91 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는 노회에 시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381 항 참조). 제기된 불만사항과 이유는 당회를 통해 전달된다.

156.1 반대의견은 결정 당시 제기되어야 하며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157. 회중은 상위 의결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계 및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7.1 이러한 보고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회에 있다.

운영위원회

158. 집사회가 없는 회중에서는 재정 업무 관리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159. 운영 위원은 회중의 연례 회의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선출된다.

160. 운영 위원회의 3분의 1은 매년 순환 방식으로 퇴임하며, 연례 회의에서 해당연도 중 퇴임하는 위원의 공석이 채워진다. 퇴임한 운영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161. 운영 위원이 사망하거나 퇴임하거나 권징절차에 따라 회중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회중을 떠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운영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62.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회중의 세속적 및 재정적 업무를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다. 청지기 직분의 모든 측면에 책임이 있는 당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회중의 전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독려하고, 이를 위해 받은 모든 자금을 회중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며, 목회자의 급여 및 기타 급여를 제공하고, 회중이 수시로 지시하는 모든 사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162.1 회중의 주요 재정 지출에 관한 모든 결정은 회중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주요 재정 지출"은 회중의 전년도 정관 및 절차에 보고된 정상 지출 총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예상 비용으로 정의된다(151 및 200.8 항 참조).

162.2 모든 헌금은 일반 수익이든 선교 목적이든, 회중에서 지출되기 전에 계수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163. 운영위원회는 예배 장소 및 기타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보수하는 책임이 있다. (회중 건물 사용에 관한 내용은 109.2 및 114.6 항 참조)

164. 운영위원회는 회중이 결정한 대로 찬양 봉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임명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111.1-2 항 참조)

165. 운영위원회는 교회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책임이 있다.

166. 운영위원회는 공예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167. 소집자, 서기 및 회계 담당자는 연례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회중에 의해 임명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는 연례 회의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들을 임명한다.

168. 소집자의 의무는 각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 업무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기록되도록 확인하는 것, 투표를 실시하는 것, 결정을 발표하는 것이다. 소집자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아닌 가부 동수 시 결정권만 가진다. 소집자는 운영 위원회의 실행위원으로서 명시적으로 부여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소집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운영 위원 중 한 명이 선정되어 사회를 맡을 수 있다.

169. 서기의 의무는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장부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충실히 기록하고,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개최된 회중 회의의 기록을 그 안에 포함시키며,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모든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다. 회의록은 언제든지 운영 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집자와 서기가 서명한다.

170. 회계 담당자의 의무는 회중의 회계와 모든 영수증을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모든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며, 모든 계좌를 적절하게 감사하여 회중의 연례 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다. 회중이 이용하는 은행이 있는 경우, 회계 담당자는 모든 수입금을 지체 없이 회중의 명의로 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선언법: A&P 2008, p. 253, 17)

17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최소한 3 개월에 1 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개최된다. 그러나 소집자의 요청이 있거나 강단에서 공지하거나 운영 위원에게 직접 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소집자는 3 분의 1 이상의 운영 위원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72. 3 명의 회원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충족된다.

173. 회중은 회중의 세속적인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교단의 일반 절차와 일치하는지 관할 노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다이어코널 사역단

174.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자격

자격

174.1 총회가 인정한 대학에서 다이어코널 사역자를 위한 위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본 교단 노회가 임명한 사람들, 이와 유사한 훈련을 받고 총회의 허가를 받아 노회가 받아들이고 임명한 사람들(174.5 항 참조)은 다이어코널 사역단 정회원이며 다이어코널 사역자라고 불린다. 이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특정 직책에 따라 직무상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

174.2 다이어코널 사역단 내에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다이어코널 사역단 위원회가 있다.

훈련

174.3 캐나다 장로교회의 다이어코널 사역단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당회를 통해 속한 지구의 노회에 인준을 신청해야 하며, 노회는 심사를 거쳐 승인된 학습 과정을 제공하며 후보가 출석하고자 하는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한다.

174.3.1 최초 인준을 한 노회는 학생들을 매년 심사하고, 심사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해당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인준을 제공한다. 대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노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준 절차는 대학이 위치한 노회 또는 후보자가 거주하는 노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

임명

174.4 캐나다 장로교회의 디아코널 사역단 정회원으로 임명되려면:

174.4.1 대학 운영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규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174.4.2 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적합한 성품과 행동, 필요한 은사와 기술을 갖추었다는 인증을 받고,

174.4.3 캐나다 장로교회의 의결기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최소 1 년간의 임명을 수락한 경우이다 (선언법: A&P 1989, p. 269-70, 73)

174.5 디아코니아 사역단 정회원의 직분을 위해 유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명선교국 교육과 수용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신청에 따라 총회가 디아코니아 사역단 집행부와 협의하여 승인하면 본 교단 디아코니아 사역단에 입회할 수 있다..

174.6 노회의 적절한 심사 후, 노회는 후보자를 디아코널 사역단 정회원으로 임명한다. 후보자가 3 년 이내에 임명받지 못하면, 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에서는 후보자의 현재 교육 자격을 고려해야 한다.

임직 및 취임

174.7 디아코널 사역단 정회원의 임명 및 종료 권한은 노회와 상위 의결기관들 또는 그들의 기관에 있다.

174.7.1 노회는 모든 임직을 위해 취임 예배를 거행해야 한다.

교단 의결기관

175. 교단 의결기관과의 관계

175.1 회원은 회원이 사역하는/또는 거주하는 노회의 관할 하에 있다.

175.2 활동 중인 회원 및 기타 회원의 명부는 노회에 의해 관리되며, 노회 명부의 일부로서 매년 총회 서기에게 제출된다 (176.5 및 176.5.1 항 참조).

175.3 회원이 다른 노회로 이동할 때, 다른 노회로 전출 증명서를 보내야 하며, 자격 상태 또는 고용의 변경 사항을 Ministry and Church Vocations 과 생명선교국에 보고해야 한다.
(선언법: A&P 1994, p. 279, 82)

175.4 본 총회는 1992 년 총회가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을 교단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1991 년 수정법안(Remit G)을 채택한 조치를 현역 및 비활동 회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노회의 명부와 관련하여 의결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범위내의 각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의 이름은 구성원 명부 또는 명부의 부록에 기재될 수 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노회 또는 상위 의결 기관 명부에 목사의 이름을 올리거나 그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항목 176.5 와 선언법 176.5.1, 1993, p. 230, 54).

노회

회원자격

176. 노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특히 176.1, 176.2 및 176.5 또한 176.3 및 176.5.1 참조)

176.1 최소 하프타임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지역 내의 안수받은 목사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76.1.1 담임목사, 부목사 또는 협력목사, 기독교 교육 담당자, 임시 목사, 특별목적 임시목사 (교회 또는 선교지에 관계없이), 지녔내 주둔군 군목인 경우; (213.2 참조)
(선언법: A&P 1979, 239 쪽, 88).

176.1.2 생명선교국이 해외 선교지에 임명한 자로서 휴직 또는 특별 임명으로 인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인 경우;

176.1.3 생명선교국에 의해 캐나다에서 1 년 이상 선교사로 임명되었거나

201.2 항에 따라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목사와 당회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노회 자체의 발의로 노회가 임명한 사람;

176.1.4 생명선교국의 임명 하에 노회 지역 내에서 사역하는 안수 목사로, 해외 교회가 파송하고 생명선교국이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인 경우 (A&P 1979, 408-10 및 85 쪽, A&P 1980, 100 쪽 참조).

176.1.5 본 교단 대학 교수로 재직하거나 본 교단 의결기관 또는 기관의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인 경우; (선언법: A&P 1966, 399-401 쪽, 93; A&P 1980, 111, 217 쪽; A&P 1989, 268 쪽, 65)

176.1.6 성서공회 간사, 성서대학 또는 신학대학의 교수,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로서 캐나다 장로교회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요청한 사람들; 도시, 국내 또는 해외 선교부의 사역자인 경우(마지막은 해당 선교가 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선언법: A&P 1989, 268 쪽, 65).

176.1.7 총회의 책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 년 이상 임명된 기관 원목인 경우. (선언문: A&P 1988, 283 쪽, 34; A&P 1992, 383 쪽, 63; 및 A&P 1995, 229 쪽, 38; A&P 2017, 279-80 쪽, 15)

176.1.8 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 노회의 요청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명부에 게재된 사람. 현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를 제외하고, 은퇴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선언법: 비신학 교사 또는 교수,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기타 세속직업에 고용된 목회자; A&P 1989, 267 쪽, 65).

176.1.9 구성원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목사의 신분이나 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노회가 판단하여 의결 기관의 적절한 동의에 따라 명부의 부록으로 그 이름을 옮길 수 있다. 노회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신분이 구성원 명부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노회는 176.1.8 항에 따라 총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176.1.10 균등화 목회자: 노회의 구성원 명부에 목사보다 장로가 더 많은 경우, 노회는 매년 임시 당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명부의 부록에 등재된 목사들을 구성원 명부에 추가하여 균등화 목사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76.2 안수 장로;

176.2.1 조직된 당회가 있는 각 목회지 또는 선교지에서 1 명(114.7 항 참조) 및

176.2.2 명부에 있는 장로 수가 목회자와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 수와 같도록 충분해야 한다. 당회는 순차적으로 매년 당회당 한 명씩 이러한 균등화하는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들은 재임명될 수 있지만 연속해서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대표자가 없는 다지점 목회지에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다.

176.3 지역 내의 모든 다른 목사들과 생명선교국 산하 해외 사역을 위해 노회가 안수한 목사들은 적절한 동의(권리가 아닌 특권, A&P 1993, 234, 55 쪽 및 1964, 333-36 쪽)에 따라 명부에 부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선언법: A&P 1989, 268, 65 쪽)

176.4 자비량, 증원, 안수 받은 선교지에 상관 없이 모든 목사의 이름은 노회 명부에 노회 안수 또는 임명된 순서대로 기재되어야 하며, 안수 받지 않은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지는 알파벳 순서로 명부에 보고되어야 하고, 선교사의 이름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대표 장로의 우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A&P 1907)

176.5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은 현역으로 사역하는 기간동안 최소 반일근무로 사역하는 소속 노회의 구성 회원이다. 구성 회원은 발언권, 동의권, 투표권 및 총회 총대 자격을 갖는다. 회원의 필요에 따라 균등화 장로로 임명될 수 있다. (이 조치의 전체 범위에 대한 설명은 A&P 1993, 총회 서기 기록. 6, 230 쪽 참조)

176.5.1 지역의 모든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들과, 자격 증명이 노회에 제출되어 생명선교국의 임명을 받아 해외에서 사역하는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들은 적절한 동의에 따라 명부의 부록에 기재될 수 있으며, 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선언법 1993, 230 쪽, 54; 권리가 아닌 특권, A&P 1993, 234 쪽, 55).

176.6 경력 증명서(부록 A-16)

176.6.1 사법 절차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노회 명부 부록에서 이름이 삭제된 사람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감독을 받는 목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들에게는 말씀과 성례전 사역에 안수를 받았으며 발급일 현재 캐나다 장로교 목사임이

명시된 경력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명부 부록에서 삭제된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로써 캐나다 장로교회의 감독을 받는 목사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176.6.2 사법 절차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명부 부록에서 이름이 삭제된 사람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감독을 받는 목사직을 그만두더라도 캐나다 장로교회의 말씀과 성례전 사역에 대한 안수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노회를 통해 해당 노회에 명부 부록의 회원으로 재복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6.6.3 사법 절차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노회 명부 부록에서 이름이 삭제된 다이어코널 사역자는 다이어코널 사역단의 회원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사역은 더 이상 캐나다 장로교회의 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으로 지정되었다는 기록 증명서, 명부 부록에서 삭제된 사유를 명시하는 증명서, 그리고 이로써 해당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 장로교회의 감독을 받는 다이어코널 사역자가 아님을 알리는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76.6.4 사법 절차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름이 명부 부록에서 삭제된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은 교단의 재량에 따라 해당 교단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며, 노회에 신청할 경우에만 노회 명부 부록에 기재될 수 있으며, 노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직과 절차

177. 총회는 노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경계를 결정하고, 노회 이름을 정하고, 첫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첫 의장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임명된 의장이 노회를 구성한 후 노회는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177.1 총회는 광범위한 지리적 경계를 가진 노회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보조적으로 종족, 언어 또는 문화에 따른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노회들은 규정된 보조 경계 내의 교회들, 회원들, 그리고 목사 후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의무, 권한, 그리고 권위를 가지며, 동일한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 대한 관할권은 제외된다

177.2 노회가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G.A. 1638)

178. 의장의 일반적인 임기는 6 개월 또는 12 개월이다. (G.A. 1582)

179. 의장의 임무는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주재하며, 기도로 회의를 개회하고 폐회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투표를 하고, 결정을 발표하고, 권징을 선포하고, 확인된 회의록에 서명하고, 사법 절차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주고, 긴급한 사안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며,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의 업무를 지휘하는 것이다(13~17 항 참조).

180. 의장이 부재할 경우, 전임자 또는 의결기관이 선정한 다른 구성원이 주재할 수 있다. 의장이 진행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출석하는 경우, 의장은 반드시 의장직을 맡아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한다. 또한 의장이 의결기관에 제기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노회는 의장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임명하며, 이 사람은 당분간 의장의 모든 권리와 기능을 갖지만 문서에 '의장 대행'으로 서명해야한다.

180.1 의장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의장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정기 회의까지 즉시 전임 의장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 서기에게 승계된다.

181. 노회는 서기를 임명하며, 서기의 임무는 회의록을 보관하고 매년 검토를 위해 대회에 이를 송부하고, 회원 명부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의결기관에 속한 모든 서류를 보존하고, 지시가 있거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업무의 성질상 회의록의 공증된 발췌본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18-24 항 참조).

182. 노회는 또한 의결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결기관에 속하는 모든 돈을 수령하고 지출하기 위해 회계를 임명한다.

182.1 노회는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 헌금을 지정하거나,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자체 경비를 위한 헌금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A&P 1985, 56 쪽 참조).

183. 세 명의 회원, 즉 의장(또는 의장 대행)과 두 명의 다른 회원(그 중 한 명은 목사)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184. 노회가 구성되면 명부에 출석표시를 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한다. 대표 장로의 이름은 임명에 대한 회의록을 발췌록을 제시하면 명부에 기록된다. 노회는 정기, 특별, 임시 등 모든 회의에서 장로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할 권한이 있다.

184.1 교단의 모든 의결기관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회원의 이름은 의결기관의 특별한 조치 없이, 의결기관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정식으로 제안되고, 재청, 통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기관의 명부에서 삭제될 수 없다.

185. 노회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의결기관에 의해 규정된 질서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296~312 항 참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186. 노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참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다음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해지고 기록된다.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의 명령이 없는 한 노회 회의를 열 수 없다.

187. 정기회의나 일반회의에서 노회는 상정된 모든 사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 의장은 모든 회원이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안에 노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188. 노회가 다음 일반회의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날짜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의장은 업무의 재개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의장은 마지막 회의 당시 노회 명부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야 하며, 이 서신은 회의 날짜 최소 10 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지정된 날짜에 정족수 이상의 회원이 출석하면 일반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188.1 공표 서신에는 회의가 “업무의 재개”를 위해 소집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189. 노회는 어떤 정기 회의에서든 정기회의 외에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회의에서는 지정된 목적 이외의 어떤 다른 사안도 다룰 수 없다.

189.1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특별회의 개최 결의는 반드시 회의 시간과 장소, 처리할 사안을 명시해야 한다.

190. 명시된 노회 정기 회의 사이 기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또는 3 인 이상의 의결기관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긴급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의 권한에 따라 서기가 모든 의결기관 회원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소집된다. 이 서신에는 회의 시간과 장소 및 처리할 사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의가 열리기로 정해진 시간 최소 10 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노회가 모이면 먼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 조치를 심의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회의를 진행하며 의장이 보낸 서신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서신에 명시된 사안 이외의 사안은 처리할 수 없다. 의장이 회의 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정기 회의에서 그 조치를 다룰 수 있다.

190.1 다음 정기 회의에서 임시 회의록이 낭독될 때, 회의 당시 명단에 있었으나 결석한 회원은 회의 소집의 적절성 또는 소집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 의결기관에 제소하여 시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381ff 항 참조), 그러한 소송은 적법하게 이행된 사안 자체를 검토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다.

191. 특별 및 긴급 회의는 소집된 사안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회할 수 있지만, 의결기관의 다음 정기 회의 날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92. 노회의 회의를 대회 회의 중에 열수 있으며, 해당 의결기관의 허가를 받아 적절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노회장의 권한으로 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공지가 공개적으로 대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193. 대회 회의 직전에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노회의 명부를 준비하고, 그 명부의 인증된 사본이 대회 회의 최소 8 일 전에 대회 서기에게 제출된다. 또한 목사 또는 디아코널 사역자 정회원과 장로가 대회의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를 섬기도록 임명될 수 있다.

194. 다른 노회의 회원은 노회에 참석할 때, 노회와 함께 참석하도록 요청되어야 하며,, 의결기관의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으나 그들에게 투표권은 없다.

194.1 목사 안수식에 참석한 모든 목사들은 안수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노회 회원들만 회의록에 기재하되, 다른 사람들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들이 참여하도록 초청되었음을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195. 총회 또는 대회는 임명 결의의 조건에 따라 일반 또는 특정 사안을 위해 노회와 함께할 파견장로(교단의 의결기관을 돕기 위해 임명된 장로)를 임명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195.1 노회는 임명 결의의 조건에 따라 투표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또는 특정 사안을 위해 당회에 참석할 파견장로를 임명할 수 있다. (122 항 참조)

196. 각 정기 회의에서, 명부가 호명된 후 노회가 다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정기 회의 및 그 사이에 열린 특별 또는 긴급 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노회는 제출된 회의록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정한 후 승인해야 한다. 이후에는 상급 의결기관의 권한에 의하지 않고는 회의록을 변경할 수 없다.

196.1 유일한 문제는 회의록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진정한 기록으로서의 정확성이다. 회의의 실제 사안은 변경할 수 없다.

196.2 노회는 비공개 회의록이 제출될 때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196.3 어떤 이유로든 회의록이 적절한 시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이유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

197. 한 노회는 다른 노회의 절차를 간섭하거나 검토할 수 없다. 노회가 다른 노회의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노회는 시정 소송을 통해 상대 노회가 속한 대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381ff 항 참조). 이 과정은 서면 항의(382 항 참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본은 먼저 해당 소송이 제기된 노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할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노회는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자신이 속한 대회에 항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항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82 항 참조).

의무와 권한

회중과의 관계

198. 노회는 그 관할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권징이 올바르게 유지되며, 교회 재정이 청렴하게 분배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리와 규율집 2 권, 7 장 12 절)

198.1 노회는 자신의 관할 내에서 공예배의 수행과 성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가진다. 교회의 법과 정착된 관습에 어긋나는 관행을 참찰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회중에서든 분열이나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관행에 대해서는 중단하도록 명해야 한다. (선언법: A&P 2016, 285,16 쪽)

198.2 예배와 관련된 사항에서 목사는 다른 사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노회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 목사는 노회의 집행자이고 조회는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199. 노회는 교회의 모든 상급 의결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관할 내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방문자를 파견할 권한이 있다. (교리와 규율집. VII, 5 의 2 권)

199.1 노회는 관할하는 회중을 방문하고, 당회와 직분자들을 호출하여, 회중의 상태와 일반적인 사정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199.2 방문을 실시하는 방식에 관한 법은 없다. 노회는 조사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자체적인 절차 방식을 결정하고 자체적인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권장 질문 목록은 부록 A-71 참조).

199.3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 예를 들어 몇 가지 과실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목사나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에 대한 소장이 제기된 경우, 비징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324 항 이하 참조).

200. 노회는 자신의 관할 내에서 회중을 돌보고 선한 질서를 세우는데 책임이 있다. (교리와 규율집 2 권 훈계서 VII, 11)

200.1 회중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직되고 예배장소를 만들 수 있으며, 노회는 그러한 예배장소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150 항 및 200.7 항 참조).

200.2 회중은 노회의 자체 결정으로 형성되거나, 그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교회의 원칙들을 준수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 구성된다.

200.3 청원자들이 이미 교회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 노회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과 만나 교단의 원칙과 헌법을 설명하고, 그들의 기독교적 행실 대한 입증을 받고, 기독교적 성취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 그들을 교회의 교제에 받아들인다.

200.4 노회는 회중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제안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당회에 통지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노회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보고할 수 있도록 노회 인원 중 한 명 이상을 지명하여 신청자를 만나도록

한다. 이러한 대표들의 보고를 검토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회중 설립을 결의한다. 그런 다음 지원이 허락되고 노회의 목사가 임명되어 교인 명부를 작성하고 당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0.5 회중이 진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임명된 목사가 장로 선출을 주재하고 노회에 보고하며, 노회는 선출된 장로들의 자격을 판단한다. 자격이 충족된 경우, 노회는 선출된 장로에게 공문을 보내고 이를 노회에 반환하도록 지시하고, 그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선출된 장로를 받아들일 목사를 임명한다. 단,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은 노회로 회부되며, 노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조치는 보류된다.

200.6 당회를 즉시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거리나 기타 이유로 인해 당회 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당회가 임명된다.

200.7 새로운 교회가 예배 장소를 건립하거나 현존하는 회중이 이미 승인된 장소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선택한 장소에 대해 노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섹션 150 및 200.1 참조).

200.8 어떤 회중도 노회의 승인을 미리 얻지 않고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매각, 저당, 또는 기타 채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본 목적의 대출을 협상할 수 없다. 노회는 각 사례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노회는 이 문제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인식해야 한다 (섹션 151 및 162.1 참조).

200.9 노회는 대회와 총회에 시정 소송을 제출하여 회중 명칭에 대한 승인, 목회지에서 회중 간의 통합 또는 분리, 자립교회 또는 선교지로 지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 교회 해산 및 설교지 중단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00.11 항 및 부록 B-6 참조).

200.10 회중 또는 선교지의 이름이나 목회지 또는 선교지를 구성하는 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때, 노회 서기는 즉시 교회의 재정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통해 재정 담당자들이 헌금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P 1914).

200.11 교회 합병의 문제에서, 노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총회 임원회 및 관련 회중(들)과 협의하여 모든 남은 자산의 활용에 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계획은 지역 사회 및/또는 그 너머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어떻게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200.11.1 교회 합병의 결과로 교회 건물이 공개 매물로 등록되기 전에 다른 그리스도 공동체가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11.2 어떤 자산의 매각 수익금에 대한 첫 번째 청구는 해당 자산의 부채이며, 두 번째 청구는 자산을 매각하는 교회에게 발생한 이전 부채 및 기타 부채이다.

200.11.3 자산을 매각하는 회중이 캐나다 장로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재정 보조금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지속적인 선교 사업을 위한 재정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00.12 이 항목의 '회중'이라는 명칭 아래에는 조직된 선교부가 포함된다. (A&P 1893)

200.13 노회와 회중은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에큐메니칼하게 일하도록 권장된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핸드북(생명선교국/캐나다 사역부에서 관리)은 다른 교단의 교회와 공동 사역을 고려하는 노회와 교회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200.13.1 다른 교단과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 협정을 체결하려는 노회는 다른 교단과 함께 공동 사역 협약서를 준비하고 승인한 후, 협약서 사본을 생명선교국(캐나다 사역부)에 제출하고,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의 설립을 총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200.13.2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에 종사하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목사는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 협약서에 명시된 추가적인 책임의 기대가 있을지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관할 노회에 대한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

200.13.3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 핸드북을 승인했거나 캐나다 장로교회와 별도의 교단 간 협약을 맺은 성직자들은 캐나다 장로교회 교회와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교단의 적절한 의결기관에 의해 협약이 승인된 경우, 그 성직자는 해당 장로교회 내에서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200.13.4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회중과 승인된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비장로교 성직자는 노회 회의에 초대되고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200.14 노회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한은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

목회관련

201. 노회는 자신의 관할 내에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선출(또는 임명) 권한을 가진다(2 차 훈계서 VII, 15).

201.1 회중에서 목사의 배치는 항상 청빙과 임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반일근무 이상이어야 한다. 목사, 수석 목사(2008 년 A&P, p. 371), 부목사 또는 보조 목사의 직책으로 임명될 수 있지만, 목사 보좌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임시 공급 목사, 임시 목사, 은퇴 목사 및 생명선교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청빙을 받지 않고 임직예배를 통해 교회 사역에 임명될 수 있다. (섹션 213.2 및 213.3 참조) 특정 기간동안의 사역을 위해 청빙받은 보조목사를 제외한 모든 청빙 및 임직 목사는 임기 제한없이 시무한다. (섹션 235.2, 241.1 참조).

201.2 교회 내 은퇴한 목사 또는 파트타임 목사의 임명은 목사와 당회의 요청 또는 노회 자체의 발의에 의해서만 노회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목사 보좌원으로 불릴 수 있으며, 임직 예배를 통해 임명될 수 있다.

201.3 노회는 목사에 대한 사법적 권징을 행하는 노회의 결정을 생명선교국의 목회 및 교회소명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권징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01.4 노회가 목회지에서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할 목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회는 다음 조건에 따라 치리 장로 또는 디아코니아 사역단 정회원에게 성례를 집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a. 후보자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개인적, 영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노회에서 면접을 받아야 한다.
- b. 위임받은 사람은 성례전의 신학과 실행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c. 위임은 특정 목회지로 제한되며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위임은 노회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 d.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 기간 동안 임시 의장을 통해 노회에 책임을 져야한다.

목사후보생

202. 당회와 노회는 그 관할 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있는지 신중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이 성스러운 소명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뜻을 밝히는 적합한 인재들을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돕고 격려하며,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 경건함과 재능을 갖춘 자들이 성직을 고려하도록 권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1 노회는 그 관할 안에 거주하는 신학생들과 신학생 지망생들을 친절하고 충실하게 감독해야 하며, 그들이 열망하는 목회에 대한 합당한 견해를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회가 지혜롭게 결정한 학업 과정을 통해 사역에 이르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202.2 노회는 모든 신학생이 규정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특별히 후보자들의 나이와 적합성을 조사하며, 학업 성취도와 능력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총회에 특별 과정을 요청하는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A&P 1895).

203. 노회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및 종교적 성품, 동기, 목회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성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노회는 그들이 입학하려는 신학대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그들을 인준한다.

203.1 어떤 노회가 자신의 관할 내에 있는 학생에게 인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도덕적 이유로 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노회는 이러한 거부 사실을 다른 노회들과 신학교 운영위원회에 서신으로 통지해야 한다. (A&P 1901) (부록 A-66 참조).

204. 목사안수 후보자는 준비 기간 동안 처음 인준을 받은 노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단, 노회가 신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와 목후생이 여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책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목사후보생이 여름기간 동안만 사역하는 경우 해당 노회는 서면 보고서를 노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회는 해당 목사후보생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최초 인준 노회로 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그 목후생의 행실과 목회자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이 언급되어야 한다. 최초 인준 노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만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안수후보자 인준

205. 본 교단의 신학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필수 과정을 이수중인 목사후보생은 가장 최근에 인준을 받은 노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의 인준을 위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후보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험을 다음 두 노회 중 하나에서 진행하도록 노회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신학대학이 위치한 노회, 또는 (2) 가장 최근

인준을 받은 노회와 다른 경우, 첫 번째 인준을 받은 노회. 이러한 신청은 일반적으로 졸업하는 해의 첫 학기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요청이 시작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205.1 이러한 신청서 또는 요청서를 접수한 가장 최근의 인준 노회는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의 인준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을 승인할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 모든 관련 서류를 요청서에 명시된 관할 노회로 이송해야 한다. 신청 시 후보자는 그 외에도 총회가 주기적으로 정한 서류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205.2 신청자가 본 교단 신학대학이 아닌 다른 신학대학에서 전 과정을 이수했거나 현재 해당 대학에서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신청은 노회를 통해 생명선교국 교육 및 접수 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목사 안수 후보자를 인정되기 위한 시험 실시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이수한 과목의 공식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의 운영위원회에 해당 과목이 본 교단의 신학적 지향과 관점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그러한 신청자의 경우, 위원회 서기가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을 후, 노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서한 발송일로부터 3 개월 내에 위원회 서기에게 적절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06. 노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언제든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노회는 심사에서 신청자가 본 교단에서 사역하기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조사하여, 그 직무에 충분한 영적 및 개인적 자원, 진실하고 명료하며 통합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능력, 지속적인 성장과 개인적인 발전,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신학적 입장,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민감성, 대인 관계의 기술, 본 교단 내 의견과 실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회는 신청자의 허락을 받아 교회의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다. 노회는 원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안수 후보자로서의 인준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의결기관의 구성원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어느 단계에서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206.1 안수목사 후보자로서의 인준을 위한 시험은 선택된 성서언어와 신학교육구조위원회 보고서(A&P 1969, 352, 44 쪽)에 명시된 핵심 과목, 그리고 신청자의 실용적 기술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는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후보자가 이수한 신학대학교로부터 받아 이 분야들에서의 능숙도를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하여 이

과목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노회는 각 영역의 시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의결 기구의 특정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206.1.1 목사 안수 후보자는 노회에서 시험 결과가 검토했다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이 후보자가 학업 중일 때 이루어지고, 노회가 졸업을 조건으로 시험을 승인하는 경우, 의장은 항목 215.1 에 따라 후보자에게 임시의장이 해당 후보자를 교회에 소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통보해야 한다.. 교단 소속 신학대학 중 한곳의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고(섹션 206.2 참조) 노회의 시험이 승인된 후, 의장은 후보자에게 이제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 인준을 받았음을 선언하며, 청빙을 받거나 임명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

206.2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의 인준은 본 교단 소속 신학대학 중 한 곳의 운영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준을 받은 후에만 이루어진다: (1) 신청자가 본 교단이 규정하거나 배정 또는 승인한 과정을 이수했고, (2) 신청자가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은사와 기술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했으며, (3) 신청자의 인격과 행동이 목사 안수 후보자의 직책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본 교단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신청자는 해당 신학대학에서 발급한 동등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07.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노회는 새로운 시험을 배정하고, 3 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시작하거나, 또는 노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심사를 위해 다른 노회로 이관되지 않는 한 해당 노회의 관리 하에 있다.

208. 서기는 후보자에게 자격증 인증서를 발급한다.

208.1 노회는 생명선교국의 목회 및 교단소명 사무부에 모든 안수 후보자 명단을 인증 날짜와 함께 통보한다.

208.2 생명선교국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모든 안수 인준 후보자의 명단을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 행정록에 포함되도록 한다.

209. 목사 안수 후보자로 인준된 사람은 해당 노회의 관할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노회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그들을 인준한 노회의 관할에 속하며, 노회의 회의 통지를 받을 수 있다.

209.1 인준된 후보자가 소속 노회의 관할 경계를 떠나 캐나다의 다른 곳에서 거주, 일 및/또는 공부하기 위해 적절한 노회의 관할권으로 진출을 요청해야 한다.

210. 생명선교국에 따른 안수 신청이 접수되고 수락되어 목사 안수 후보자로 인준되면, 신청자가 속한 노회에서 캐나다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으며, 주요 관할 노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인준한 노회 또는 다른 노회도 안수를 줄 수 있다. (선언법: A&P 1995, 229, 38 쪽)

211. 안수를 받지 않은 인증된 목사 안수 후보자의 자격은 3 년 기간이 끝날 때마다 노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12. 인증된 목사 안수 후보자는 자신의 지위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목사 청빙

213. 교회의 목사 공석이 되면 관할 노회는 소속 목사 중 한 명을 해당 회중 당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다. 노회는 일반적으로 임시당회장이 회중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임시당회장에게 공석을 채울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임시당회장이 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할 때, 이에 대한 공지사항은 강단에서 고지되며, 가능하면 회의 전 두 번의 일요일 동안 회중에게 그러한 통지를 한다. (부록 A-26 참조)

213.1 임시당회장은 노회와 회중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3.2 청빙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회는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된 기간 동안 회중의 목사를 임시 공급 목사 (stated supply)로 임명할 수 있다. (선언법: A&P 1979, 239, 88 쪽)

213.3 노회가 설교자 공백의 상황에 임시 목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목사가 장기 휴가에 들어간 경우, 노회는 2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핸드북에 명시된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로 입증되는 명망을 얻은 목사는 해당 목사의 소속 교단에서 적절한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목사는 200.13~200.13.4 항에 설명된 대로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협약서에 따라 근무하는 목사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213.4 노회는 노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회중의 목사를 임시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임시 의장으로 임명될 목사는 노회의 재량에 따른다.

213.5 노회는 보조금을 받는 교회가 청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노회는 현재의 총 급여를 확정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교회가 지불할 부분과 노회가 보장할 부족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급여의 이중 보장에 대한 발췌된 회의록이 청빙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부록 A-33 참조)

214. 청빙의 위한 회의가정해진 날, 공예배 직후에 사회하는 목사는 회의의 목적을 밝힌다.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 목사는 회중에게 현재 청빙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회중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절차는 중단되고, 노회에 사실 보고가 제출된다. 과반수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청빙서와 급여 보장 제시되고 낭독된다(부록 A-29 참조). 그런 다음 회중은 정해진 방식으로 지명 및 투표를 통해 청빙서에 어떤 이름을 적을지 결정한다.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목사 또는 인증된 성직 후보자는 당선이 선언되고 그 이름이 청빙서에 삽입된 후 다시 낭독된다. 그 후 의장이 청빙서에 서명하고 인증한다(부록 A-35 참조).

214.1 “모든 사람들이 조화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위해 가능한 모든 성실함과 부드러움을 사용해야 합니다.” (G.A. 1649)

215. 청빙은 본 교단의 목사 또는 좋은 명망을 가진 목사안수 자격 후보자 또는 본 교단과 동일한 교리, 행정 및 징계를 가진 다른 교단의 소속 목사 외에는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이는 선언법 제 248 조 1 항에 따라 안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A&P 1986, 357, 31 쪽)

215.1 노회와 의장들은 다른 사람이 후보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단, 본 교단 신학대학이나 본 교단과 연계된 신학대학에서 인준된 학생들은 졸업 예정 학기에서로 졸업 조건으로 안수 후보자 인준 시험이 유예된 후, 소속 노회의 허락과 소속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임시 의장 또는 생명선교국의 발표에 의해서 안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졸업생이 청빙 혹은 임명을 받기로 결정되는 경우, 졸업생에게 청빙이 전달되기 전에 절차가 즉시 중단된다. 절차는 후보자가 졸업하고 목사안수 후보자로 인정을 받은 후에 재개된다.

215.2 노회는 임시 의장이 청빙 또는 임명을 위한 후보자의 서류와 관련하여 생명선교국의 목회와 교회소명 사무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216. 고백 회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좋은 명망의 고백 회원 만이 청빙서에 대해 투표하고 서명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 준회원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라면 청빙서에 동의할 수 있다. (부록 A-29, A-35, A-36 및 A-39 참조).

217. 청빙과 동의는 장로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되지 않은 준회원과 다른 교인들이 서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한 명의 장로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부록 A-37, A-38, A-40 및 A-41 참조).

218. 청빙이 목회중인 목사에게 전달되는 경우, 그 교회는 이동 사유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19. 그런 다음 교회가 청빙이 심의중일 때 노회에 출석할 대표들을 임명한다.

220. 첫 노회 회의에서, 임시 의장을 맡은 목사가 임무의 수행을 보고하고 청빙서, 사례비 보증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노회는 임시 의장의 절차를 고려하고 청빙을 인준한다.

220.1 노회는 반대하는 수가 많거나, 제기된 이의의 심각성을 이유로, 또는 약속된 사례비가 필요한 최소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청빙의 인준을 거부할 수 있다.

221. 의결기관이 만족하는 경우, 청빙은 유지된다. 안수 후보자로 인준된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할 노회를 통해 상정되며, 후보자는 7 일 이내에 노회에 결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청빙이 승인되지 않거나 거부될 경우, 회중은 다시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A&P 1980, 218-221 쪽 참조).

222. 청빙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해당 노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 청빙서를 받아 이를 수락한 때에는,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의, 설교,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비평 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며, 성서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신학 및 교회사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시험들에 통과되면 노회는 안수와 임직 시기를 정하고, 공표문을 게시를 지시하며(부록 A-17 참조), 안수 및 임직 예배를 준비한다.

223. 공표문은 안수 또는 임직이 시행되기 두 주일전에 회중 앞에서 낭독된다. 특별한 경우, 노회는 공표문을 안수 일주일전에 읽도록 요구할 수 있다.

224. 삭제됨.

225. 청빙 받은 목사가 다른 교회의 목사인 경우, 222 항에 언급된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앞의 항목에 규정된 대로 청빙을 위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226. 청빙 중인 교회가 청빙된 목사와 같은 노회의 소속일 경우, 청빙이 인준된 후 즉시 그 목사가 출석하면 구두로, 출석하지 않으면 서신으로 소환되어, 15 일 이후에 열리는 노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한다. 이때 이동 사유서와 함께 사례비 보증서 사본도 목사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한다. 동시에 노회 회원 한 명이 그 회중에서 설교하고 청빙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임명되며, 이동 사유서 사본을 회중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 노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권면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목사의 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227. 청빙된 목사가 다른 노회 소속인 경우, 청빙서는 해당 목사가 소속된 노회로 송부되며, 이와 함께 회의록, 이동 사유서, 사례비 지급 보증서 사본이 포함된다. 청빙 심사를 위한 위원들은 노회와 교회 모두에서 임명한다. 서기가 청빙 대상 목사에게 통지하고, 이동 사유서 사본을 해당 목사에게 보낸다.

228. 청빙을 받은 목사가 청빙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노회에 통지하여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한, 노회는 의결을 하기 최소 10 일 전에 해당 목사가 소속된 교회에 소환을 통지하여, 필요할 경우 이동에 반대하는 그 사유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록 A-21)

229. 노회의 서기가 해당 노회 소속 목사에 보내진 청빙을 접수한 때와 다음 의결기관 회의 사이에 두 주일 이상 간격이 있는 경우, 서기는 청빙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해당 목사와 당회 서기에게 보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회 회의가 열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동의 이유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30. 청빙이 처리되는 노회 회의에는 적절하게 소환된 모든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한다. 먼저 노회의 청원 위원들과 청원을 주는 교회의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발언한다. 둘째로 청원을 받은 목사의 회중 위원들이 발언한다. 셋째로 청원을 추진하는 위원들이 답변한다. 그런 다음 청원 대상 목사에게 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노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청빙서를 목사에게 건네고, 목사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숙고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230.1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7 일이 허용된다.

231. 노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빙을 목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거부에 대해 상위 의결기관에 시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목사가 노회에 결정을 맡기고 노회가

이동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노회는 위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사건의 회의록 발췌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에 따라 상위 의결기관에 시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2. 노회가 이동을 승인하는 경우, 노회가 결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당 목사와 소속 교회 간의 관계를 해지한다(부록 A-23a). 노회는 청빙된 목사에게 다른 노회의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관련 절차의 회의록 발췌본을 해당 노회에 전달한다. 또한 노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목사가 떠난 교회를 공식으로 선언하고(부록 A-25) 임시 당회장을 임명한다. (선언법: A&P 1988, 285 쪽, 34)

232.1 노회는 청빙, 임명, 사임, 은퇴 등으로 인한 목회적 관계를 해소하는 날짜를 정할 때, 한편으로는 목사와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노회 또는 교단의 기관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미결된 재정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 노회는 이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인해 해당 청구가 당시 처리되지 않았다면, 목회적 관계가 해지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노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수와 정착

233. 안수권은 다른 노회의 요청에 따라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청빙을 발행하거나 임명을 승인한 노회에 속한다(210 항 참조). 정해진 날에, 회중이 모이고 노회가 성립되면 공표문이 적절히 공지되었음을 확인한 후 반환된다. 그 후, 노회는 모인 회중에게 이의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모였음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233.1 이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이의 제기는 노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된 이의가 있을 경우 노회가 해결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시킨다.

233.2 노회 서기는 목사 임직자가 연금 기금 가입자인지 여부를 안수식 전에 적시에 확인하는 것이 노회 서기의 의무이다.

234. 이의가 제출되지 않거나 즉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노회는 예정된 대로 안수와 취임, 또는 취임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노회는 예배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직무를 맡은 목사는 공예배를 주관하고 적절한 설교를 한다. 그 후 노회장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취해진 주요 단계를 설명하고 목사로 선출된 사람에게 안수 후보자에게 제시되는 질문(섹션 447 참조)에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447 항 참조). 235.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면 안수 후보자는 무릎을 꿇고 집례 목사가 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 중에 말씀과 성례의 직분을 맡은 담당 목사들의 안수하여 후보자를 성직자 직분에 엄숙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에서 인도와 성공을 거둘 것을 축원한다. 그런 다음 집례

목사는 그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네며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의결기관 이름) 노회의 권위로, 나는 당신을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며, 이 회중을 당신의 목회지로 정하고, 은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그에 관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어서 노회의 다른 회원들도 친교의 악수를 청한다.

235.1 안수는 기도와 안수례로 이루어지며, “참석한 목사들”만이 참여합니다. 취임은 기도 후에 엄숙한 초청과 친교의 악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참석한 모든 노회원들만이 참여한다. (임직 기간에 관한 규정은 A&P 1979, 470 페이지 참조).

235.2 안수 및 취임하는 사람이 보조 목사인 경우, 235 항을 적용하여, 집례목사가 노회의 이름을 호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을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며, (기간)년의 임기로 부목사로서 이 회중의 목회지에 당신을 임직시키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인정합니다”.

236. 그런 다음, 목사외 회중은 임명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해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권면을 받으며,, 회중은 축도로 해산한다.

237. 안수받은 목사는 신앙고백서(446 항)에 서약해야 하며, 그 후에 목사의 이름이 노회 명부에 추가된다.

238. 그런 다음 노회는 회중의 할 일에 관해 교회의 직분자들과 상의하고, 필요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선언법: A&P 1988, 279 쪽, 34)

239. 운영위원(또는 집사)는 임직 당일에 규정된 첫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0. 노회는 새로 임명된 목사에게 총회의 규정에 따라 연금 기금과 현재 요구되는 단체 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를 상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선언법: A&P 1987, 364 쪽, 31)

241. 청빙을 받은 사람이 안수받은 목사인 경우, 심의(222 항)는 필요하지 않으며(G.A. 1642), 안수도 반복되지 않는다. 다른 사항에서 절차는 안수 후보자로 인준된 경우와 동일하며, 의장이 기도한 후 친교의 악수를 청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의 권위로, 나는 이 회중을 당신의 목회지로 정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인정합니다.”

241.1 목회자로 임명되는 사람이 보조 목사인 경우, 241 항을 사용하되, 집례 목사는 노회의 이름을 호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나는 당신을 이 교회의 보조 목사로 (몇)년 임기로 임명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합니다”.

242. 선교사로서 안수받은 목사들은 특정 목회지에서 그들의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세워지며, 후보자에게 묻는 질문 중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진다 (448 항 참조).

휴직과 사직

243. 목사 혹은 디아코널 사역단회원이 2 개월 이상 담당 직무를 떠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속 노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4.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의 경우와 같이 회중을 소환하고(부록 A-23 참조), 그 후 사유에 따라 사임서를 수락하거나 거부한다. 사임이 수락되면 노회는 해당 직무가 공석임을 선언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부록 A-25, 또한 선언법: A&P 1988, 285 쪽, 34).

245. 은퇴 또는 병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사가 사역에서 은퇴하고자 할 때, 목사는 필요한 모든 정보와 병환의 경우 적절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 후 노회는 목사가 속한 회중을 방문하여 후속 회의에서 목사의 사임을 수락하기 전, 교회의 대표자들을 소환하여 교회의 이해관계를 청취하고, 목사에 대한 은퇴 수당, 은퇴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안에 관해 교회와 논의한다. 그런 다음,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그 판단을 기록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총회에 목사의 신청서와 그에 대한 자체 판단 및 모든 관련 서류를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최종 결정을 위해 총회에 전달한다(A&P 1987, 256 쪽 2 단란에 있는 목회자 관련 참조, 또한 선언법 참조): A&P 1988, 285 쪽, 34; 선언법: A&P 2014, 269 쪽, 21 참조).

245.1 은퇴 후 현재 또는 다른 목회지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우, 213.2 항의 권한에 따라, 노회는 해당 목회지 및 목사와 협의한 후, 상호 동의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

246. 목사가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장례식에 참석한 노회 회원들은 함께 모여 목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회의에서 노회가 적절한 의사록을 채택하도록 맡긴다. 또한 다음 노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설교 지원을 준비하여 이 절차를 보고한다.

246.1 “목사가 사망한 경우 각 노회 서기에게 부고 통지서를 총회 서기에게 보내어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A&P 1897)

247.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명예 목사”라는 용어가 적합한 용어이다. (2) 이 용어의 적절한 적용은 고령의 연약함으로 인해 책임을 사임한 후 나이 때문에 목사직을 재개할 수 없는 목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목사가 여전히 그들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 그 관계로 인해 그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목회적,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한, 이 용어를 목사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A&P 1883); 그리고 (4) 관할 노회가 이 용어 부여를 승인해야 한다(A&P 1883).

247.1 모든 목사는 교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든 명부에 부록으로 기재되어 있든 현재 재직 중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목회 직무(예: 세례, 결혼식, 장례식)를 수행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회 당회와 상의하고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교단 목사와 목사안수 후보자 인준

248. 다른 교단의 목사 및 안수 후보자 인준에 관한 법(A&P 1983)은 다음과 같다:

248.1 다른 교단으로부터 목사와 안수 후보자로 인준 받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선적으로 노회에 있다. 그러나 노회는 총회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특정한 경우 아래 248.5 항 및 248.6 항에 의거하여 생명선교국의 교육 및 가입위원회(302 항 참조)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48.2 교육 및 가입위원회는 총회를 대표하여 본 교단 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타 교단의 목사와 인증된 목사 안수 후보자들에 관한 모든 지원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248.2.1 일반적으로 다른 교단의 목사 및 인증된 목사 안수 후보자의 가입 신청은 우선적인 목회적 책임을 행사하는 있는 노회가 먼저 접수한다.

248.2.2 신청자의 적합성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노회는 그 판단을 기록하고 신청서와 그 절차의 발췌문 및 관련 서류를 교육 및 가입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248.2.3 노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가 본 교단의 사역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라고 결정할 경우, 노회는 다른 노회와 교육 및 가입위원회에 지원서를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248.2.4 신청자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본 교단의 지원을 받는 노회가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서를 교육 및 가입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가입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를 가입시키기로 결정한 노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8.3 교육 및 가입위원회 서기가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 노회에 공표하고 공표 공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두 달 동안 서기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48.4 신청자의 교단이 본 교단과 동일한 교리, 행정 및 규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총회에서만 가입 허가를 내릴 수 있다.

248.5 본 교단과 동일한 교리, 행정 및 규율을 가진 교단에 담임 목사 또는 신학 교수이거나 본 교단 사역의 일부 부서에서 특별 임명으로 고용된 목사로서 본 교단의 회중으로부터 청빙을 받기를 원하거나, 그러한 청빙을 희망하며 캐나다로 오기를 원하거나, 본 교단의 기관 중 한 곳에서 임명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목사는 총회에 의뢰하지 않고 교육 및 가입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총회와 상관없이 목사로 가입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248.5.1 위원회는 제 248.5 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첫 번째 회의에서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노회에 공문이 발송된 후 2 개월이 완전히 경과한 경우 즉시 승인할 수 있다. 2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정은 공문이 발송된 후 2 개월 이내에 노회로부터 적절한 이의 제기가 없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248.5.2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의가 노회에 의해 제기된 경우, 총회의 허가 없이는 신청자를 받을 수 없다. 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노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248.5.3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위원회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자의 모교단이 본 교단과 동일한 교리, 행정 및 규율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위원회는 추가 정보가 있을 때까지 신청자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248.5.4 위원회는 취해진 조치를 모든 관련 노회에 통지한다.

248.6 가입 신청자가 본 교단과 동일한 교리, 행정 및 규율을 가진 교단에서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지위에 있는 목사 또는 공인된 안수 후보자이지만 신청 당시에는 담임목사나 신학 교수 또는 그 교단의 업무 중 일부 부서에 특별 임명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봉사한 관할 노회와 현재 신청자의 이름이 등재된 노회가 긍정적인 추천서를 제출하면 총회의 승인없이 가입 자격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248.5.1 항부터 248.5.4 항이 적용된다.

248.7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면담해야 한다. 노회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노회가 면접을 주선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및 가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면접을 주선할 수도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제 3 자가 대신 면접을 진행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248.8 위원회는 신청자를 심사할 때 무엇보다도 신청자의 교리, 교단 행정과 규율에 대한 이해, 교육 성취도, 개인 이력 및 훈련, 신청 이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248.5 항 및 248.6 항에 언급된 특정 경우와 위원회가 발급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에 따라 총회에 추천을 한다.

248.9 목사 또는 안수 후보자를 받는 노회는 노회 관할 내에서 그들이 목사로 목회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본 교단의 역사와 정치에 관한 시험을 만족스럽게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248.10 가입 허가가 내려지고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노회는 해당 신청자가 목사 또는 안수를 위한 공인된 후보자에게 제시된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변하고 그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을 본 교단의 목사 또는 안수를 위한 공인된 후보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248.11 해당 사안에 대해 총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정식 인증 발췌본을 노회로 전달되면, 이에 따라 노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8.12 목사 가입을 신청한 노회 중에서 총회 또는 248.5 항과 248.6 항에 명시된 대로 생명선교국의 교육 및 가입위원회가 “캐나다장로교회의 역사와 그 규칙 및 절차 양식에 대한 지식을 노회의 심사를 통해서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 해당 노회에는 다음 권한이 부여된다:

- 248.12.1 노회가 총회의 보고를 받았을 때 해당 목사를 캐나다 장로교회의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 목사의 이름을 명부의 부록에 게재한다;
- 248.12.2 목사가 노회의 관할 내에서 성례를 집행하고 결혼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 248.12.3 12 개월 이내에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역사와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으며, 여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이 포함된다;
- 248.12.4 필요한 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될 때까지 목사의 노회 회원증은 보류된다;
- 248.12.5 다음 총회 전까지 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시간 연장을 요청한다.
- 248.12.6 본 교회의 역사와 정치에 관한 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노회는 가입에 부과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결의하고, 목사의 노회 회원증을 보류하는 제한을 해제하며, 이에 따라 교육 및 가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노회는 해당 목사의 가입을 진행하거나 목사의 임직을 인정하고 교단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248.13 생명선교국의 교육 및 가입위원회는 총회에 대한 보고의 일부로 지난 총회 이후 접수된 248.5 항과 248.6 항에 따른 모든 신청서와 그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기록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전근 및 해임

249. 교단의 모든 목사는 안수 증명서와 노회 회원 증명서가 보관된 노회의 돌봄 아래에 있으며 그 노회의 권위에 복종한다. 해당 노회는 목사의 행실과 사역의 정당한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교회 소속 목사에 관한 부록 I 참조).

249.1 목사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당회의 우선적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복음 사역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는 노회의 돌봄을 받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노회에 즉시 책임을 지게 된다.

250. 한 노회를 떠나 다른 노회의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목사 또는 공인된 목사 안수 후보생은 떠나는 노회로부터 전출 증명서를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안에 있는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언법: A&P 1989, 268 쪽, 65)

250.1 위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한 노회로부터 그 관할 내의 사역(예: 임시 공급 목사, 임시 목사, 파트타임 목사)에 임명된 경우, 임명한 노회가 그 목사의 거주 노회인 경우, 목사가 다른 노회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임명 기간 동안 안수증과 노회적 지위 증명서는 임명한 노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선언법: A&P 1989, 268 쪽, 65; A&P 2017, 279-80 쪽, 15).

250.2 전출 증명서(부록 A-12 참조)는 교단의 특정 노회로 보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251. 노회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법 절차에 계류 중인 사안이 없는 목사 또는 인증된 목사 안수 후보자에게 안수 또는 인증 사실을 명시하고 발급일 당시의 노회 소속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부록 A-15 참조)를 발급할 수 있다.

251.1 자격증명서를 받으면, 신청자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목사 또는 인증된 목사 안수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증명서는 총회의 허락을 받은 노회만 받을 수 있다. (A&P 1894)

해임

252. 설교와 성례전 담당 목사를 목회에서 해임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다. (징계 소송에 관한 345-380 항, 441 항, 부록 A-64 및 A-65 참조).

노회와 연결된 교단의 다른 의결기관

253. 노회는 대회와 총회가 만든 모든 조례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책임이 있다. (Dis. VII, 13 의 2 권)

254. 노회는 모든 고발, 항소, 소송, 그리고 당회가 송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참고자료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노회가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결정에 대한 항소 및 소송과 함께 모든 관련 서류를 상급 의결기관에 송부할 의무가 있다(313ff 및 G.A. 1643 문답 참조).

255. 노회는 적어도 2 년에 한 번씩 관할 내 모든 당회의 기록과 명부를 수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노회의 의무이다(32 항 참조).

255.1 노회는 각 기록의 명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심각한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며, 앞으로 피해야 할 덜 중요한 결함을 지적한다.

255.2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회는 당회 기록에 나타난 모든 진술을 검토하고 철회할 수 있다. 단순한 반복으로 잘못을 바로잡히기 어렵다면, 노회는 교단의 법이 여전히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교정을 위한 당회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55.3 노회는 또한 당회 기록에서 특정 구절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삭제 명령을 내린 노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255.4 노회는 당회의 결의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거나 당회의 회의록을 수정하도록 명령하기 전에 당회를 소환하여 당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56. 노회는 매년 공증된 명부 사본(176 항 참조)을 대회에 전달하고, 대회의 검토를 위해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257. 모든 노회는 1876 년 경계법(the Barrier Act)에 따라 총회가 송부한 헌의안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함으로써 교회의 법제화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57.1 경계법에 따른 제안에 대한 노회의 답변은 회의록 발췌록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부록 A-5 참조).

257.2 답변은 단순히 “승인” 또는 “불승인”이어야 한다. 승인에 대한 조건이 있거나 수정안이 수반된 승인은 거부로 간주된다.

258. “대표기관으로서의 총회에 관한 법률”(1876 년 및 개정판)에 따라, 모든 노회는 목사와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을, 장로와 동등한 수로, 함께 총회에 보낼 총대로 선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선언법: A&P 1992, 275 쪽, 31)

258.1 노회는 임명하는 노회의 구성 명부에 있는 총회 목사 또는 다이어코널 사역단자 회원을 총대로 임명한다.

258.2 노회는 임명하는 노회 관할 범위 내에서 당회 구성 명부에 있는 총회 장로들을 장로 총대로 임명한다.

258.3 모든 총대는 총회가 소집될 때 위임받은 노회 또는 그 노회 관할 내의 당회의 구성 명부에 있어야 한다.

258.4 2014 년 삭제됨.

258.5 2014 년 삭제됨.

258.6 2014 년 삭제됨.

대회

조직과 절차

259. 대회의 명칭, 관할 및 구성 노회는 총회에서 정한다.

259.1 총회는 일정한 넓은 지리적 경계와 민족, 언어 또는 문화와 관련된 이차적인 경계를 가진 노회들이 포함된 대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회는 대회의 다른 구성 노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회들에 대한 대회의 통상적인 의무, 권한 및 권위를 갖는다.

259.2 총회는 대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회의 다양한 책임과 자산을 관할 내 노회들에게 분배하는 계획에 만족하는 경우, 대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 계획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법률과 절차에 기록되어야 한다. (부록 K 참조)

260. 대회는 해당 관할 내의 노회 명부에 있는 모든 목사,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및 장로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회는 자체적으로 각 노회에서 임명한 대표들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대표 수를 결정하는 비율은, 대회 회원의 75%가 동의하는 경우, 대회의 상황과 수에 따라 대회가 결정한다. 총대 선임에 대한 규정은 총회의 대표 임명에 적용되는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78.3-278.7 및 278.9 항 참조). (선언법: A&P 1998, 248-49 쪽, 25)

260.1 각 노회의 서기는 각 정기 회의 최소 8 일 전에 대회 서기에게 해당 노회의 인증된 명부를 보내야 한다. 이 명부는 목사, 다이어코널 사역자 회원 및 장로가 대회의 회의에서 참석할 자격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260.1.1 대회가 노회 총대를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각 노회의 서기는 정기 회의 최소 8 일 전에 대회 서기에게 해당 노회의 총대 명부를 보내야 하며, 이 명부는 목사, 다이어코널 사역자 회원 및 장로가 대회에 참석할 권리를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260.2 노회의 인증된 명부에 이름이 없는 대표 장로는 자신이 소속된 당회 대표로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시해야만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위임장에는 노회뿐만 아니라 대회에서도 당회를 대표하도록 선출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60.3 대표 장로의 위임장은 대회의 정기, 특별 또는 긴급 회의를 포함하는 어떤 회의에서도 받을 수 있다.

261. 대회는 매년 최소한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총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대회 자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폐회 전에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261.1 대회가 노회 총대를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총대들의 과반수 동의하거나 또는 전체 노회 명부의 목사,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 및 장로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하면, 의장은 전체 대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62. 대회 의장은 각 정기 회의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노회는 의장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262.1 의장이 사망하거나 대회를 떠나면, 그 직무와 책임은 서기에게 승계된다.

263. 의장의 의무는 회의를 주재하고, 기도로 개회 및 폐회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투표를 실시하며, 결정을 발표하고, 징계를 선고하는 것이다 (13-17, 365 항 참조).

264. 대회는 서기를 임명하며, 서기의 의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토를 위해 총회에 매년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서류를 보관하며, 의결기관이 지시하거나 업무 성격상 필요할 때 회의록의 인증된 발췌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18-24 항 참조)

265. 대회의 정기 회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시간이나 장소로 연기될 수 있으며, 대회는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65.1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 회의 규정은 노회의 경우와 동일하다 (189 및 191 항 참조).

266. 긴급 회의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요구는 명부에 있는 15 명 또는 4분의 1의 회원, 둘 중 적은 수의 회원이 서명하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266.1 이러한 회의의 규정은 노회의 경우와 동일하다 (190 및 191 항 참조).

267. 노회 명부의 4 분의 1 또는 15 명 중 더 적은 수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회의 정족수를 구성하며, 그 정족수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노회의 회원 중 한 명은 목사이지만 의장이 아닌 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A&P 1928 및 1935).

267.1 대회가 노회 총대를 사용하는 사항을 선택한 경우, 의장(또는 대리 의장)과 여러 노회 중 두 개 이상의 노회를 대표하는 노회 대표의 25%가 정족수를 충족한다.

268. 대회는 위임을 통해 활동할 권한이 있다.

269. 총회는 다른 대회에서 온 목사,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그리고 장로들을 (교회 의결기구를 돕기 위해 임명된 장로) 평가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대회에 참석하며, 임명된 결의의 조건에 따라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269.1 대회는 교회의 모든 안수받은 목사나 다이어코널 사역자 정회원을 의결기관의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의결기관에 제출된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270. 모든 정기 회의에서 대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행동은 명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271. 대회는 자신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며, 그 업무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272. 대회는 관할 내에 있는 모든 회중으로부터 대회 경비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계를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할 수 있다.

권한과 의무

273. 대회는 그 관할 내에서 노회와 당회가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한 모든 사항을 처리, 명령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교리와 규율집 VII, 20 항)

273.1 대회는 자신의 범위 내에서 노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하고, 노회를 감독하며, 그 기록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필요시 참고 자료를 검토하고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며, 소장과 항소를 판단하고 처리하며, 청원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13 항 참조).

273.2 노회 기록을 감독할 때 대회가 준수해야 할 규칙은 노회가 당회 기록을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규칙과 동일하다 (255 항 참조).

273.3 대회는 노회 기록을 조사할 때, 그들을 권징 할 권리가 있지만, 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274. 대회는 “필요에 따라 관할 내의 성도들의 상호 동의와 지원을 통해 처리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을 위해” 설립된다 (교리와 규율집 VII, 19 항)

274.1 대회는 관할 내 교회의 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연례 회의나 기타 방식으로 교회의 삶을 증진시켜야 하는 일을 맡는다.

274.2 대회는 필요에 따라 교회 사역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고서를 노회로부터 받을 권한이 있으며,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자체적인 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274.3 대회는 대회 내에서 발생한 청원과 모든 일반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 총회에 전달할 권리를 갖는다.

275. 일반적으로, 대회는 관할 내의 특정 노회와 당회의 전체 권한을 가진다. (교리와 규율집 VII, 20 항)

275.1 대회는 총회가 위임한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275.2 대회는 사법 절차에 따라 (313-443 항 참조) 노회 방문자를 임명하고, 교회의 계획을 증진시키며, 종교 또는 윤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방식을 조사하거나 교회가 규율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

276. 대회의 모든 절차는 총회의 검토를 받는다.

276.1 대회 서기는 매년 총회에 대회의 진행 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이다.

276.2 대회의 모든 결정은 사법절차가 명시한대로 소장이나 항소를 통해 총회로 이관될 수 있다 (313-443 항 참조).

276.3 대회는 각 노회의 서기에게 최소한 회의 8 일 전에 목사안수 후보자 인준, 목사 임명 및 안수,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지명과 임명, 목사 및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의 가입, 이동, 사임, 정직, 면직 및 사망, 회중 및 선교지의 변화 등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대회에 보고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대회에 의해 총회에 보고된다.

총대

277. 총회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77.1 총회는 교단의 하위 의결기관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의결기관이 아니다. 교단의 헌법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며, 그 직무는 총대들이 소속된 노회로부터 받은 위임에 의해 해당 총대들에게 부여된다. 그 특정 직무가 완료되면 총대들은 더 이상의 권한을 갖지 않으며, 총회는 차기 총회를 소집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종료된다. 총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은 오직 대표성과 임시적 기구로서만 존재한다.

278. 총회를 구성하고 노회의 총대 임명을 규제하는 법(1877년 경계법에 따라 채택되고 이후 개정된 법)은 다음과 같다.

278.1 총회는 교단 노회의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모든 목사 및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단 회원 수의 6분의 1 과 같은 수의 장로로 구성한다. (선언법: A&P 1992, 275, 31 쪽, 258ff 항 참조).

278.2 노회 명부에 있는 이름의 수를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6번째는 6의 다음 높은 배수에서 계산한다.

278.3 각 노회는 총회 개최 최소 21일 전에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노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가 사임하는 경우, 노회는 총회 개최 8일 전까지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대신할 다른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노회가 대체 위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 명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석을 보충하도록 서기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거스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회 서기는 총회 개최 8일 전까지 수정된 총대 명단을 총회 서기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78.4 매년 총회 서기는 총회가 해산된 직후에 총회장이 선출된 노회와 연락하여, 그가 다음 총회에 총대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도록 지시받는다.

278.5 20214년 삭제 됨

278.6 2014년 삭제 됨

278.7 각 노회는 서기를 통해 정기 회의에서 임명된 총대의 인증된 명단을 총회 개최 최소 열흘 전에 총회 서기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후에 총대직을 사임한 이들을 대신하여

목사나 장로가 위임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총회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78.8 노회 서기는 노회의 총대들에게 총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조기 퇴장 하는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가 동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했다는 것을 총회 서기에게 입증해야 한다.

278.9 개회 시에 호명하는 명부는 총회 서기에게 전달된 여러 노회의 명부에서 임명된 총대들의 이름으로 구성된다. 총회 첫 회의에서 위원회를 임명하여 총대직이 뒤늦게 부여된 경우 및 명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총회는 명부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지시한다. 이렇게 수정된 명부는 총회의 최종 명부가 된다.

278.10 총회의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41 명의 총대가 필요하며, 이 중 한 명은 의장(또는 임시대리 의장), 20 명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임직된 목사나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 그리고 나머지 20 명은 시무 장로여야 한다. 그러나 21 일 전에 임명된 20 명의 총대가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모이면 총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279. 해당 법에 따라 대표로 선출된 목사, 디아코널 사역단 회원 및 장로의 총대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279.1 {장소}에서, {년}{월}{일}. 이 날, {노회명} 노회가 소집되어, 회의록에 기록된 결의에 따라 {숫자}명의 목사, {숫자}명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및 {숫자}명의 장로를 다음 총회의 총대로 지명 및 임명하였음을 확인하며, 그들에게 그곳으로 가서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그 앞에 오는 모든 직무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 및 교단의 헌법에 따라 협의하고, 투표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성실히 행한 것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280. 2021 년 삭제됨

조직과 절차

281. 총회는 일반적으로 연 1 회 열리며, 각 총회는 폐회하기 전에 다음 총회의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어떤 총회든 향후 5 년 동안의 총회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281.1 총회는 폐회되는 즉시 존재하지 않으며, "미처리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특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82.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직전 총회장, 직전 총회장 부재시에는 전 총회장의 설교로 공 예배를 드린다. 그 직후 기도로 총회가 구성되고, 최소 21 일 전에 임명된 총대들의 이름으로 구성된 임시 명부가 서기에 의해 인쇄된 형태로 제출된다. 총회가 구성된 직후 총회는 추천을 받아 총회장을 선출하며 총회장 임무를 시작한다.

283. 총회장의 임무는 총회를 구성하는 것; 각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것; 업무가 적절히 진행되고 회의록이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것; 투표를 집계하는 것; 결정사항을 발표하는 것; 총회의 권위를 가진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 것; 의결 기관이 부여한 여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284. 총회장은 논의 중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하거나 발의안을 제출하려면 총회장은 총회장석을 떠나야 하며, 총회 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지명해야 한다. 또한, 총회장이 사법 절차의 관련 당사자이거나 그가 속한 노회 또는 대회가 관련 당사자인 경우, 총회장은 총회장석을 물러나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총대를 대신 지명하여 총회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그가 임시 총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3-17 항 참조).

285. 각 총회의 총회장은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당연직 (직책에 의한) 구성원이다. 단, 교단 법률에 의해 구성원이 정해진 위원회는 예외이다. (A&P 1876)

286. 총회는 두 명 이상의 서기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모든 문서를 보존하고, 결정사항의 인증된 발췌문을 제공하며, 총회의 서신업무를 담당한다 (18-24 항 참조).

286.1 총회의 서기: 주서기와 부서기 또는 2 인 이상의 부서기들이다.

286.2 주서기는 서기의 업무를 분담하며, 각 서기는 자신의 서명이 있는 문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286.3 회의록은 총회장과 서기 중 한 사람의 서명으로 인증된다.

286.4 총회 결정사항의 발췌문은 서기 중 한 사람의 서명이 포함된 사태로, 총회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수신 자격이 있는 당사자에게 발송된다.

287. 총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총회장이 임명된 후 첫 번째 직무는 한해 동안의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회 명부를 받는 것이다. 경건 훈련에 할애할 시간 분량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88. 총회는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 실무 위원회 및 특별히 총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의할 기타 위원회를 임명한다. 총회는 필요시 항소 및 소장을 다룰 사법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313-443 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총회는 또한 연중 여러 부서에서 교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총회에 보고하는 상임 위원회를 임명한다.

288.1 총회의 상임 위원회를 지명할 위원회는 캐나다 장로 교회 회원 9 명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은 자신의 관할에 따라 대회에서 지명되고 총회가 임명한다. 각 대회는 매 3 년마다 2 명의 위원을 지명하며, 각 대회 지명은 성직자와 비성직자가 번갈아 지명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된다. 각 위원은 3 년의 비연장 임기로 섬기며 매년 3 분의 1 의 회원이 퇴임한다.

289. 총회는 권한이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289.1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일반적으로 전 총회 의장이 참석한 경우 그가 의장을 맡는다. 총회의 서기가 서기로 활동한다.

289.2 위원회는 사법 및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명된다. 입법 기능은 없다.

289.3 위원회가 권한을 초과하거나 교단의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다음해 총회에서 그 해당 절차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90. 총회는 총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 위원회에 모든 사안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정과 판결은 최종적이며 다음 년도 총회에 보고된다.

290.1 특별 위원회는 필요시 결정을 보류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문제를 총회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

290.2 특별 위원회는 총회의 위원회(289 항)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으며, 다음해 총회에만 보고한다.

290.3 일반 또는 특별 위원회의 한 회기에서 판결한 사법 소송은 다른 회기에서 변경될 수 없으며, 다음 총회에서 반복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290.4 총회의 위원회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해당 판결이 의결기관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사안은 다음 총회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에 대한 불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291. 총회의 업무가 끝나면 마지막 회기의 회의록을 읽고 승인한다. 총회장은 총회에서 연설 및 찬송과 기도 후,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총회가 폐회되었음을 선언하고, 총회가 미리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음 총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 말씀과 성례전을 담당하는 목사인 총회장 혹은 성직자가 아닌 총회장이 축도를 위해 지명한 말씀과 성례전을 담당하는 목사의 사도적 축도로 모임을 마친다.

권한과 의무

292. 총회는 하위 의결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헌의, 참조, 소장, 및 항소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제출된 모든 사안을 수령하고 처리한다. 또한, 대회의 기록을 검토하고, 교단의 교리, 예배, 권징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목회 사역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규정하고 조정하며, 타 교단 출신 목회자와 목사 안수를 위한 인준 후보자들의 교단가입을 수락한다. 새로운 노회와 대회를 조직하고, 타 교단과 교류하며, 교단의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교단의 다른 부서의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부터의 보고서를 수령하고 처리한다. 또한 진실된 경건함을 증진하고, 오류와 부도덕을 억제하며,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채택한다.

293. 총회는 특정 사안과 관련해 교회의 법이라고 이해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선언법을 가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안은 노회에 제출하지 않고도 가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법률의 변경을 고려하는 모든 조치는 경계법 (A&P 1877)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293.1 교리, 치리, 통치 또는 예배와 관련되어 어떠한 준비된 법률 또는 규칙도 노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영구적 법률이 되지 않는다. 각 노회는 정기 회의나 해당 사안을 위해 소집된 특별 노회 회의에서 이를 검토해야 하며, 노회의 판단에 대한 회의록 발취문을 다음 총회의 회의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293.2 총회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출석인원의 2/3 이상이 투표로 제안한 법률이나 규칙을 임시 법령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총회에서 노회들이 본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때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다.

293.3 교단내 과반수의 노회가 승인을 표명하면 총회는 그러한 제안된 법률이나 규칙을 교회의 **항시적 법률이 되도록 가결**할 수 있다. 과반수의 노회가 불승인을 표명하면 총회는 그러한 제안된 법률이나 규칙을 거부하거나 다시 **각** 노회로 돌려보낼 것이다.

293.4 교단의 과반수의 노회가 경계법 제 293.1 항에)에 따라 보내진 보고서에 응답하여 제안된 법률이나 규칙에 동의하고, 노회의 과반수가 노회의 구성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장로들의 실제 과반수를 구성하는 경우, 총회는 제안된 법률이나 규칙을 교단의 **항구적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

294.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는 **계류 중인 사안**에서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총회는 **기존 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 역할만을** 할 수 있다.

295. 총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러나 소수의 의원이 상반된 의견으로 투표한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총회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와 견해를 같이하는 어느 총대가 최종 결정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며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다. (91~92 항 참조).

위원회

296. 총회는 상임 위원회를 지명하는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실무 위원회를 지명한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네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일반적으로 총회를 주최하는 노회의 인사), **전 위원장**, 다음 총회가 개최될 노회의 **인사**, 주 서기 또는 **서기가 지명한** 대리인.

이 실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96.1 이 위원회는 총회에 제출된 모든 헌의안 등을 총회 서기를 통해 수령하고, 그들의 형식과 절차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월 1 일 이전에 받은 헌의안 중 형식과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은 조건에 따라 총회 이전에 교단의 적절한 기관, 기구, 임원회 또는 위원회로 보내 2 월 1 일 마감일 이후 첫 번째 총회에 보고 되도록 해야 한다.

296.1.12 월 1 일 마감일 이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전달된 헌의안을 심의하는 교단의 기존 기관, 기구, 임원회 또는 위원회가 총회에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296.2 의결기관, 위원회 또는 판결을 번복하려는 개인은 해당 문서를 총회의 위원회나 상임 위원회로 전달하는 방향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실무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으며 [해당 사안에 관한 문서를 총회의 위원회나 상임 위원회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전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실무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실무 위원회에 있으며, 어느 곳으로 보낼지 실무 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296.3 4 월 1 일 이전에 접수된 형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방향 어느 곳으로 해당 사안이 보내져야 할지에 대한 제안이 수반되지 않았거나, 실무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안건을 접수받은 경우, 이를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로 전달해야 한다. 만약 노회가 회부한 헌의안을 검토할 해당 기관, 임원회, 위원회가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예정이 없는 경우, 실무 위원회는 296.3 조에 따라 해당 청원을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96.3.14 월 1 일 이후에 접수된 안건은 다음 해 총회에서 제출하도록 총회 서기가 보관하고, 송부자에게 그동안 어느 위원회나 기관에 심의를 의뢰할지 요청할 기회를 부여한다.

296.4 실무 위원회는 사안의 [총회에서 의사 일정을 정하고 개회 회의 전에 모든 총대가 받아볼 수 있도록 안건 목록을 인쇄하여 배포해야 한다. 제 296 조 1 항에 따라 접수 및 회부된 건의안들은 총대들에게 전달되는 자료에 인쇄되어야 한다.

296.5 실무 위원회는 제 296.3 조에 따라 회부된 문서에 대한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의 결론을 기록해야 한다. 대한 조사결과를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

296.6 신규 또는 증액 지출이 필요한 사업은 총회 협의회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297. 교단 총회를 위한 모든 서류는 총회 서기에게 최소한 총회가 개최되기 16 일 전에 수취될 수 있도록 보내져야 한다. 이렇게 수취 되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297.1 목사의 안수 및 임직,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의 임명 및 취임, 목사 안수 후보자의 인준, 사망, 사임, 정직, 목사 및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의 증언, 그리고 관할 내 교회와 선교국의 설립, 해체 또는 변경과 관련된 대회에서 전송된 보고서들.

297.2 노회 또는 대회가 보낸 참조 및 항소 사안들, 이전 총회에서 보내진 모든 서류들(참고: A&P 1986, p. 283-84).

297.3 노회 서기는 매년 4 월 1 일까지 총회 서기에게 위임 사항에 대한 회신을 제출해야 하며 송금내역을 보, 이를 총회를 위해 정리 할 수 있도록 한다.

297.4 노회 서기는 총회에 총대들의 명단을 전달할 때, 박사학위를 소지한 총대의 학위명을 명시해야 한다.

297.5 노회 서기는 총회에 제출할 모든 헌의 및 청원의 인쇄본 두 부씩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매년 총회 서기가 노회 서기에게 발송하는 공문에 명시하며, 회부된 자료의 경우 2 월 1 일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 월 1 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해당 헌의안 및 청원서는 총회에서 사용할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단, 선거인 명부에 있는 이름에 관한 헌의안은 필요한 경우 후속 제출될 수 있다 (A-7a 또는 A-7b 참조).

297.6 프랑스어 사역과 프랑스어계 영어계 관계와 관련된 보고서와 권고사항은 두 공식 언어로 모두 인쇄되어야 하며, 총대들에게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참고: A&P 1969, p. 58).

298. 상임 위원회의 보고서는 매년 총회에서 회의 전에 총회 서기에게 묶어진 형태로 제출되어, 총회 개회 전에 서기가 상임 위원회에 보내는 회람을 통해 매년 지정된[공지되는] 날짜 이전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는 총회 개회 시 총대들에게 제본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99. 총회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을 가진 당사자들은 총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의 사본을 인쇄하여, 총회 회의록과 함께 묶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00. 총회 서기 및 총회의 기관, 위원회 및 사안에 따른 특별조직 등은 노회나 당회로 보내는 모든 연구 논문, 회부사항, 및 질의서가 총회의 기관, 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른 특별조직으로부터의 마감일의 세 달 전에 해당 서기에게 전달되도록 지시되어야 한다 응답 마감일 3 개월 전에, 각 노회나 당회 서기에게 전달되도록 한다.](참고: 부록 A-6).

301. 총회는 최대한 빨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1) 총회 서기, 대회 서기와 노회의 서기인 총대들, 그리고 총회가 임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목사,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장로들로 구성되며 노회가 한 명씩 노회원을 추천 할 수 있는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 (2) 실무

위원회(296 조 참조); (3) 총회대회기록대회, 총회, 및 총회 협의회 기록 위원회 총회, 총회의회; (4) 개선위원회 위임 사항에 대한 회신 분류 위원회 (5) 위임 위원회.

302. 교육 및 가입위원회는 생명선교국의 상임 위원회이며, 따라서 생명선교국을 통해 총회에 보고한다. 그러나 목사 또는 목사 안수 인준 후보자의 교단 가입, 그리고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신청이나 학생 및 예비 학생을 대신한 특별 접수 신청 과정에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모든 신청서를 접수하여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

302.1 특별 교육과정, 가입허가 등 지원자에 대한 교육 및 가입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회의 최종 결정 전에 추가 검토를 위해 해당 위원회에 다시 회부된다.

302.2 특별 안수 또는 교육 과정에 관한 교육 및 가입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정안이나 과정 기간에 대한 변경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1) 출석 및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2) 교육 및 가입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다음해 총회에 상정되어 총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를 받는 경우이다.

303. 총회는 특별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 총회장과 협의할 위원회를 지명한다 (A&P 1920).

304. 총회는 일반적으로 기관 보고서를 제출할 때 두 곳 이하의 주소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총회의 시간을 절약하도록 권고한다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임명된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지시한다(A&P 1920).

305. 총회의 위원회는 회의록이 기록되기 시작한 직후에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총회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06.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모든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선임한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는 항상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07. 총회는 여러 기관의 직무가 중복 혹은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있거나 이와 관련된 헌의 또는 권고안들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기관들 간에 통보하고, 해당 사안이 총회에서 다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실을 서기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A&P 1927). 308. 법안 및 헌의 위원회는 296 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그것들이 적절한 형식과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절차에 따라 전달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총회의 합법적 사업의 일환인지 여부를 검토 후 이를 전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법안 및 헌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직접 총회에 제기되어 총회에 의해 처리된다. 법안 및 헌의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의장과 서기를 지명한다.

308.1 총회는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가 보고할 때, 다양한 관련 헌의 사항을 회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원회에 대한 제안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의사록과 회의록 309. 실무 위원회는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사안들의 순서를 정하여 는 접수된 사안이 총회에 상정할 순서를 조정하여 매 회의마다 그날의 사업을 그날의 안전을 보고하며, 한다. 이는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가 총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권장하지 않는 한, 그 순서로 그대로 유지된다.

310. 총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각 모임의 일부시간은 경건 활동에 할애된다.

310.1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 총회 진행을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은 오직 총회장만이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311. 매일 회의록을 인쇄하고 총대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매일 아침 첫 모임이 시작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A&P 1920).

312. 총회 서기는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교단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사법절차

개요

원칙

313. 사법 절차는 교회의 의결기관이 권위 있는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는 교회 내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 및 시정하고 교회 의결기관들의 잘못과 오류를 바로잡는 데 사용된다.

314. 교회내 모든 갈등이 사법 절차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교회 구성원과 임원은 사법 절차에 의지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마태복음 18:15-17).

314.1 그러한 조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건강을 위해 엄숙히 기도한 후, 사법 절차의 시작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된다.

315. 사법 절차는 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순전히 민사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316. 교회의 고백교인, 임원, 목회자 및 다이어코널 사역단의 회원은 모두 사법 절차를 통해 치리와

목회적 감독을 받는다. 관련 의결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사법 절차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의

317. 사법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해석할 때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고발인: 피고발인이 속한 의결기관에 다른 개인의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사람.

고발장: 고발인이 징계소송을 개시하기 위한 근거로 위반 혐의에 대해 작성한 서면 요약본.

혐의서: 징계 소송에서 의결기관이 판결해야 할 위반 행위에 대한 서면 진술로, 입증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소환장: 교회의 정회원 또는 직원에게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교회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보장이다.

고소인: 소송에 대한 시정 소송이나 비징계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할 의결기관에 소장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를 칭한다

소장: 비징계 소송이나 시정 소송의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근거를 요약한 서면 요약본이다. 비징계 소송의 경우, 개인이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이다. 시정 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작위 혹은 부작위를 고발한 소송이다.

회원: 고백교인 (140, 140.1항 참조)

목회자: 설교와 성례전을 집례하는 목사 또는 목회중인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

위반: 성서 또는 캐나다 장로회의 표준 및 서약(444-451항)을 거부하거나 반하는 교리를 보유하거나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이다.

임원: 선거나 임명을 통해 교회 또는 의결기관에서 신뢰 또는 책임을 지는 직책을 맡은 사람. 임원은 경우에 따라 준회원일 수 있다.

당사자: 사법 절차에 주체가 되는 개인, 단체 또는 의결기관

목회 관계 해지를 위한 정책: (A&P 1998, 355-69, 27쪽, 총회에서 수시로 개정).

SASH 정책: 성적 학대 (Sexual Abuse) 및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처리 정책: (A&P 1993, 314-26쪽 및 총회에서 수시로 개정).

과정 개요

318. 사법 절차는 네 가지 과정으로 비징계 소송, 징계 소송, 시정 소송 및 항소이다.

318.1 비징계 소송은 목회자, 정회원 또는 임원에 대한 소장이 제기될 때 발생하며,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목회의 선한 질서 또는 목회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318.2 징계 소송은 개인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고, 그것이 정식 고발로 처리될 경우 징계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서나 교회의 확립된 규정 및 표준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교리가 포함된다.

318.3 시정 소송은 해당 의결기관이 잘못이나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의결기관에 소장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한다.

318.4 항소는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여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급 의결기관에 절차 및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한다.

관할권

319. 사법 절차는 일차 관할 의결기관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일차 관할 의결기관이 사법 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하급 의결기관에 통지한 상급 의결기관은 사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19.1 당회는 장로를 포함한 회원들에 대한 일차 관할권을 가진다.

319.2 노회는 교인 명부나 명부의 부록 또는 교회 명부에 등재된 목사와 안수 후보로 인증된 목사후보에 대한 일차 관할권을 가진다.

320. 징계 소송에 고발된 회원은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관할구역을 떠나 이사하더라도 전출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징계 소송에 피소되어 관할구역을 떠난 목사도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른 노회로 노회 증명서를 이전할 수 없다. (선언 법: 1994년, 279, 82쪽)

321. 회원이 한 당회에서 전출 증명서를 받고 다른 당회로 옮기는 중에 회원에 대한 징계 소송이 시작되면, 관할권은 회원이 전입하고자 하는 교회의 당회에 속한다.

322. 목사가 소속된 노회의 관할 밖에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된 경우, 해당 위반이 발생했다고 제기되는 지역의 노회는 위반 혐의자가 소속된 노회에 고발의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통지받은 노회는 자신의 관할 내에서 접수된 고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치를 진행한다.

323. 목회자가 목회적 직무 혹은 다른 사역을 하던 노회에서 다른 노회의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떠나는 노회로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의 노회로 그들의 회원자격이 이전되어야 한다. 회원 자격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해당 목회자가 거주하는 노회는 그들이 이전한 노회에 통지한 후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비징계 소송

개요

324. 교회 내에서 또는 회중과 당회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긴장상태 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소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소장에는 사소한 과실, 부적절한 행동, 의견 차이, 개인적 오해 또는 분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합쳐져 효과적인 목회를 저해할 수 있다.

324.1 교회 회원, 장로 또는 임원에 대한 소장은 당회에서 처리하고, 목사에게 대한 소장은 노회에서 처리한다.

교회 회원 및 임원에 대한 소장 제출

325. 당회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고소인은 위반 혐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마태복음 18:15~17).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 후에야 소장을 당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고소인은 위반 혐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당회에 소장을 제기하려는 의도와 소장의 성격을 알려야 한다.

325.1 소장 제출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본은 소장의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소장은 정중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장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부록 A-47 및 A-48 참조).

326. 소장을 접수한 당회는 고소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가진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조사위원회는 고소인과 소장 당사자를 따로 만날 수 있지만, 당회에 심의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양자와 반드시 함께 만나야 한다. 당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도출해야 한다:

- a.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결론.
- b.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
- c. 징계소송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

(부록 A-42 및 A-43 참조).

327. 교회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한 소장에 관한 결정은 시정 소송을 통해 재검토할 수 있다(381-392항 참조).

목사에 대한 소장

328. 교회의 목사에게 대한 청빙은 목사, 회중, 노회 간의 연합적 관계에 기초를 형성한다. 정기적인 노회의 방문은 무엇보다도 이 관계의 건강과 선한 질서를 확인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328.1 회중과 목사 사이의 대부분의 문제는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기도하며 직접 대면하여 처리해야 한다. 목사에게 대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고소인은 목사를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마태복음 18:15~17).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 후에야 일차 관할 의결기관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소인은 목사에게 소장을 제출하려는 의도와 소장의 성격을 알려야 한다.

328.2 소장은 노회의 정기 또는 특별 방문 후 노회 위원회에 의해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목사에게 대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목사와 만날 의무가 있다. (마태복음 18:15~17).

소장

329. 목사에게 대한 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목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장의 내용은 정중한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소장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330. 목사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당회는 소장에 대한 사항을 판결할 수 없지만, 332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노회 서기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한다. (부록 A-44 참조)

331. 목사와 당회가 해당 사안의 목회적 해결을 자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허용되며, 따라서 노회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기 전에 고소인에게 언제든지 소장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32.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는 소장을 노회로 보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 a. 고소인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b. 고소인이 소장 사본을 해당 목사와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c. 소장 내용이 합당하고 정중한 양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부록 A-45 참조)

333. 소장 전달을 거부한 당회의 조치는 고소인의 시정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부록 A-46 참조).

조사

334. 노회는 당회를 통해 혹은 정기 또는 특별 방문 후 노회 위원회가 준비하여 제출한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장의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임명하기로 결의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한다. 조사위원회는 가급적 노회 방문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노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소인, 당회, 목사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노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이들과 함께 만나야 한다.

334.1 당회의 일원이자 자신의 사역을 감독하는 노회의 일원이라는 이중 책임을 지는 목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절차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35. 조사위원회는 노회가 심의할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철저하게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보고서에서 다음 네 가지 결론 중 하나에 도달해야 한다:

- a. 해당 사안은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결된 것으로 간주됨.
- b.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합의 사항이 노회에 보고됨.
- c. 아래 336~338항에 명시된 대로 목회에 대한 비징계 검토가 권장됨.
- d. 해당 목사를 기소할 수 있는 혐의가 있으며, 이 경우 징계 소송이 시작됨.

목회 심사

336. 노회가 목회에 대한 비징계 심사를 시작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노회는 이 조치를 목사와 당회에 통보하고 명확한 심사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337. 목회 심사의 목적은 목회 관계를 바로잡거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회내 변화와 조치들을 취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목회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338. 심사의 조건은 해당 목사의 특정 목회에 대한 청빙의 성격을 고려하고, 당회나 회중 내 당사자의

불합리한 감정에 목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사 자체는 노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최소 4개월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 심사를 수행할 권한은 노회에 의해 조사위원회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임명된 위원회에 부여된다.

339. 심사가 끝나면, 심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목회 평가서를 작성하여 목사와 당회에 통지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노회는 다음 세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린다:

- a. 목회 관계를 지속한다는 결정.
- b. 동일하거나 수정된 심사 조건에 따라 심사를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
- c. 목회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

340. 노회가 목회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목사와 당회는 목회 관계 해지 방침에 따라서 소환되며, 노회(부록 A-23a)는 심사 위원회, 당회와 목사의 의견을 듣고 해지에 관한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관계가 해지되면, “목회 관계 해지에 관한 정책”의 조항을 따른다.

항소

341. 비징계 소송에서 상급 의결기관에 항소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은 목회 관계 해지 결정이며, 이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목사만 항소할 수 있다. 당회는 목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항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42. 이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과 당회가 가진 다른 문제들은 시정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81-392항 참조). 이러한 소송은 의결기관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오류를 다룰 수 있지만, 목회 관계를 해지하는 결정은 다룰 수 없다.

343. 목회 관계 해지 결정은 노회가 정한 기간 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목회 관계 해지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항소 기간 동안 목사는 그들의 직위를 유지한다. 항소에 근거가 없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때(100항 참조) 혹은 노회가 항소 기간 동안 목사가 그 직위를 유지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

343.1 “목회 관계 해지를 위한 정책”의 조건에 따라 전근 수당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목사가 회중과 교회를 상대로 하는 추가적인 청구나 항소가 없어야 한다.

344. 노회가 항소 기간 동안 그 판결을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목사는 상급 의결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의결기관의 징계사유 및 다른 시정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징계 소송

개요

345. 징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346. 징계의 목적은 진리의 유지, 그리스도의 권위의 옹호, 위반의 제거, 교회의 순결과 교화의 증진, 위반자의 영적 유익에 있다.

347. 위반 행위는 성서나 캐나다 장로교회의 규범 및 신앙 고백(444-451항)에 위배되는 누구든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교리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444-451항).

348. 신앙과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성서와 캐나다 장로교회의 규범 친 신앙고백다 (444-451항).

349. 고발된 위반 사항이 3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심각한 성격이 아닌 한, 그 사건은 사법 절차로 다시 다루이지 않아야 한다.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처리 정책(이하 SASH 정책)"에 해당하는 소장들은 심각한 성격의 사안으로 간주되며 위반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정책에 따라 처리된다.

349.1 섹션 350, 351, 352 및 353항은 SASH 정책에 따라 제출된 소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49.2 교회 내 괴롭힘 관련 고발장은 교회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A&P 2021 515-19, 38페이지)에 따라 처리하거나 고발장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징계 소송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349.3 교회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기된 고발장에는 350, 351, 352 및 35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발장

350. 징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고발인은 위반 혐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마태복음 18:15~17). 이러한 노력이 실패한 후에야 의결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발자는 피고발인에게 고발장을 제출하려는 의도와 혐의의 성격을 알려야 한다.

351. 징계 소송은 한 명 이상의 고발인이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고발인 또는 고발인들이 서명하여 피고발인을 관할하는 의결기관의 서기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피고발인에게 제공하면 개시된다. 고발장은 정중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입증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

352. 관할 의결기관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여 고발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여 효력있는 증거가 혐의 혹은 혐의들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하고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의한다. (부록 A-49 참조)

353. 조사위원회는 최소 2인으로 구성되며, 고발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고발인, 피고발인 및 양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면담하고 혐의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만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의결기관에 보고하고 다음 다섯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도출해야 한다(부록 A-50 참조):

- a. 증거가 부족으로 고소가 철회되거나, 양 당사자가 해당 사안에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합의한 경우.
- b. 양 당사자와 위원회가 모두 만족할 만한 문제 해결에 도달하여 고발이 취소된 경우. 이 경우 위원회는 고발인, 피고발인 및 위원회가 서명한 해결 조건을 서면으로 의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c. 조사위원회는 효력이 있는 증거를 신중하게 조사하고 고려한 후, 계속 진행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의결기관에 소송의 기각을 권고한다.
- d. 피고발인이 고발인이 만족할 만한 자발적 자백을 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의결기관에 보고하고 피고발인에게 의결기관의 심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의결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결기관은 이를 결정한다. 그 후 의결기관은 징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결정에 앞서 조사위원회와 피고발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e. 고발장이 충분히 심각하고 증거가 효력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혐의가 의결기관에서 입증할 만큼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다.

353.1 SASH 정책에 따라 교회 의결기관 재판이 필요한 경우, 소장은 354.1항에 따라 혐의서로 처리된다. 이러한 혐의서에는 섹션 354~375 및 섹션 393~443이 적용된다.

혐의

354.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피고발인에게 하나 이상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면, 조사위원회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임명된 다른 위원회가 혐의서를 제출하고 의결기관은 혐의/혐의들을 다루어야 한다. (부록 A-51 참조)

354.1 혐의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혐의가 되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증거 요약과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환할 증인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355. 하나 이상의 혐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의결기관은 피고발인에게 혐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재판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 의결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 이상을 기소인으로 임명한다. 고발인은 기소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부록 A-54 및 A-55 참조).

재판

356. 의결기관 또는 의결기관에서 임명한 위원회가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당사자는 의결기관을 대표하는 기소측과 피고발인이다. 사건을 조사한 사람은 증거를 제시하거나 소송의 기소를 도울 수 있지만, 소송이 결정되는 동안에는 의결기관의 일원으로서 심의, 투표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

356.1 당회 또는 노회가 SASH 정책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교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당회의 경우에는 당회에서, 노회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재판을 열어야 한다.

356.2 SASH 정책에 따라 피고소인이 당회 또는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 당회 결정의 경우에 노회에서, 노회 결정의 경우 교단회의나 총회에서 재판이 열린다.

356.3 SASH 정책에 따라 고소인이 당회 또는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 당회 결정의 경우 노회에서, 노회 결정의 경우 교단회의나 총회에서 재판이 열린다.

357. 의결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절차를 완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상급 의결기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358. 의결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재판을 위해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날짜는 출석요구서 후 최소 10일 이내 날짜로 의결기관이 정해야 한다.

358.1 출석요구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a. 피고발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결기관
- b. 출석시간과 장소
- c. 피고발인의 이름
- d. 고발인의 이름
- e. 고발된 혐의에 관한 진술

358.2 첫번째 소환장에는 제기된 혐의에 대한 증명 사본과 증인 및 증거로 제출할 문서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358.3 증인은 406~408항에 따라 교회 의결기관의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

359. 피고발인이 첫 번째 소환장에 불응하는 경우, 최소 재판 10일 전에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기관은 법정 모독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피고발인이 출석한 것처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359.1 피고발인이 고의로 불출석하거나 잠적하여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의결기관은 피고발인이 출석하여 소환장에 응할 때까지 피고발인의 직분 및/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59.2 피고발인이 교회 의결기관의 권위를 모독하거나 불복종할 경우 법정 모독 혐의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360. 어느 의결기관에서든 목사 또는 교회 회원은 의결기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자문으로 활동하거나 법정에서 피고발인을 대리할 수 있다. 피고발인은 그렇게 대리권을 보유한다.

360.1 자문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360.2 당사자의 자문으로 활동하는 의결기관의 구성원은 364.5항에 따라 모든 절차에 피고발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심의, 투표 또는 기타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361. 절차의 전체 회의록은 의결기관 또는 위원회의 서기가 보관하지만,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영구기록에 기재하지 않는다(제30조 참조).

362. 총회를 제외하고, 재판의 어느 한 당사자든 절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의는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362.1 의결기관의 명령 또는 증거 채택과 관련하여 의결기관이 내린 결정은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363. 증거는 증거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416-432항 참조).

364. 재판은 아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364.1 의장이 법정을 구성한 후 서기는 소환장 발부에 대해 보고한다. 당사자들 및 그들의 자문자들의 출석을 기록한다. 의장은 법정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피고발인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된다.

364.2 422조에 따라 당사자들과 증인들은 선서를 한다.

364.3 의장은 혐의 혹은 혐의들을 낭독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발인에게 각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명시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무죄”의 의미로 간주한다.

364.4 증거는 다음과 같이 조사된다.

- a. 기소측과 피고발인은 차례로 개시 진술을 한다;
- b. 기소측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을 부른다;
- c. 피고발인은 반대 심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 d. 피고발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을 부른다;
- e. 기소측은 반대 심문할 권리를 가진다;
- f. 피고발인과 기소측은 상대방의 반대신문 후 증인을 재심문할 권리를 가지며, 이 재심문은 증인의 직접 신문에서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던 반대신문 중 제공된 답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 g. 기소측은 피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h. 피고발인은 다시 반대 심문할 권리를 가진다;
- i. 최종 진술은 먼저 피고발인이, 그 다음에는 기소측이 한다.

364.5 그 후, 의결기관은 당사자들과 모든 자문자들을 퇴실시킨 후 별도로 모여 심의한 후 평결을 내린다.

364.6 의결기관은 제시된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혐의가 제기된 위반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격성을 가지고 확률의 균형 기준을 적용하여(433조 참조) 과반수 찬성으로 각 혐의에 대한 평결을 결정해야 한다.

364.7 각 혐의에 대한 판결은 “유죄” 또는 “무죄”로 한다. “입증되지 않음”의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A&P 1896).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결기관은 피고발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364.7.1 피고발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364.8 의결기관은 당사자를 의결기관으로 소환하여 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의결기관이 피고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 의결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피고발인의 요청에 따라 부과할 합당한 징계에 대해 검사와 피고발인에게 추가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제201.3조 참조).

364.9 의결기관은 징계에 관한 증언을 들은 후 징계 문제를 결정하고, 그 후 항소가 보류되지 않은 경우(397조에 따라) 휴정 또는 정를 거친 후 징계를 집행한다.

권징

365. 교회의 권징은 훈계, 책망, 교회에서의 권한 또는 직분 정지, 회원 자격 또는 직분 박탈, 출교 등이며, 이 모든 권징은 의장이 의결기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366. 권징 집행은 의결기관의 권위로 행하는 목회적 행위이며, 엄숙하고 온유하며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행한다.

367. 훈계는 위반자에게 엄숙하게 말하고, 위반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신중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훈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368. 책망은 하나 이상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자백 후에 적용되는 더 높은 형태의 권징이다. 의결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69. 교회 권한 정지는 투표나 성찬 참여와 같은 회원의 특정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정지 기간은 더 길거나 짧을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 위반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위반에 대한 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의결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책망에 추가될 수 있다. 해당 권한은 정지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원된다.

369.1 교회 회원의 특정한 특권에 대한 임원의 정직에는 직분 정지가 포함된다.

370. 직분 정직은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 따른 책임을 박탈하는 것이다. 정직은 기간의 제한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제거된 모든 권한이나 책임은 정직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원된다. (부록 A-69 및 A-70 참조).

370.1 직분 정지는 반드시 교회 회원의 다른 특권 직분의 정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370.2 목사에 대한 정직의 경우, 노회는 이 조치에 대한 통지를 교단의 모든 노회에 보내야 한다.

371. 회원 자격 박탈은 당회의 고백 교인 명부에서 고백 교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다.

372. 직분에서 해임은 특정 직분에서 회원 또는 목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해당 직분에서 활동하는 데 적용된다.

372.1 직분에서 해임된 장로는 장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만, 복직 조건에 따라 다시 선출되어 봉사할 수 있다.

372.2 직분에서 해임된 목사는 특정 사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직분 해임에는 목회 관계가 해지와 그들의 이름을 명부 부록에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노회는 이 조치에 대한 통지를 교단의 모든 노회에 보내야 한다.

372.3 교회 내 선출직에서 해임된 회원은 복권 조건에 따라 재선출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373. 제명은 개인을 장로 또는 목사의 직분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반에 대한 자백 또는 유죄 판결에 따른다: 이단,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부도덕, 추악한 생활, 교회 법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거부, 교회 내에서 고집스럽게 분열적인 노선을 추구한 경우. 해임되면 장로는 더 이상 교회의 장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목사는 더 이상 교회의 목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섹션 252, 375, 441, 부록 A-67 및 A-68 참조).

373.1 목사의 제명은 목회 관계를 해지하고 노회 명부에서 목사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제명 선고는 회중 앞에서 낭독되고, 목사가 두 명 이상이고 한 직책이 공식으로 선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회지는 공식으로 선언된다.

373.2 노회는 교단의 모든 노회들에 사임 통지를 보내야 한다.

374. Deleted 2018. 2018년에 삭제 됨

374.1 Deleted 2018. 2018년에 삭제 됨

375. 목사나 장로가 다른 기독교 단체에 가입하여 본 교회의 직분을 포기하거나 본 교회를 탈퇴할 경우, 관할 의결기관의 기록에 그 사실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명부에서 삭제된다. 목사의 경우 모든 노회에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들에 대한 혐의가 조사중이라면 여전히 기소될 수 있다. 그들이 속한 단체가 비기독교일 경우, 의결기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분한 통지를 통해 더 이상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고 선언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섹션 252, 373, 441 참조).

항소

376.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발인 단독으로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기관의 판결 또는 부과된 권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 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정 소송을 통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모든 구성원이 시작할 수 있다. (부록 A-52 참조)

377.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후 새로 발견된 증거를 근거로 새로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의결기관은 제출된 증거가 중요하고 더 빨리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채택된 경우, 의결기관은 해당 재판의 모든 증거를 사용하여 이전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판결을 진행하며, 새로운 판결은 이전 판결을 대체한다.

378. 의결기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서기는 법정 기록을 작성하고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번호를 부여한 후 상급 의결기관에 송부한다. 총회에 송부하는 경우, 총회 이전에 교단회의가 없는 경우, 항소는 제297조에 따라 총회에 직접 송부해야 한다.

378.1 법정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관련 절차의 회의록과 발급된 소환장 사본 및 송달 확인서를 포함한 첨부 문서;
- b. 증거로 인정된 모든 문서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 c. 의결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서신 또는 인증 사본;
- d. 항소 통지서; 및
- e. 항소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서.

378.2 상급 의결기관은 이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문서도 고려할 수 없다(30항 참조).

379. 항소인은 사법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380. 시정 소송을 시작할 때 고소인은 소장 제기 이유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한다. 소송은 다음 장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시정 소송

개요

381. 시정 소송은 의결기관이 잘못이나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상급 의결기관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절차의 한 형태이다. 이는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는 의결기관이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상급 의결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고발

382. 시정 소송은 고발을 제기한 의결기관의 서기에게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소장은 소장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의결기관의 이름, 소장이 제기된 의결기관의 이름, 구제를 요청하는 특정 결정 또는 조치, 무조치, 그러한 구제를 요청하는 이유 및 요청된 구제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부록 A-58 참조)

383. 시정 소송은 다음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 a. 사안에 대해 투표한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기관의 조치, 무조치, 또는 결정으로 인해 의결기관이 오류 또는 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
- b. 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아니었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의결기관의 조치로 인해 비징계 사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
- c. 의결기관이나 위원회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회중의 당회, 또는
- d. 총회나 그 위원회가 아닌 상급 의결기관이나 위원회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급 의결기관.

384. 시정 사건을 개시하는 소장은 소장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또는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되어지는 오류나 과실을 발견한 후 30일 이내에 소장이 제기된 의결기관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급 의결기관 검토

385. 소장이 접수된 후 의결기관은 다음 정기 회의 또는 이를 위해 소집된 특별 회의에서 소장을 검토하고, 소장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단계를 수행한다(부록 A-56 참조):

385.1 추가 절차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장 제기자와 만날 위원회를 임명한다. 고소인이 소장을 철회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러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385.2 소장의 대상이 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기관이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의결기관은 소장을 제기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원래의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를 제기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원래 결정을 수정하거나 반복할 수 있다.

385.3 소장의 대상이 무조치에 의한 과실인 경우, 의결기관은 요청된 조치 또는 소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상급의결기관으로 송부

386.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소장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서기는 소장과 관련 회의록 및 문서 발췌본, 소장에 대해 의결기관이 작성한 답변서와 함께 다음 상급 의결기관으로 소장을 송부해야 한다. 총회에 송부하는 경우, 총회 이전에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장을 총회에 직접 송부해야 한다. 하급 의결기관은 또한 한 명 이상의 위원을 선임하여 상급 의결기관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다.

386.1 하급 의결기관이 소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소장을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재심리 후 원래 결정을 재확인하는 결정은 항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87. 소송을 접수한 상급 의결기관은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387.1 소장이 합당한 순서로 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한다.

387.2 소장이 합당한 순서와 사법 절차의 합당한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급 의결기관은 소장과 제기된 사안에 대한 하급 의결기관의 조치 및 절차 기록을 요청하고 검토한다.

387.3 당사자(고소인 및 피고인인 의결기관)에게 고려할 증거 및/또는 소환할 증인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87.4 필요한 경우 의결기관의 심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위원회를 임명한다.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합의 조건을 의결기관에 보고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상급 의결기관의 기록에 기재한다.

388. 의결기관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의결기관 또는 의결기관이 사건을 종결할 전권을 준 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와 모든 증인이 출석한다.

심리

389. 심리는 청원인이 첫 번째 개시 진술과 최종 최후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징계 사건의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364항 참조).

구제책

390. 상급 의결기관이 소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는 경우, 상급 의결기관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하급 의결기관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 의결기관이 필요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항소

391. 시정 소송의 결정은 고소인 또는 피고인인 의결기관에 의해 항소 될 수 있다. (부록 A-57 참조)

391.1 이러한 항소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92. 시정 소송의 항소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증거는 하급 의결기관이 판결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와 관련된 사법 기록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징계 소송에서 허용되는 “새로운 증거” 규칙(섹션 377 참조)은 소송의 본안에 대한 재심에 해당하므로 시정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

개요

393. 항소는 하급 의결기관의 판결을 상급 의결기관이 검토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393.1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은 이전 사법 절차의 결과이다.

393.2 의결기관의 비사법적 판결의 경우 시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93.3 시정 소송에 대한 하급 의결기관의 판결은 항소할 수 있다.

394. 항소 의결기관의 최종 판결은 결정 의결기관이 총회 또는 그 위원회가 아닌 한 항소인 또는 피고인인 의결기관에 의해 항소될 수 있다.

394.1 권징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원래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징계가 확정,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항소 사유

395. 항소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 a. 판결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의 잘못 또는 오류;
- b. 절차 또는 판결에서의 편견 또는 불공정;
- c. 교리상의 오류; 또는
- d. 권징이 경우, 지나치게 가혹함.

절차

396. 징계 소송, 시정 소송 또는 목회 관계의 해지에 대한 사법 절차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96.1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오류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96.2 항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항소인과 피고인의 이름;
- b.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
- c.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하나 이상의 근거;
- d. 소환할 증인 및 제출할 증거 목록;
- e. 요구되는 구제책; 그리고
- f. 원하는 경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소 중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

397. 항소 중인 판결의 집행정지 요청은 판결이 집행 정지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결기관이 입증할 수 없는 한 승인된다.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 항소인은 이 조치를 상급 의결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기관에 대한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록 A-53 참조)

397.1 SASH 정책에 따라 고소장으로 제기된 혐의를 판결한 교회 의결기관 재판에서 피고발인이 항소하는 경우, 39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항소에 대해 피고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의결기관의 판결은 정지되지 않는다:

- a. 항소를 심리하는 교회 의결기관에 신청하고;
- b. 항소가 경솔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 c. 항소 기간 동안 항소 판결이 정지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사례를 입증하는 경우.

397.2 340항에 따라 노회가 내린 목회 관계 해지 결정에 대한 목사의 항소 문제에서는 39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343항 참조).

398. 항소장은 항소 중인 판결이 내려진 의결기관의 서기에게 제출한다. 해당 의결기관은 항소장을 상급 의결기관에 송부할 책임이 있으며 소송 절차에 대한 사법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378, 379항 참조).

399. 항소장이 상급 의결기관에 송부되면 상급 의결기관은 사법 기록과 근거를 검토하여 항소가 합당한 절차로 진행되어 심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항소인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400. 항소가 합당한 절차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급 의결기관은 해당 목적을 위해 임명된 의결기관의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다른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다.

401. 상급 의결기관이 항소가 합당한 절차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단계가 완료된다.

- a. 심리 일정이 잡힌다;
- b. 당사자 및 증인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된다;
- c. 아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심리가 열린다;
- d. 의결기관은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 e. 당사자에게 394조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한다.

심리

402. 심리는 전체 의결기관 또는 사안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심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징계 소송의 재판과 유사하다(364항 참조):

- a. 항소인은 변론을 개시하고 종결할 권리를 갖는다.
- b. 소송은 항소 사유의 각 요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403. 판결 의결기관은 증거를 심리한 후 비공개로 만나 항소의 각 근거를 인정할지 기각할지 여부를

하나씩 심의하고 결정한다. 모든 근거를 뒷받침하려면 단순 과반수가 필요하며 결정의 근거는 '개연성의 균형'이어야 한다. (433항 참조).

404. 사법 소송의 항소 중에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항소 의결기관의 의견에 따라 그 증거가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의결기관은 새로운 재판을 위해 하급 의결기관에 사건을 환송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증거를 받아 소송의 판결을 완료할 수 있다.

구제책

405. 항소에 대한 근거가 하나 이상 인정되는 경우 의결기관은 요청된 구제책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하급 의결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05.1 의결기관은 원심판결의 파기나 수정,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평화, 화해 또는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와 같은 구제책을 명령할 수 있다.

405.2 의결기관은 항소에 부과된 모든 구제 조치가 합리적이며 항소 대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기타 조항

소환장

406. 소환장은 교회 개인이나 교회 의결기관이 그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에 출두하도록 소환하는 수단이다. 소환장은 의결기관의 명의로 발행되며, 소환 대상과 출석할 일시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소환장은 출석 요구일 최소 10일 전에 서기가 제공한다.

406.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서기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신청서에는 증인이 교회 의결기관에 제출할 관련 증거 또는 서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 증인이 의결기관에 제출해야 할 관련 증거 또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된 경우, 서기는 신청된 소환장을 발급해야 한다. 서기는 증인에 대한 소환 요청이 경솔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406.2 증인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증인이 법정에서 제출할 관련 증거 또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이 경솔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서기에게 서면으로 소환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406.3 증인에 대한 소환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기는 증인에 대한 소환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소환 취소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06.4 제406.1항부터 제406.3항까지의 조치는 의결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의결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07. 모든 경우에 소환장 송달 증명서(부록 A-63 참조)를 의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 회원은 증인으로서 교회 의결기관의 소환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록 A-59, A-61 및 A-62 참조).

407.1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처리 정책”에 따른 고소인은 교회 의결기관에서 자신의 소장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의 책임이 없다.

408. 증인은 교회 의결기관의 재판 또는 심리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소환되거나 요청받을 수 있다. 교회의 회원이나 직분자인 증인은 의결기관의 권한에 의해 소환되며, 그 외의 사람은 출석 및 증거 제출 요청만 받을 수 있다.

408.1 교회의 회원이나 직분자인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도록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 의결기관은 증인이 출석하여 소환장에 응할 때까지 회원 자격 또는 직분을 정지할 수 있다.

408.2 교회의 회원이나 직분자인 증인이 교회 의결기관의 권위에 대해 모욕적인 저항을 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다.

409. 징계 소송의 경우,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a. 피고발인이 출석해야 할 의결기관;
- b. 출석 일시과 장소;
- c. 피고발인의 이름;
- d. 고발인의 이름; 그리고
- e. 고발된 혐의에 관한 진술.

410. 공증된 혐의서 사본, 증인 및 증거로 제출할 문서 목록은 첫 번째 소환장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411. 징계 소송에서 의결기관이 혐의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의결기관에서 기소장 사본이 피고발인에게 전달된다. 피고발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기가 서명한 기소장과 소환장 사본을 피고발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발인의 거주지에서 다른 성인에게 남겨야 하며, 이는 사건 심리를 위해 지정된 시간 최소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전달할 경우 소환장에 서명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 할 경우 수령 시 서명이 필요하다.

412. 회중은 노회, 대회, 또는 총회에 의해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의결기관에 출석하도록 인용될 수 있다.

413. 회중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장과 서기를 통해 소환장을 당회에 전달하며, 이때에 회중의 대표자를 임명하여 소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라는 지시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소환장은 공동의회가 열리기 전 일요일에 강단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152항 및 부록 A-60 참조).

414.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회중은 필요에 따라 두 번째로 소환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기관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가 함께 전달된다.

415. 상급 의결기관은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하급 의결기관에 출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하급 의결기관 서기에게 소환장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증거의 규칙

허용되는 증거

416. 증거는 구술 증언, 기록, 서면, 물건 및 기타 사실의 존재 또는 부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417. 의결기관은 증인의 증언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418. 증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기관의 위임이나 다른 교회 의결기관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증거취득을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통지를 받아야 하며, 출석하여서 증인을 반대신문할 권리를 갖는다. 한 의결기관에서 채택하고 일반적으로 증명한 증거는 다른 의결기관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증인 심문

419. 소송 절차에서 증인이 소환되는 경우, 의결기관이 증인의 증언을 통해 사안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420. 구두 증언은 동일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서면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1. 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증인의 증언이 정황 증거 또는 문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22. 증인은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바 또는 질문받는 바에 따라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 422.1 고백 그리스도인이 아닌 증인은 다음과 같이 확언을 함으로써 심문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 또는 질문받는 바에 따라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423. 증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 해당 증인이 직접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인이 들은 것은 고인, 피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24. 증인에게 유도 심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 심문이나 증인이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더 많은 재량 범위가 허용된다.
425. 증인은 모든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심문 받는다.
426. 사건의 모든 당사자는 증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의결기관은 이의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427. 증인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이 작성한 글과 메모를 참고할 수 있다. 단, 해당 문서나 메모는 증언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증인은 직접적으로 메모에서 읽지 않아야 한다.

428. 교회 의결기관은 증인들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증인의 신뢰성은 증인과 당사자 간의 관계,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정신적 능력, 또는 성격이나 상황과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29. 어떠한 증인도 자신을 유죄로 보이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430. 배우자, 부모, 자녀는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지만 서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요당할 수 없다.

431. 증인이 의결기관의 구성원이더라도 해당 증인의 배제가 의결기관의 사법 행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다른 증인이 심리를 받는 동안에는 해당 증인은 소송 절차에서 제외된다.

432. 소송 절차에서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증인일 경우 의결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판결을 내릴 때 투표할 수 없다.

판결의 근거

433. 의결기관은 심의 과정중에 모든 증거를 함께 평가하므로 확률의 균형이라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확률의 균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려면 의결기관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된 위반 혐의와 가능한 처벌이 더 심각할수록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더욱 엄격하고 정확해야 한다.

433.1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 고려 중인 사안은 확률의 균형에 근거하여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433.2 징계 소송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질수록 의결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회복

434. 회개와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 교회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목회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435. 교회 회원의 모든 또는 일부 권한에서 정직 중이거나 직분에서 정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계속 교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며, 가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곳에 지속적으로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436. 징계를 부과한 의결기관이 위반자의 회개에 만족하거나 정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새로운 혐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징계는 철회되고 회복된다. 이 회복에는 추가적인 교회 징계의 성격이 아닌 사적 및 목회적 권고가 수반된다. 권한 회복은 직분 회복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437. 교회 치리의 목적 중 하나는 위반한 자의 영적 선함과 회복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권한을 회복해주는 것은 교회 의결기관의 의무이다

438. 징계가 공적이었다면 회복도 공적인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비공개적이어야 한다.

439.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는 자신이 속한 당회나 노회에 신청한다. 의결기관은 그들의 참회와 일관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려는 의도와 열정에 만족할 경우, 440에서 443의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의 제명 처분을 해제하고 교회 회원의 권한을 다시 허용한다.

440. 다른 당회나 노회에서 정직 처분을 내린 경우, 정직을 판결한 의결기관의 승인 없이는 복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복권을 신청하는 의결기관은 정직 처분을 내린 의결기관에 위반자의 회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441. 직분에서 해임된 목사는 노회가 회복을 허가한 경우 당회에 의해 회중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직위 복귀는 총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 노회가 결정할 수 있다. 문제의 사건이 끝났고 신청자의 복직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까지는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252, 373 및 375항 참조).

442. 해임된 장로는 노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분에 복직할 수 있다.

442.1 해임이 상급 의결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복직 또한 해당 의결기관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43. 징계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부과된 징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이 징계를 따르고, 불이행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고, 저지른 추가 위반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교회 공동체로의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준과 가입

1875 년 연합의 기초

444. 1875 년 6 월 15 일 화요일,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계된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계된 캐나다 장로교회 하부 지방 총회,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계된 해양 지방 장로교회 총회는 이전에 채택한 연합 조항에 동의하여 각 교회의 연합을 완성하기 위하여 약속에 따라 모였다. 이러한 조항은 전문, 기초 및 첨부된 결의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합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444.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윤리에 대한 유일무이한 무오한 규칙이다;

444.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본 교단의 부속 신조를 형성한다.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교단이 채택하여 성도들의 교육에 사용하도록 지정된다. 단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 포함된 '세속 통치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어떤 것도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완전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선언법: A&P 2001, 239, 41 쪽).

444.3 본 교단의 치리와 예배는 일반적으로 “장로교회 치리 제도”와 “공예배를 위한 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장로교회가 인정하는 원칙과 관행에 따라야 한다.

445.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445.1 1889 년 - “첨언은 “남자는 자기의 혈족과 가까운 아내의 친족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와 관련하여 의견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신앙 고백서 제 24 장 4 절)

445.2 1955 년 -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부록 E 참조).

445.3 1998 년 살아있는 신앙(Foi Vivante 2 판)이 부속 신조로 승인되었다.

목사 안수 위임 임명시 서명해야 할 서약 문구

446. 본인 {이름}은 목사 안수문과 질문에서 선언되고 수용하기로 요구된 모든 사항에 대해 본인의 서명을 통해 동의함을 증언합니다.

다이어코널 사역단 회원으로 입회 혹은 임직할 때 서약해야 하는 문구

446.1 본인 {이름}은 다이어코널 회원 임명문과 질문에서 선언되고 수용하기로 요구된 모든 사항에 대해 본인의 서명을 통해 동의함을 증언합니다.

목사 안수 또는 임명 시 성직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447. 안수문 및 안수 질문: (A&P 1992, 272 쪽 및 A&P 1998, 42 쪽)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비롯되며 그 사역에 의해 지탱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며 은혜의 언약의 사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모이고, 준비되고, 파송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세상과 복음을 나누고,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시오실 때까지 창조주께 드려야 할 예배와 봉사를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양육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목회자와 교사를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자신의 목회와 가르침을 위해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분별하고 안수를 통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에 특별한 책임을 맡겨서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계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을 인정하며, 에큐메니칼 신경과 종교개혁의 고백서 안에 담긴 교리적 유산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부속 신조는 1875 년과 1889 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54 년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 1998 년에 채택된 산 믿음(Foi Vivante),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백할 모든 교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노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안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선언문에서 따라 정해진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447.1 여러분은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증거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알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447.2 이 교회의 부속 신조를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조명과 교정을 받아 교리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447.3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로 이루어진 이 교회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합법적인 감독에 참여하고 순종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길을 쫓지 않고 성도들과 거룩한 공교회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까?

447.4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 안에서 당신의 사생활과 공적생활에서 그분의 복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을 약속하며, 세상에서 그분의 화해의 사명을 증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섬기는 데 부지런히 그리고 기쁘게 자신을 바치겠습니까?

안수받을 때 선교사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448. 447 편과 동일하다.

장로 서임 또는 임직 전에 던져야 할 질문들

449.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며, 그로 인해 유지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며, 은혜의 언약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모이고, 준비되며,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파송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세상과

복음을 나누고, 창조주께 창조물로서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을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사역을 위해 양육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장로를 포함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 교회 치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자 외에도 교회 안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치리의 은사를 주시고, 부름을 받았을 때 이를 실행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교회 운영에서 목회자와 함께 협력해야 하며, 개혁주의 교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을 시무 장로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계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과 에큐메니칼 신경과 종교개혁의 고백서 안에 담긴 교리적 유산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속 신조는 1875 년과 1889 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54 년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 1998 년에 채택된 산 믿음 (Foi Vivante),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백할 모든 교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진실한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선언문에서 정한 질문을 시무 장로 직분에 임직하는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449.1 당신은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증거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알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449.2 교회의 부속 신조를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조명과 교정을 받아 교리를 지키고, 신도들 가운데서 신앙, 예배, 봉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를 따를 것임을 약속합니까?

449.3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에 의한 이 교회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합법적인 감독에 참여하고 순종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길을 쫓지 않고 성도들과 거룩한 공교회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까?

449.4 장로의 직분을 수락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집사 임직 전에 던져야 할 질문들

450.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며, 그로 인해 유지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며, 은혜의 언약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모이고, 준비되며,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파송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세상과 복음을 나누고, 창조주께 창조물로서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을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사역을 위해 양육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장로를 포함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 치리 제도는 집사의 직분을 교회의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직제로 인정하며,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계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과, 에큐메니칼 신경과 종교개혁의 고백서 안에 담긴 교리적 유산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속 신조는 1875 년과 1889 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54 년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 1998 년에 채택된 산 믿음(Foi Vivante),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백할 모든 교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진실한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선언문에서 정한 질문을 집사로 임직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450.1 당신은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증거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알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450.2 교회의 부속 신조를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온정과 봉사의 사역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를 따를 것임을 약속합니까?

450.3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에 의한 이 교회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합법적인 감독에 참여하고 순종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길을 쫓지 않고 성도들과 거룩한 공교회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까?

450.4 집사 직분을 수락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교회의 자비의 사역과 세상에서의 선교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다이너코널 사역자 임직 및 임명 예식에서 던져야 할 질문들

451. 캐나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계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는 모든 교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의 역사적 연속성을 인정하며, 에큐메니칼 신경과 종교개혁의 고백서 안에 담긴 교리적 유산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부속 신조는 1875 년과 1889 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954 년의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 1998 년에 채택된 산 믿음(Foi Vivante),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백할 모든 교리를 포함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전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실패와 죄로 인해 끊임없이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조정할 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일부 성도들을 특별한 사역에 부르십니다. 이러한 전문 사역은 다이어코널 사역자로 임명함으로써 인정됩니다.다이어코널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들은 안수받은 성직자 및 평신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서 교회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기에, 노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캐나다 장로교회의 다이어코널 사역자로 임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1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알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451.2 교회의 부속 신조를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조명과 교정을 받아 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때 이를 따를 것임을 약속합니까?

451.3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에 의한 이 교회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합법적인 감독에 참여하고 순종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길을 쫓지 않고 성도들과 거룩한 공교회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까??

451.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당신의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을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해 긍휼과 열정, 지혜와 상상력,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까?

선언 법들 및 총회에서 채택 된 유효한 1925 년 이후의 해석

부록 목차

샘플 양식, 회의록 등 부록 A

회의록 및 발췌문 형식 A-1

증명서 및 포고문 A-8

청빙 관련 양식 A-27

사법 절차

비징계 소송 관련 회의록 양식 A-42

비징계 소송에서의 소장 제기에 사용되는 양식 A-47

징계 소송 관련 회의록 양식 A-49

징계 소송에서 사용되는 양식 A-54

시정 소송 관련 회의록 양식 A-56

시정 소송에서의 소장 제기에 사용되는 양식 A-58

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소환장 A-59

후보 자격 박탈 또는 징계 관련 회의록 양식 A-64

징계에 따른 판결 A-67

노회 방문을 위한 제안 질문 A-71

교단의 운영 기관을 규정 부록 B

공식 직위에 대한 임명 B-1

총회 협의회 B-2

교단 대학에 관한 정보 B-3

교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 B-4

합병하는 회중의 자산 처분에 관한 노회의 지침 (삭제됨 2002 - 섹션 200.11 참조)

캐나다 장로교 재정 이사회 설립법(1939), 제 13 조, 존속하지 않는 회중의 재산에 관한 조항에서
발취 B-6

재정 증서 부록 C

다이어코널 사역단 위원회 부록 D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 부록 E

병행 보조 기준 부록 F

기록 보관소 부록 G

기록 관리 G-1

수집 위임 G-5

법적 용어 정의 부록 H

회중과 함께하는 목사 부록 I

목사 후보생 관리 절차 부록 J

목표 J-1

돌봄과 상호 신뢰 J-2

인간적 및 실질적 문제 J-3

당회 추천 J-4

첫 인준 J-6

재 인준 J-8

안수 후보자 인준 시험 절차 J-10

대회의 해산 절차 부록 K

동성 결혼 및 LGBTQI 인물의 안수에 관한 정책 부록 L

부록 A

코드:

() = 대체 내용

[] = 지참

{ } = 삽입해야 할 특정 정보

FORM OF MINUTES AND EXTRACTS

회의록과 발췌본 양식

A-1 당회 회의록 양식

당회는 오늘 강단의 소환 (또는 개인 소환, 또는 휴회 후 소환)에 따라 모였으며 기도로 개회되었다.
출석: {이름}, 목사, 의장; {이름들}, 장로들.

지난 회의의 회의록이 낭독되고 (수정되고) 통과되었다.

{이름}는 {월}부터 {월}까지의 현재 연도 동안 {의결기관 이름}의 노회와 {의결기관 이름}의 대회의 모든 회의에 당회를 대표하도록 선출되었다 (또는, 기타 업무).

회의는 기도로 폐회되었다.

{장소와 날짜} [서명], 의장 [서명], 당회 서기

A-2 일반 소송을 노회에 문의하는 회의록 양식

당회는 이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전체를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에 조언을 위해 보내며,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다음 일반 회의에서 해당 노회에 소환되었음을 통지한다.

A-3 노회의 일반 회의 회의록 양식

오늘 {의결기관의 이름}의 노회가 모였으며 기도로 개회되었다.

출석: {이름}, 의장; {이름들}, 목사; {이름들}, 다이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그리고 {이름들}, 장로들.

지난 회의의 회의록이 낭독되고 (수정되고) 통과되었다. (논의된 사업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노회는 다음 회의를 {장소}에서, {월}의 {날}에, {연도}에 개최하도록 정하였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통지되었고 이 회의는 기도로 폐회되었다.

{장소와 날짜} [서명], 의장 [서명], 노회 서기

A-4 노회의 긴급 회의 회의록 양식

오늘 {의결기관 이름}의 노회가 의장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회람 편지에 따라 모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 요약 삽입] 그리고 기도로 개회되었다.

출석: {이름}, 의장; {이름들}, 목사; {이름들}, 다이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이름들}, 그리고 장로들.

회의를 소집하여 회람 편지에 명시된 긴급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이 취한 행동을 승인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 후 회의의 사안 내용].

회의는 기도로 폐회되었다.

{장소와 날짜} [서명], 의장 [서명], 노회 서기

A-5 일반 회의의 경계법(the Barrier Act) 하에서의 소환에 대한 회신에 관한 회의록 양식

[이는 발췌문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각 회신은 별도의 종이에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장소와 날짜}

오늘 {의결기관의 이름}의 노회가 모였으며 기도로 개회되었다. 노회는 지난 총회에서 다루어진 문제들 중 송달된 다음과 같은 이송 안건을 심의하였다: [안건 내용 삽입]; 노회는 이에 대해 승인한다 (또는, 노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의결기관의 이름}의 노회 기록에서 발췌한 {서기 이름}.

[서명], 노회 서기

A-6 총회의 참조 요청에 대한 회신에 관한 회의록 양식

{장소와 날짜}

오늘 {의결기관의 이름}의 노회가 모였으며 기도로 개회되었다. 노회는 지난 총회에서 다루어진 문제들 중에 {주제 이름}에 관한 참조를 위한 요청을 심의하였으며, 노회는 {노회의 의견은 어떠하다 혹은, 어떻게 해야한다}.

{의결기관의 이름}의 노회 기록에서 발췌한 {서기 이름}.

[서명], 노회 서기

A-7a 노회가 전송한 헌의문 회의록 발췌문

(이 문서에서는 총회에 제출되는 헌의안(청원서) 형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장소와 날짜}

이날,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는 기도로 개회하였다. 노회는 논의된 여러 사항 중에서, 노회는 다음 헌의안을 총회에 전달하기로 동의했다:

존경하는 총회에:

서언:

참고: 여기서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각 "서언(Whereas)" 항목은 헌의안의 요청이 수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는 존경하는 총회에 (서두의 기도문을 삽입) 하거나 총회가 판단하기에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겸허히 청원합니다.

참고: 이 항목은 서두의 기도문을 표현한다.

개회기도는 요청하는 조치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노회는 또한 이 헌의안이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이름을 삽입]에 회부되기를 요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규정집》 섹션 80.1 참조)

참고: 이 항목은 선택 사항이다. 헌의안이 특정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2 월 1 일 이전에 총회 서기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회부되지 않는 헌의안은 4 월 1 일까지 접수된다.

노회는 이 헌의안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승인, 반대 또는 의견 없음)

참고: 의결기관은 헌의안에 대한 지지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참고: 이 서식은 당회에서 노회에 헌의안을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시이다. 노회는 당회의 헌의안을 총회로 전송할 수 있다.

[서명], 노회 서기

A-7b 청원서 회의록 발췌문

이 문서는 총회에 제출될 청원서의 회의록 발췌문 형식을 안내한다. 청원서는 청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장소와 날짜}

금일, {청원인(들)의} 관련 사안에 대한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서명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회중 이름이나 노회 이름}의 {당회/노회}에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이 청원서를 검토하고 {의결기관의 이름}에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언:

참고: 여기에서 청원인들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요청이 수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각 "서언(Whereas)" 항목은 청원서가 수리되고 조치되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참고: 청원에는 청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상급 의결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 의결기관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청원인(들)은 {의결기관의 이름}에 다음을 요청한다:

참고: 여기에 청원인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조치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참고: 청원인의 인쇄된 이름과 서명이 여기에 삽입된다.

{의결기관의 이름}는 이 청원서를 {상위 의결기관 이름}에 전달합니다.

참고: 의결기관은 청원서에 대한 지지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승인, 반대, 또는 의견 없음.

증명서와 포고문

A-8 고백 회원 전출 증명서

본 증명서는 {이름}이/가 {회중 이름}의 고백 회원으로서 소속된 {회중의 이름} 교회를 떠나며, 이 증명서가 제시된 회중의 관리를 받아야 함을 증명합니다.

{장소와 날짜} [서명], 의장 [서명], 당회 서기

{이름} 가족은 총 {자녀의 수}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과 세례 날짜를 삽입]

이 형식은 고백 회원의 교회 전출에 대한 증명서 작성 시 사용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개인 정보를 채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A-9 고백 회원이 당회에 의해 제명된 사람의 증명서

본 증명서는 소지자인 {이름}이/가 한 때 캐나다 장로교회의 고백 회원이었으며, {회중의 이름} 회중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대략 {날짜}에 회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당회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보다 상세하거나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이는 당회의 처리 내역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인 진술 형태여야 한다].

{장소와 날짜} [서명], 의장 [서명], 당회 서기

이 양식은 고백 회원이 당회에 의해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개인 정보를 채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A-10 장로 위임장

이 증명서는 {이름}이 {회중 이름} 교회의 장로이며, {년}년 {월}일 {장소}에서 열린 당회 회의에서 {의결기관 이름} 노회와 {관할지역 노회 회의에서 당회를 대표하도록 임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장소와 날짜} [서명], 사회자 [서명], 당회 서기

A-11 장로 및 집사의 안수/임명을 위한 포고문

{이름}, 이 회중의 구성원으로, 이 회중에 의해 장로(집사)로 온전히 선출되었으며, 당회에서 승인되었기에 이로써 당회는 {년}년 {월} {일} {시간}에 해당 직분에 임명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전에 서임된 일부 사람들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수하는 것" 대신에 "{이름}을 입회시키는 것"이라고 읽는다.) 이 통지일로부터 10 일 안에 의장에게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이를 진행할 것입니다.

{장소와 날짜} [서명], 당회 서기

A-12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또는 목사를 위한 전출 증명서

본 증명서는 최근 {장소}의 목사 [또는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의 직분]였던 {이름}이/가 {의결기관의 이름}의 노회에서, 캐나다 장로교회의 목사(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로, 양호하고 정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 관리로 전출되며, 의결기관의 관리에 맡겨집니다.

{장소}에서 {년} {월} {일}에 노회에서 승인 됨

[서명], 노회 서기

A-13 목사 후보생의 전출 증명서

본 증명서는 {날짜}에 {이름}이/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이름의 법정}에서 목사 후보자로 인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양호하고 정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그들은 {의결기관의 이름}의 관리도 전출되었으며, 의결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장소}에서 {년}{월}{일}에 노회에서 승인 됨

[서명], 노회 서기

A-14 목사,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또는 목사 후보자를 위한 사임편지

본 편지는 (호칭) {이름}이/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의결기관의 이름}에서 {날짜}에 목사(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또는 목사 안수 후보자)로 안수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날부로 거룩한 공교회의 성직을 사임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월}{일}에 노회에서 승인 됨

{장소}[서명], 노회서기

A-15 목사,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또는 인준된 목사 후보자를 위한 자격 편지

본 편지는 (박사, 성별 호칭) {이름}이/가 캐나다 장로교회의 {의결기관의 이름}에서 {날짜}에 목사(안수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들은 목사(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또는 목사 후보자)으로서 양호하고 정규적인 지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본 편지에는 캐나다 장로교회 양식서 251 조에 따라 이 날짜에 양호하고 정규적인 지위로 승인되었지만, 캐나다 장로교회의 목사(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또는 목사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장소}[서명], 노회서기

A-16: 목사 이력 증명서

본 증명서는 {이름}이 캐나다 장로교회의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위해 임명되었으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양호하고 정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이름이 명부 부록에서 삭제되었고 [삭제 사유를 삽입]로 인해 캐나다 장로교회의 감독 아래 있는 목사로서의 지위가 중단됨을 확인합니다.

{장소 및 날짜}[서명], 노회의 서기

A-17: 안수 및 임직 공고 (말씀과 성례 목회)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는 이 회중의 목사(청빙된 {이름}의 안수 및 임직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므로, 해당 노회가 {년}{월}{일}{시간}에 {모임 장소}에서 모여 {이름}을 성직에 안수하고 이 회중의 목사(임직할 것을 공고합니다.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노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때까지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노회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 명령에 따라.

{장소 및 날짜} {서명}, 노회의 서기

A-18 인준 및 임직 공고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는 이 회중의 {직위 이름}으로 청빙된 {이름}의 인준 및 임직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므로, 해당 노회가 {년}{월}{일}{시간}에 {모임 장소}에서 모여 {이름}을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으로 인준하고 {직위 이름}으로 임직하는 것을 공고합니다.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있을 노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그 때까지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노회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노회의 명령에 따라.

{장소 및 날짜} {서명}, 노회 서기

A-19: 임명 공고 (말씀과 성례)

A-17 과 동일하며, “안수 및”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이름}을 성직에 안수하고 임직한다”을 단어를 “{이름}을 임직한다”으로 대체한다.

A-20: 임직 공고(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A-18 과 동일하며, “인준 및”을 생략하고 “{이름}을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으로 인준하고 임직”을 “{이름}을 임직”으로 대체한다.

A-21: 이동의 경우에 따른 소환장 (말씀과 성례)

{이름}을 회중의 목사로 청빙하는 안이 {회중의 이름}에서 노회로 접수되었으며, 해당 노회는 {년}{월}{일}{시간}에 {모임 장소}에서 열리는 노회에 대표를 선출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동의하고, {청빙된 사람의 이름}의 청빙에 이의가 있으면 노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청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숫자}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노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소 및 날짜} {서명}, 노회의 서기

A-22: 이동의 경우에 관한 소환장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A-21 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되 “회중의 목사”를 “{직위 이름}”으로 대체한다.

A-23: 사임에 관한 소환장 (말씀과 성례)

{이름} 목사의 사임이 제출되었으며, [A-21 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빙”을 “사임”으로 대체하여 작성.]

A-23a: 목회 관계 해지에 관한 소환장

{년}{월}{일}{의결기관의 이름} 노회가 {이름} 목사와 {회중 이름} 교회 간의 목회 관계를 {년}{월}{일}부로 해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해당 노회는 {년}{월}{일}{시간}에 {모임 장소}에서 열리는 노회에 대표를 선출하여 참석하고, 목회 관계 해지에 이의가 있으면 노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숫자}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노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A-24 사임에 관한 소환장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이름}, 이 회중의 {직위 이름}의 사임이 제출되었으며, [A-21 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빙”을 “사임”으로 대체하여 작성.]

A-25: 회중 목사직 공석 공고

{이름} 목사가 청빙(사임, 사망 또는 파면)으로 인해 사역을 마쳤으며, {의결 기관의 이름} 노회는 해당 목사직을 공석으로 공고하며, 교회법과 관례에 따라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석을 채우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 삽입.]

{장소 및 날짜} {서명}, 노회의 서기

A-26: 목사 청빙에 관한 조정 공고

{의결 기관의 이름} 노회 명의로 {회중 이름}의 청원에 응하여 {년}{월}{일}{시간}에 {모임 장소}에서 목사(또는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청빙에 대한 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장소 및 날짜} {서명}, 노회의 서기

청빙과 관련된 문서 양식

A-27: 목사 청빙 조정 청원서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에:

저희 {회중의 이름}의 청원인은 귀 노회가 목사 청빙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며, 조정 당일에 {금액} 달러에 해당하는 연간 사례비 지급 보장서를 준비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장소 및 날짜} {서명}, 회의 의장 {서명}, 회의 서기

A-28: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청빙 조정 청원서

A-27 과 유사한 문구 사용.

A-29: 목사 청빙서 및 노회에 사례비 보장서

우리 {회중 이름}의 성도는 {후보자 이름}의 신앙과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대한 자격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우리들을 귀하에게 인도하셨음을 믿고, 목사(또는 수석 목사, 부목사, 보조 목사)로 간절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청빙합니다. (파트타임 청빙의 경우, {x% 시간}으로 백분율을 표시) 귀하를 청빙하면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하며 사역에 존경과 격려와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회중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연간 사례비 {금액을 단어로 기재}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공할 것을 보장합니다.

연간 사례비:

옵션 A (교통비 포함) \$

옵션 B (교통비 제외) \$ (교통비는 \$/km 최대 \$ 까지 보상)

주택 수당

총액 \$

유틸리티 비용

우리는 위 금액을 매월 첫째 날에 지급할 것이며, 생활비 상승이나 목사의 필요를 고려하여 매년 사례비 수당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추가로 약속합니다.

1. 매년 2 주간의 연장 교육과 최소한 총회가 정한 수당을 제공합니다.
 2. 위 1 번의 혜택은 최대 5 년간 누적됩니다.
 3. 매년 5 주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를 보장받은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장 교육과 휴가 기간 동안 임시설교자의 설교비를 지급합니다.
 5. 장애나 장기 질병시 최소 총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례비, 주택 제공 및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임시설교자 설교비를 지급합니다.
 6. 총회 연금 및 복지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및 치과 보험을 지급하고, 연금저축을 지불합니다.
 7. 필요한 이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8. 기타 (도서비, 여가비, 인터넷, 휴대전화 등).
- {장소 및 날짜} [서명], 주재 목사 [서명], 회의 서기

A-30: 다아코니아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에 대한 청빙시 사례비 보장

우리는 {회중 이름}의 고백 성도들로서, 귀하의 복음에 대한 충성과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에 매우 만족하며,, 성령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인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청빙된 사람 이름}을 우리 교회의 {직위 이름}으로 청빙하며 [파트타임 청빙의 경우, {x% 시간}으로 백분율로 명시], 당신을 청빙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하며 사역에 존경과 격려와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 {청빙된 사람 이름}이 우리 가운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중 이름}의 성도들로서 캐나다 장로교회의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에 다음 사례비 항목을 보장하며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연간 사례비

옵션 A (교통비 포함): \$

옵션 B (교통비 제외): \$

교통비 보상: \$ /km 까지 연간 최대 \$

사택 (또는 주택/임대료 수당): \$

주택 수당: \$

총액: \$

유틸리티 비용:

우리는 위 금액을 매달 1 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구성원과 회의가 다른 지급 일정에 동의한 경우, 이 진술을 수정한다], 생활비 변화나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매년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을 추가로 약속합니다:

1. 매년 2 주간의 연장 교육과 최소한 총회가 정한 수당을 제공합니다.
 2. 위 1 번의 혜택은 최대 5 년간 누적됩니다.
 3. 매년 5 주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를 보장받은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장 교육과 휴가 기간 동안 교회가 필요로 하는 특별 지원 비용을 지급합니다.
 5. 장애나 장기 질병시 최소 총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례비, 주택 제공 및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특별지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6. 총회 연금 및 복지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및 치과 보험을 지급하고, 연금 플랜 조건에 따라 연금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7. 필요한 이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8. 기타 (도서비, 여가비, 인터넷, 휴대전화 등).
- {장소 및 날짜} {서명}, 주재 목사 {서명}, 회의 서기

A-31 2011 년 삭제됨

A-32 2011 년 삭제됨

A-33: 보조금을 받는 교회에 청빙 절차 진행 허가를 부여하는 노회 회의록 양식

우리는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로서 {회중의 이름}에 총회 최소 급여로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한다. 현재 이 금액은 {금액 (글)} 달러 {금액 (숫자)}이다. 이 금액 중, 교회는 보조금을 받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자체 자금에서 {금액 (글)} 달러 {금액 (숫자)}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노회가 교회 분담금과 총회 최소 급여 간의 차액을 보장한다.

A-34 2011 년 삭제 됨

A-35: 주재 목사의 청빙 증명

본인은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의 임명에 따라 이 청빙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며, 총 {총 성도 수}명 중 {자체 서명한 성도 수}명이 직접 서명하였고, {장로에게 대리 서명을 요청한 성도 수}명이 장로에게 대리 서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한다.

A-36: 청빙 동의서

{장소 및 날짜}

{서명}, 주재 목사

우리는 {회중 이름}의 성도들로서 {청빙된 사람 이름}의 청빙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이름 목록}

A-37 청빙서에 서명한 성도에 대한 장로의 증명

본인은 {회중의 이름}의 {서명한 성도 수}명이 내 앞에서 {청빙된 사람 이름}의 청빙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한다.

{장소 및 날짜} [서명], 장로

A-38: 장로에게 대리 서명을 요청한 성도에 대한 장로의 증명

본인은 {회중의 이름}의 {대리 서명을 요청한 성도 수}명이 {청빙된 사람 이름}의 청빙서에 대리 서명을 요청했음을 증명한다.

A-39: 주재 목사에 의한 청빙 동의 증명

{장소 및 날짜}

[서명], 장로

본인은 {회중 이름}의 {동의서에 서명한 성도 수}명이 오늘 {소명된 사람 이름}에게 청빙 동의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한다.

{장소 및 날짜}

[서명], 주재 목사

A-40: 청빙 동의서에 서명한 성도에 대한 장로의 재증명

본인은 {회중 이름}의 {청빙 동의서에 서명한 성도 수}명이 내 앞에서 {청빙된 사람 이름}의 청빙 동의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한다.

{장소 및 날짜}

[서명], 장로

A-41: 장로에게 동의서 대리 서명을 요청한 성도에 대한 장로의 증명

본인은 {회중의 이름}의 {청빙 동의서 대리 서명을 요청한 성도 수}명이 {청빙된 사람 이름}의 청빙 동의서에 대리 서명을 요청했음을 증명한다.

{장소 및 날짜}

[서명], 장로

사법 절차

비징계 소송에 대한 회의록 양식

A-42: 비징계 소송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소장 제기 시 회의록 양식

당회는 회중의 삶과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서면 소장을 접수한 후, 조사 위원회를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 범위를 설정했다 [조사 범위를 기입], 소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 다음과 같은 조건 [참조 조건 삽입]을 위해 조사한다. [326 항 참조]

A-43 A-42 에 대한 보고 시 회의록 양식

당회 {날짜}에 임명된 조사 위원회는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만났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회의 심의를 위해 보고했다: [326 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삽입]

A-44: 말씀과 성례의 목사 또는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에 대한 비징계 소송에서의 소장 제기 시 회의록 양식

당회는 이 회중의 {이름} 목사(또는,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의 이름) 이 소장을 접수하고, 노회의 판결을 위해 이를 노회에 전달함을 기록한다. [330 항 참조]

A-45: 목사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에 대한 소장 제기를 노회에 전달하지 않기로 거부한 회의록 양식

당회는 이 회중의 {이름} 목사(또는,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직위의 이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소장의 사본이 소장 제기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소장이 적절한 형식이나 존중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을 노회에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장 제기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시정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오늘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332 항 및 333 항 참조]

A-46: 목사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소장 제기를 노회에 전달하지 않기로 한 당회의 결정을 시정 소송으로 소장 제기자가 소장을 제기할 때의 회의록 양식

당회는 목사(또는,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의 이름)에 대한 소장 제기를 노회에 전달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이름}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소장을 385 에서 385.3 항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386 항에 따라 소장(또는, 소장의 사본)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노회에 전달할 것이다.

비징계소송과 관련된 소장제기 양식

A-47: 회중 생활 및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소장 제기 양식

{회중 이름} 당회장 및 다른 장로님들께,

서명한 저희는 [소장 요약 삽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회중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명자 이름]

A-48: 말씀과 성례의 목사 또는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에 대한 소장 제기 양식

{의결 기관의 이름} 노회 목사님께,

서명한 우리는 {회중의 이름}의 노회(또는, 고백 교인 또는 준회원)회원들로서 교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무감과 사랑으로 인해 {이름}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장로회의 개입을 요청드리며, 이 문제에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요약 삽입]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 노회에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노회가 최선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자 이름]

징계 소송 관련 회의록 양식

A-49: 징계 소송에서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의 회의록 양식

의결기관 347 항에 따라 범죄 혐의가 제기된 소송을 접수하고, 이는 적절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고발인이 서명하였으며, 피고발인에게 사본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하고, 명확한 임무 범위를 가진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여 이용 가능한 증거가 혐의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결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회의록에 임무 범위 삽입 및 352-353 항 참조]

A-50 징계 소송에서 조사위원회가 보고하는 경우의 회의록 양식

{이름}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고한다: [353 항에 따른 권고 삽입]

A-51: 징계 소송에서 의결기관이 혐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회의록 양식

{이름}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위원회는 혐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결기관은 혐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용어로 혐의를 제기한다: [혐의 삽입] (또는, 의결기관은 혐의를 제기할 위원회를 임명하였다.) [354 항 참조]

A-52: 징계 소송에서 항소가 제기된 경우의 회의록 양식

의결기관은 {이름}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항소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전 결정에 대한 설명, 항소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 및 항소인의 증인 목록, 원하는 구제책, 그리고 항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전 결정의 유보 요청을 전달한다. (96-396.2 항 참조) 또한 사법 기록의 사본도 함께 전달한다. (378.1 항 참조)

A-53: 징계 소송에서 의결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결정의 유보 요청을 거부한 경우의 회의록 양식

{이름}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결정의 유보 요청에 대해, 의결기관은 기도와 신중한 심의를 통해 결정이 유보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했다: [이유 삽입], 항소인이 이 소송을 상위 의결기관에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397 항 참조]

징계 소송에 사용되는 양식

A-54: 혐의 양식

서면으로 준비된 혐의는 명확한 범죄 설명, 증거 요약, 그리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인을 포함해야 한다. 혐의는 피고인의 교리나 관행이 어떻게 성경 또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기준과 서약에 위배되는지를 명시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354.1 및 444-451.4 항 참조]

A-55: 간략한 고발 양식

받는 사람:

{피고인 이름},

{회중의 이름}의 목사(또는, 인준된 안수 후보자나 디아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보내는 사람:

{회중의 이름}의 노회

제목:

{회중의 이름}의 노회에서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고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소장 내용:

당신, {피고인 이름},은 {연도}년 {월}{일}에 [고발된 혐의]를 저질렀으며, 이는 캐나다 장로교의 성경 및/또는 표준과 서약에 위배되며, 목사(또는, 인준된 목사 후보자나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로서의 직위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서명:

{의결 기관의 이름} 노회의 권한을 가지고, {장소}에서 {월}의 {일}에 서명되었다.

[서명], 노회 서기

FORM OF MINUTES RE CORRECTIVE CASES

시정 소송 회의록 양식

A-56: 시정 소송이 시작될 때의 회의록 양식

의결기관은 시정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날짜}에 있을 다음 정기 회의에서(또는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특별 회의)에서 소장을 검토하고, 385-385.3 항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A-57: 시정 소송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때의 표준 회의록

의결기관은 {이름}에 의해 제기된 시정 소송[386.1 항 참고]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항소를 접수하고, 386 항에 따라 관련 회의록 발췌본 및 문서와 함께 이 항소와 관련된 답변을 상위 의결기관에 전달하기로 결의한다.

시정 소송 관련 소장을 위한 양식

A-58: 시정 사건 관련 고발 양식

{의결기관 이름}에게

저(저희), 아래 서명한 이들은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결기관}의 결정에 대한 소장을 제기합니다:
[고발된 결정, 행동 또는 불만이 들어갈 부분, 이에 대한 불만 사유 및 요청하는 해결 방안을 명시]

따라서 회중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를 정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명들]

사법 절차에서 사용하는 소환장

[406-415 항 참조]

A-59: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피고 이름}에게

당신은 {의결기관의 이름}에서 {날짜}에 {장소}에서 열리는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피고에 대한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이 고발은 {고발자 이름}(또는 {의결기관의 이름})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소환장과 함께 첨부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과 증인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신에 대해 의결기관의 모독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린다.

[서명], 교단 의결기관 서기(또는 그의 대리자들)

A-60: 회중에 대한 소환장

{회중의 이름} 당회에게

{회중의 이름} 회중은 {날짜}에 {장소}에서 열리는 {의결기관의 이름} 앞에서 선택된 대표들이 출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당회는 이 소환장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일 예배에서 최소 한 번 이상 공지한 후 이 회의에 대한 대표자를 지명하도록 해야 한다.[항목 413, 152]

[서명], 교단 의결기관 서기(또는 그의 대리자들)

A-61: 캐나다 장로교 회원 증인에 대한 소환장

{증인 이름}에게

당신은 캐나다 장로교 회원으로서 {날짜}에 {회중 이름}의 {장소}에서 열리는 {의결기관의 이름}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피고 이름}에 대해서 [고발된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아는 만큼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 이름 명시]

[서명], 교단 의결기관 서기(또는 그의 대리자들)

A-62: 캐나다 장로교 회원이 아닌 증인에 대한 소환장

{증인 이름}에게

당신은 {날짜}에 {회중 이름}의 {장소}에서 열리는 {의결기관의 이름}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피고 이름}에 대한 [고발된 혐의]와 관해 당신이 아는 모든 증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이름 명시]

[서명], 교단 의결기관 서기(또는 그의 대리자들)

A-63: 소환장 전달 확인서

저(저희)는 {날짜}에 {피고 이름 또는 당사자 이름}에게 소환장과 모든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하여, (혹은 거주지에 있는 성인에게 맡겨서) (혹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서류가 전달되었음을 확인한다.

[서명], 교단 의결기관 서기(또는 그의 대리자들)

안수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이나 권징에 관한 회의록 양식

A-64: 목사 해임 시 회의록 양식

노회는 {년}{월}{일}에 {회중의 이름}의 목사{피고인 이름}에 대해 {년}{월}{일}에 제기된 혐의와 거기에 첨부된 증거와 함께 또는 그들의 유죄 자백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정당하게 심의한 후, 투표로 상기 {피고인 이름}을 파직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왕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위임하신 권능과 권위에 의거하여, 노회는 상기 {피고인 이름}을 거룩한 사역의 직분에서 해임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그 일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임한다. 노회는 또한 {회중의 이름}회중과 교단의 직위를 이 날짜부터 공식으로 선언한다.

그 후 노회는 {이름}이 기도에 참여하여 헌신을 인도한 후 의장 목사가 엄숙한 해임 선고를 선포했다.

노회는 또한 서기에게 교단의 모든 노회에 이 조치를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A-65 Form of minute in case of deposition of a member of the Order of Diaconal Ministries

A-65: 디아코널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해임시 회의록 양식

노회는 {년}{월}{일}에 {회중의 이름}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피고인 이름}에 대해 {년}{월}{일}에 제기된 혐의와 거기에 첨부된 증거와 함께 또는 그들의 유죄 자백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정당하게 심의한 후, 투표로 상기 {피고인 이름}을 파직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왕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위임하신 권능과 권위에 의거하여, 노회는 상기 {피고인 이름}을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직분에서 해임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그 일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임한다.

그 후 노회는 {이름}이 기도에 참여하여 헌신을 인도한 후 의장 목사가 엄숙한 해임 선고를 선포했다.

노회는 또한 서기에게 교단의 모든 노회에 이 조치를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A-66 인준된 안수 후보자의 자격 박탈시 회의록 양식

노회는 상기 {피고인 이름}의 인준된 안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어떤 강단에도 설 수 없으며, 청빙을 받거나 목회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기로 결의했다.

노회는 또한 서기에게 교단의 모든 노회에 이 조치를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권징 관련 선고

A-67: 목사의 파면 선고

{회중의 이름}의 목사{이름}가 {의결기관의 이름}노회에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노회는 이 사람이 기독교 목사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목사{피고인의 이름}를 직분을 박탈하고, 기독교 목사 직급에서 파면시키며, 기독교 목사로서의 역할 또는 그 일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A-68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파면 선고

{회중의 이름}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이름}가 {의결기관의 이름}노회에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노회는 이 사람이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피고인의

이름}를 직분에서 파면하고,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며 이로써 그들이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역할 또는 그 일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A-69: 목사의 정직 신고

본 의결기관에 의한 귀하의 소송 재판에서 {피고인 이름}이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는 이에 따라 귀하가 회개하고 정직 조건을 준수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본 의결기관에 제출될 때까지 기독교 사역의 직분 또는 그 일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정직시킨다.

A-70: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정직 신고

본 의결기관에 의한 귀하의 소송 재판에서 {피고인 이름}이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의결기관의 이름} 노회는 이에 따라 귀하가 회개하고 정직 조건을 준수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본 의결기관에 제출될 때까지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직분 또는 그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직시킨다.

노회 방문을 위한 질문 예시

A-71 목사에게

1. 귀하는 복음을 충실히 전파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2. 공예배를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준비하는가?
3. 세례를 어떻게 집행하는가?
4. 목회 돌봄의 실천으로 사람들을 심방합니까? 얼마나 자주 심방합니까?
5.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심방합니까?
6. 회중의 의결기관에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출석합니까?
7.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까? 평균 출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A-72 장로들에게

1.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당신은 담당 구역 내 가족들을 방문하고 조언하며 함께 기도합니까?
2. 일반적으로 회중 회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권징이 필요한 사안들을 당회에 보고합니까?
3. 고통받는 사람들을 심방할 때 정성을 다합니까?
4. 당회에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참석하며, 임명될 경우 교단의 다른 의결기구의 모임에도 성실하게 참석합니까?
5.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인도에 참여합니까?

A-73: 당회에게

1. 충분한 수의 장로가 있으며, 각 구역에 배정된 장로가 있는가?
2. 회의 및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혹은 때때로 갖습니까?

3. 청소년의 행동과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느끼고 잘 이행하도록 부지런히 지도합니까?
4. 담당내의 주일 학교들을 감독합니까? 교회학교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 지난 해에 성도들이 교회 사역 목적을 위해 드린 헌금은 얼마입니까?
6. 찬양 봉사가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7. 당신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종교가 갖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8. 교회의 재정 관리가 집사 또는 관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9. 노회에 보고하고 싶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습니까?
10. 보관중인 당회 기록과 기타 다른 장부나 등록부를 제출하십시오.

A-74: 집사 또는 관리자에게

1. 목사님께 드리는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2. 현재 해드리는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3.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재정적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됩니까?
4. 사람들이 적절한 자율성으로 교회 목적을 위해 헌금합니까?
5. 사례비는 어떻게 조달됩니까?
6. 업무를 위해서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6. 통계 및 재정 사항을 정기적으로 총회에 보고합니까?
7. 회중 기록 및 보관 중인 다른 기타 책을 제출하십시오.

부록 B

교단의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B-1 임원진 직책에 대한 임명

참고: 교단 내 임원 직책 임명에 관한 규정은 1930 년, 1945 년, 1960 년, 1974 년, 1988 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요약본은 1998 년 총회 협의회 보고서에 실렸다.

교단의 모든 기관은 임원 직책을 임명하기 전에 노회에 임명 제안을 통보해야 하며, 노회가 특별히 그 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명단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총회에서 임명된 직책은 총회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는 총회 협의회 심의를 거쳐 모든 임원 직책을 임명한다.

총회는 총무를 임명한다.

각 기관 또는 위원회는 협력총무를 임명한다.

임원 직원(총무의 경우 총회가, 협력총무의 경우 각 기관 또는 위원회가 임명하는 직책)은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임명한다. 사망, 사임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총회 사이에 직책이 공석이 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총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회에 추천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총회에서 직책이 결정되고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가 임명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 노회에 공석을 통보하고 이사회나 위원회가 임명하기 전에 노회에 추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기관이나 위원회가 직책을 신설하고 상근으로 임명을 하고자 할 경우, 앞서 언급된 두 항목에서 규정한 것 외의 긴급 상황에서 그 직책과 임명에 대한 권한은 총회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임명은 총회의 허가 없이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실행위원에 적용된다.

1. 총회 협의회는 직책 인사 임명을 검토할 책임을 진다.
2. 각 고용 기관 또는 위원회와 함께 인력 초과 수요 및 가용 자원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최소 3년마다 검토한다.
3. 결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회는 총회 협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3.1 총회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요청된 임용의 필요성과 책임의 범위를 연구하고, 전반적인 인력 수요와 총회 기금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의 현재 승인된 직원과 관련하여 요청을 평가하며, 기관/위원회 대표가 참석하여 함께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 3.2 총회 협의회는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의 요청에 동의하거나,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에 대해 총회에 다른 권고를 한다.
4. 목사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일원이 총회 협의회에 임명되는 경우, 해당 임명이 청빙으로 처리되며, 교회에서의 청빙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5. 목사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의 일원이 기관에 임명되는 경우, 노회 또는 기관에 임명되는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6. 노회에 책임이 없는 개인이 총회나 기관에 임명되는 경우, 급여 보장과 유사한 계약을 통해 처리되며,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노회가 이들에게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7. 총회 서기 또는 부서기로 지명된 직책을 포함하지 않는 협력총무 이상의 임원직에 임명된 사람(목사나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을 포함)은 누구나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직책 설명서, 업무 배정 및 업무 수행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는 먼저 해당 기관의 총무에게, 그 다음으로 해당 총회의 위원회 또는 기관에게, 최종적으로는 총회 협의회에 항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책 설명서, 업무 배정 및 업무 수행에 관한 분쟁에 대해 의결기관에 항소할 권리는 이 절차에 따라 대체된다.

B-2 총회 협의회

총회 협의회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 협의회 서기

50 Wynford Drive, Toronto, Ontario, M3C 1J7

B-3 교단 대학 관련 정보

교단 대학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1. For Knox College:

The Principal of Knox College

59 St. George Street, Toronto, Ontario, M5S 2E6

2. For The Presbyterian College:

The Principal of The Presbyterian College,

3495 University Street, Montreal, Quebec, H3A 2A8

3. For Vancouver School of Theology:

The Dean of St. Andrew's Hall, 6040 Iona Dr. Vancouver, B.C., V6T 2E8.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에 관한 정보는 닉스 칼리지 학장에게 문의하십시오.

B-4 교단의 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교단의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정보 및 규정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Offices

50 Wynford Drive, Toronto, Ontario, M3C 1J7

1. Archives, c/o Archivist
2. Assembly Office, c/o Clerks of Assembly
3. Atlantic Mission Society, inquire of the Clerks of Assembly for an address
4. Business Committee of Assembly, c/o Convener
5. Church Doctrine, Committee on, c/o Convener
6.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 on, c/o Convener
7. History, Committee on, c/o Convener
8.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on, c/o Convener
9. Life and Mission Agency, c/o General Secretary
10. Nominate, Assembly Committee to, c/o Convener
11. Pension Board, c/o Convener
12. Presbyterian Church Building Corporation, c/o General Manager
13. Presbyterian Record, c/o Editor

14. Trustee Board, c/o Secretary
15. Women's Missionary Society, c/o Executive Director

Others:

16. Maclean Estate Committee (Crieff Hills Community) c/o The Director, RR 2, Puslinch, Ontario, NOB 2J0

B-5 합병하는 교회의 자산 처분에 대한 노회 사용 지침

2002 년 삭제, 200.11 항 참조.

B-6 캐나다장로교회 신탁관리위원회 설립법(1939), 제 13 조, 존재하지 않는 교회의 재산(A&P 1939, 165-169 쪽) 참조

캐나다 장로교회의 모든 회중을 위해 신탁위원 또는 신탁위원들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앞으로 언제든지 보유하게 될 모든 토지와 건물, 동산 및 자산은 해당 회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재산관리 위원회가 이를 매각, 인수 및 실현하고, 그 수익금을 캐나다 장로교회의 총회가 결정하는 신탁, 기관, 조직, 기금 계획 등을 위해 캐나다 장로교회의 재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관리 위원회에 귀속된다.

부록 C

신탁 선언서 (신탁 증서 템플릿)

신탁 증서는 회중 생활에서 다양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며, 캐나다 장로교회의 각 회중은 이를 구비해야 한다. 다음 양식은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지역 회중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아래 1F 및 5I 참조)

용어집

대리인: 회중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회중을 의미한다. 대리인은 회중의 손에 있는 펜과 같다. (예: 1B 항)

신탁위원: 의사 결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신의성실 책임이 포함된다. 주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신탁위원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예: 1B 항)

제한 없이: 추가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제시된 목록은 반드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예: 1D 항, 7B 항)

제한을 두지 않고: 이 특정 단락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탁위원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예: 5J, 5K 항)

참고

3C: 양식에서는 최소 신탁위원의 수를 3 명으로 규정한다. 회중은 이 수를 줄일 수 있지만, 이상적인 수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5L: 신탁위원이 법에 의해 승인된 재정 재산 투자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은, '재정 재산의 투자'가 교회 신탁위원이 조성하는 투자 유형과는 별개의 기술적, 법적 문제라는 점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며, 후자는 그러한 기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현장

A. 이 신탁 선언서(이하 "신탁 증서"라 함)는 캐나다 장로교 양식서 149 조에 의거하여 {회중 이름}에서 공동의회가 {공동의회 날짜}에 적법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회중 이름}의 회중의 승인과 {노회 회의 날짜}에 {노회 이름}의 노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B. 이 신탁 증서는 이 신탁 증서의 신탁위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며, 이들의 책임은 부분적으로 회중의 대리인 역할이고 부분적으로 회중의 재산에 대한 신탁위원 역할이다.

C. 이 신탁 증서의 신탁위원(이하 "회중 신탁위원"이라 함)은 이 신탁 증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회중에 의해 임명된다. 아래 3 항과 4 항 참조.

D. {회중 이름} 회중의 재산(이하 "재산"이라 함)은 회중 신탁관리위원회에 의해 보유된다. 이 재산에는 제한 없이 {회중 건물 부지, 사택, 묘지, 기타}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 당회 서기와 회중이 임명한 모든 교회 신탁위원이 정식으로 서명한 원본 신탁 증서와 서명된 이 신탁증서의 사본과 서명된 신탁 증서의 수정본은 {회중 이름}의 당회 서기와 {노회 이름} 노회에 제출된다.

F. 이 신탁 증서는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률 회사 이름}이 {날짜}에 서면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주 이름} 주의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되며 이를 준수한다. 아래 5.1 항 참조.

G. 이 신탁 증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 의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신탁위원의 자격

A. 신탁 증서의 조건에 따라 활동하는 모든 회중 신탁위원은 임명된 회중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3. 신탁위원의 선출 및 임명

A. 회중 신탁 관리 위원회는 연례 공동의회회나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공동의회에서 선출 및 임명된다.

B. 선출은 연례 공동의회나 경우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C. 회중의 신탁위원 전체 구성은 최소 세 명(3) 이상이지만 {숫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최소 세 명의 신탁위원보다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D. 회중 신탁 관리 위원들의 수가 세 명(3) 미만이 되거나 위의 3C 항에 따라 교회가 결정한 더 큰 최소 수를 초과하는 경우, 남아 있는 회중 신탁위원들은 당회에 긴급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수의 신탁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거나, 당회 자체가 이를 목적으로 긴급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E. 회중 신탁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위 3C 항에서 명시된 최소 신탁위원 수가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 당회는 긴급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사망하거나 사임한 신탁위원을 대체할 수 있다.

F. 연례 공동의회나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공동의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 투표에 의해 어떤 신탁위원이든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위의 2A 항 요구사항에 따라 그렇게 해임된 신탁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임무를 대신할 적격한 사람을 선출 및 임명할 수 있다.

G. 회중 신탁위원은 이 직무를 맡을 수 없는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재선출에 자격이 있다.

H. 정식으로 선출되면, 공동회의의 의장은 이 직책에 임명된 회중 신탁위원을 선언한다. 회중 신탁위원 임명은 당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회중에게 전달된다.

I. 회중 신탁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위해 개최되는 정기 공동의회 또는 임시 공동의회 회의록은 이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회의록에 기록된다.

4. 신탁위원의 임기

A. 교회 신탁위원의 임기는 {숫자} 년이다.

B. 회중 신탁위원이 캐나다 장로교회의 회원 또는 해당 회중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들은 자동으로 해당 회중의 회중 신탁위원이 되지 못한다.

C. 회중 신탁위원은 서면으로 당회에 제출하고,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다른 회중 신탁위원들에게 사본을 제공하여 자신의 직책에서 사임할 수 있다.

D. 임기 중에 회중 신탁위원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공동의회에 의해 해임되거나, 회중의 고백 회원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해임되는 경우, 남아 있는 회중 신탁위원들은 모든 회중 신탁위원의 권한을 가지며, 회중이 새로운 신탁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회중의 신탁위원으로 모든 사안에 있어 대행한다. 위 3 항 참조.

E. 본 신탁 증서에 따라 활동하는 회중 신탁위원이 어떤 이유로 없는 경우, 언제든지, {노회 이름} 노회의 의장과 서기가 자동으로 해당 신탁 증서의 회중 신탁위원이 되며, 회중이 새로운 회중 신탁위원을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그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5. 신탁위원의 책임

A. 회중 신탁위원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법률과 총회의 다양한 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B. 회중 신탁위원은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으며, 이러한 권한은 다른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수정 또는 철회될 수 있다. 회중 신탁위원은 회중의 지시를 변경하거나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중 신탁위원은 회중의 손에 있는 펜과 다름없다.

C. 회중 신탁위원회는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회중의 유일한 사용과 이익을 위해 보유한다. 회중이 해산되는 경우, 지방 및 연방 법에 따라 회중의 소유권, 내용물, 기금 및 재산은 캐나다 장로교회의 신탁위원회에 이전되어 교회의 선교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D.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회중 신탁 위원회에 할당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중 신탁위원회는 회중 재산이 지역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소유권 사무소에 적절히 등록되어 있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할 것을 회중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부동산이 손실과 책임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회중 신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 회중 신탁위원회는 공동의회와 노회의 승인을 받아 회중 재산의 구매 및 매각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에 서명할 책임이 있다.

F. 회중 신탁위원회는 공동의회와 노회의 승인을 받은 회중 재산에 대한 대출이나 모기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서명할 책임이 있다.

G. {수}명의 회중 신탁위원은 회중을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갖는다.

H. 회중 신탁위원회는 회중이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I. 회중 신탁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신탁 증서를 검토하도록 하여서 캐나다 주의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J. 회중이 신탁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한, 회중 신탁위원회는 유산과 증여의 수령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 특권은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 있다.

K. 회중이 신탁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한, 회중 신탁위원회는 회중이 권한을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 또는 증여를 보유되거나 사용 방법에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다.

L. 투자를 할 때, 회중 신탁위원회는 신탁 재산의 투자를 승인된 법률에 제한되지 않고, 회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회중이 회중 신탁위원회에 투자 보유 및 사용방법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명확한 지침은 회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신탁 증서에 포함될 수 있다.)

M. 회중 신탁위원회가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책임은 회중이 갖는다. 연례 공동의회에서 신탁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한다.

6. 결정 충돌

A. 양심상의 이유나 기타 이유로 회중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는 신탁위원회는 사임해야 한다. 사임하기 전에 회중 신탁위원회는 당회에게 회중의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정을 내리고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7. Liability 책임

A. 회중 신탁위원회 또는 이전의 신탁위원회가 고의적인 부정 행위, 신탁위반 또는 사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오류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중은 회중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 회중 신탁위원회 또는 이전 회중 신탁위원회가 신탁위원회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되는 모든 소송 관련비용, 경비 및 지출에 대해서 면책한다.

B. 일반 보험 외에도, 회중은 적절한 지도자 및 임원회 보험 또는 신탁위원회를 포함한 회중의 리더 직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적절한 보험을 유지한다.

C. 회중 신탁위원회가 고의로 회중의 지시나 법률 또는 본 신탁 증서의 조건을 벗어나 행동한 경우, 해당 회중 신탁위원회는 해임, 회중 징계 및/또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중명} 날짜

[서명], 당회 장로 [서명], 회중 신탁위원회

[서명], 당회 서기 [서명], 회중 신탁위원회

{노회명} 날짜

[서명], 노회 장로 [서명], 노회 서기

DIACONAL MINISTRIES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D-1 Council of the Order of Diaconal Ministries

D-1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모든 정회원(현재 캐나다 장로교회의 조직 또는 단체에 고용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회원).
2. 활동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의 다른 회원들- 활동 회원 명단에 있는 10 명당 1 명. 이들은 다른 회원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D-2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자 회원을 위한 급여 및 혜택

1. 노회는 매년 총회가 수시로 선언할 수 있는 결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회원의 급여와 혜택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2. 1984 년 7 월 현재, 총회는 회원들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총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본 급여 및 증액

2. 공공요금(난방, 전기, 상하수도 서비스, 월 기본 전화 요금) 지불.

3. 1989 년 총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적절한 숙박시설 제공은 기본 급여 및 증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2. 당시 적용되던 기본 출장 수당과 동일한 금액만큼 기본 급여를 인상하고 이후 기본 급여 수치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

4. 선거인 명부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모든 회원은 교회의 의료-치과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1. 청빙을 받아 전임 직책에 임명되거나 임명된 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청빙/임명 기관에서 전액 지불한다.

2. 최소 하프타임 이상 풀타임 미만률 요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의 경우, 고용 기관의 최소 부담금은 해당 직원이 청빙/임명된 시간 비율에 비례한 보험료 비용 이상이어야 한다.

5. 주정부 병원 및 의료 보험 비용은 고용주와 직원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A&P 1970, 298, 79, 80 쪽).

6. 전문직 교회 직원을 위한 총회 규정에 따른 연장 교육.

7. 주일 5 회를 포함한 최소 5 주간의 휴가(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음).

D-3 법과 절차

총회 서기는 정회원에게 총회의 법령 및 회의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문

교회와 국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주되심

1. 주권적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한 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선포하고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1- 2:10, 사 44:24-28, 사도행전 4:24-28, 시편 2 편, 다니엘 7:13-14, 27, 스가랴 9:9-10, 마태복음 28:18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과 아버지 우편으로 높임으로써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 오랜 악조차 선을 위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1-35, 이사야 52:13-53:12, 로마서 14:9-12, 골로새서 2:15, 빌립보서 2:5-11, 사도행전 2:22-36, 고린도전서 15:24-28, 시편 100 편, 베드로전서 3:21-22, 로마서 8:18-23, 31-39 참조) 우리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열방의 재판관 및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딤후 6:13-16, 요한계시록 1:5, 11:15-18, 17:12-14, 19:11-16, 시편 22:28)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시민 국가의 수반이지만, 그분 아래 있는 이들의 기능은 구별되어야 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10-11, 19-23, 골로새서 2:10, 마태복음 28:19-20, 이사야 10:5-19, 45, 예레미야 27:1-11)

교회와 국가의 각 기능

2.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집행하는 데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자신을 섬기기 위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35, 고린도전서 15:20-28) 그분은 교회와 시민 국가를 사용하시며 각자에게 고유한 기능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 1:9-10, 신명기 4:32-40, 이사야 45:1-7, 요한복음 19:11) 그분은 교회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 생활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에스겔 33:1-9, 마태복음 16:18-19, 28:18-20, 디모데후서 4:1-5, 야고보서 2:14-17) 또한 모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불법, 불화, 빈곤을 억제하는 법과 정책을 분별, 제정, 집행함으로써 국가가 그의 정의와 자비의 행정에서 그를 섬기도록 은혜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13:1-7, 누가복음 3:12-14, 창세기 45:5-8, 열왕기상 3:3-28, 디모데전서 2:1-2, 아모스, 예: 2:6-8, 5:11-12, 24, 8:4-8)

국가의 권한

3. 그리스도는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재능과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시민 정부의 직책에 부르시고 임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ff, 시편 33:6, 히브리서 1:1-3, 골로새서 1:15-17, 에베소서 1:3-14, 창세기 45:5-8, 예레미야 27:5-11, 이사야 9:6-7, 다니엘 2:21 참조) 그는 내부 혼란과 외부 공격에 대항하여 법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시민 권한으로 위임하십니다. (이사야 10:5ff, 45:1-6, 로마서 13:3-4, 느헤미야 4:7-20)

권력의 청지기 정신

4.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의는 국가 정의, 발전, 운명의 유일한 토대입니다. (골로새서 2:14-15, 요한일서 5:4-5, 요한일서 1:18, 히브리서 1:3, 8-9, 시편 72:1-4) 문화, 정치, 경제 등 국가의 모든 권력 기관은 그리스도의 청지기 직분이며, 그분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1, 6-7, 느헤미야 5:15, 마태복음 24:45-25:30, 요한복음 12:35-36, 로마서 14:23b) 모든 권력 남용은 신뢰 위반에 해당하며, 남용자에게는

자기 파괴적이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8:58-68, 다니엘 5:17-28, 신명기 8:11-20, 사도행전 12:20-23)

지상의 권력의 한계

5. 주 예수님께 속한 권한을 어떤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주 예수님께 대한 중대한 반역이며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특히 3-4 절, 사도행전 4:23-30, 시편 2 편, 요한계시록 13 장 및 14:9-11, 17:13-14 참조)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과 양심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며,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그들이 절대 군력을 주장할 때, 특히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주장할 때 우리는 모든 권위에 거슬러 그분께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4:7-9, 고린도전서 4:1-5, 6:15-20, 요한복음 5:22-23, 야고보서 4:12, 사도행전 4:18-20, 5:27-32, 다니엘 3 장, 열왕기상 22:13-14, 예레미야 26 장)

교회와 폭정

6. 교회의 임무는 정치적, 경제적, 교회적 모든 형태의 독재를 특히 전체주의적이 될 때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1-14, 열왕기하 21, 아모스 7:10-17, 다니엘 3:8-18, 출애굽기 1:17)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탈하는 어떠한 정부나 권력 기관을 거부할 시민의 권리는 박탈되지 않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반란을 일으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26-40; 열왕기하 9; 행 4:18-20, 5:25-32)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 관여한다면 교회는 전쟁의 무기가 결국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1-11, 10:16-22, 26:51-54, 고린도후서 4:7-11, 10:3-5, 열왕기하 6:15-17)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되심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2-36, 5:25-32, 7:51-60, 26, 야고보서 5:1-11, 디모테후서 2:8-9)

교회와 국가의 관계

7. 교회와 국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주님께 대한 중복되는 다양한 관심사와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모스 7:10-15; 사도행전 22:22-29; 신명기 8; 말라기 2:10-16; 예레미야 1 장, 특히 5, 9-10 절) 이들의 진정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자의 종속성에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 28:18-20) 각자는 주어진 권한과 기능에 따라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지만,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지배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니엘 3:16-18, 디모테전서 2:1-5) 우리는 교회를 국가의 종교적 대리인으로 오해하는 모든 교리를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22:15-22; 누가복음 12:13-14) 우리는 국가를 교회의 정치적 도구로 오해하는 모든 교리를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8:28-37) 우리는 종파적 또는 세속적 근거로 교회의 삶이 시민 국가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거나 분리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모든 교리를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5:13-16, 17:24-27)

국가에 대한 교회의 봉사

8. 교회는 복음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민족주의적 신조와 병합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2:28-34, 출애굽기 20 장, 마태복음 6:24, 다니엘 3, 6 참조) 동시에 교회는 당국이 신앙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가의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이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서,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 13:1-6, 베드로전서 2:12ff, 마태복음 25:31-46 등) 교회는 국가를 위해 다양한 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7-14; 마태복음 5:13-16) 교회의 설교, 성례전, 권징은 국가를 그리스도의 심판과 은혜에 대면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1:5, 사도행전 3:12-21, 베드로전서 2:11-12, 4:1-5) 교회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리며,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성령의 지배적인 능력이 국가와 국제 생활에서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고 악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1-2, 다니엘서 9:9-19, 역대하 6:21-40, 7:14)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의와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아모스 5:14-24, 고린도후서 5:14-21)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대로, 교회는 의결기관이나 대리인의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4:13-20, 사무엘하 12:1-15a)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사역에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8:1-15, 빌립보서 4:10-17, 누가복음 10:25-37) 회원들은 상업, 정치 및 기타 사회 활동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수행합니다. (누가복음 3:10-14, 요한복음 17:15-18, 에베소서 6:5-9)

그리스도인의 시민의 의무

9. 그리스도인은 항상 민법을 존중하고 재정적 또는 개인적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는 머리아픈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13-25, 딤후 3:1-2, 로마서 13:5-10, 마가복음 12:14-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민도 부당한 법률이나 불공정한 평가 또는 양심의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 5:27-29, 이사야 1:17, 아모스 5:14-15, 미가 6:6-8, 에스더 4:12-14)

교회에 대한 시민 정부의 의무

10. 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회에 대해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의 평화를 확립하고 보호를 제공하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 19:28-41, 21:30-39, 22:24-29) 국가는 교회와 그 모든 지체에 대해 편견 없이 그 직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 예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 그리고 국가를 복음화할 권리를 위한 자원, 시간,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1-4, 에스라 7:11-25) 국가의 직무를 맡은 자들은 교회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 말할 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 26 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

11. 현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완벽하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모든 사적 및 공적 관계에서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12, 막 13:21-23, 눅 18:8b, 고린도후서 4:3-18, 로마서 1:18-32, 3:9-18, 7:15-25, 예레미야 17:9)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불안, 탐욕, 불완전한 정의, 부패에 대한 친숙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2:25-33, 13:33-34) 시민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야고보서 4:1~3, 5:1~6, 이사야 55, 59, 히브리서 4:12~13) 그러므로 모든 시민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 없이는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알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25-26, 35-50)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지막 현현

12. 이 세상의 악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은 믿음을 통해 분별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희망의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5:17-29, 고린도전서 12:26, 히브리서 10:37-12:3, 로마서 8:18-25, 요한일서 3:2-3, 골로새서 3:3-4) 그는 다시 오시며, 이 나라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완전히 성장시킬 것입니다. (사도행전 1:11, 베드로후서 3 장, 누가복음 12:35-40, 요한계시록 7:9-17, 22:1-2, 에베소서 5:25-27) 새 예루살렘을 계시하시는 그 날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적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장, 로마서 2:11-16, 빌립보서 2:10-11, 요한계시록 1:7-8, 5:11-14, 19:11-16, 고린도전서 15:20-28)

동등한 보조 표준

우리 교단은 제 2 헬베틱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갈리칸 신앙고백서(라로셀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의 표준과 동등한 표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들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이들 목사, 디아코널 평신도 사역자 정회원 및 시무 장로들도 우리의 표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법의 통일성을 위해 안수와 입교를 받는 목사들과 시무 장로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조 표준들을 따르며, 이 사람들이 원할 경우 이 신앙고백서(제 2 헬베틱, 벨기에, 갈리칸)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된다. (A&P 1962, 288~289 쪽)

기록 보관소와 기록 관리

G-1. 기록 보관소의 목적

1. 캐나다 장로교 기록 보관소("보관소")는 교단의 지정된 기록 저장소이다. 보관소는 50 Wynford Drive, Toronto, Ontario 에 위치한 총회 사무실 내에 있다. 보관소의 정책은 총회 협의회에서 승인하며, 보관소의 일상 운영은 기록보관소 직원들을 통해 보관소 수석 서기가 책임진다.

1. 보관소는 장로교의 전체적 기억(활동 및 결정)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을 획득, 정리, 설명 및 보존한다. 즉, 매체에 관계없이 중요하고 오래 지속되는 행정적, 재정적, 법적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2. 보관소에 보유한 기록들은 교단 직원 및 광의의 교회 구성원에게 접근 가능하며, 캐나다 장로교의 지속적인 작업 및 중요한 역사적 연구 자료로서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3. 보관소는 또한 캐나다 장로교 총회 사무실에 직접적인 기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 조언과 자료를 제공한다.

4. 보관소는 교단의 물리적 및 운영적 기록 보관 필요를 감독하고, 승인된 디지털 형식에 관한 조언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의 보존과 사용 증진을 위해 권장되는 적절한 조치를 추천한다.

G-2. 기록 보관소 수집 역할

1. 보관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수집 및 보관할 것입니다:

1. 총회, 그 보드 및 위원회, 그리고 모든 기타 총회 사무 부서의 기록

2. 노회 기록

3. 대회 기록

4. 해산된 회중 기록

5. 활동 중인 회중 기록- 마이크로필름 또는 승인된 디지털 형식

6. 캐나다 장로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 기록 (즉, 개인 문서)

7. 캐나다 장로교 대학 기록

8. 사진 자료, 시청각 자료, 건축 계획 및 도면 포함한 특수 매체 기록

2. 보관소는 자신에게 이양된 기록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보관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기증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G-3 기록의 소유권

1. 캐나다 장로교의 모든 의결기관의 생성한 기록은 해당 의결기관 또는 그들의 법적 계승자의 영구적 소유물이다. 기록은 개별 회중 관계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2. 회중, 노회, 그리고 대회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해당 단체들의 기록은 통합된 단체의 소유물이 된다.

3. 회중이 해산될 경우, 노회 서기는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보관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이 기록들의 목록은 보관소에 문의). 노회는 이러한 기록을 대체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G-3.4 참조).

4. 교단 의결기관의 기록이 다른 보관소에 예치될 경우, 양측이 서명한 형식의 예치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 계약서의 사본은 캐나다 장로교 기록 보관소에 보내야 한다(보관소에서 예치 계약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예치 계약은 캐나다 장로교의 기록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의 마이크로필름 또는 승인된 디지털 사본도 만들어 캐나다 장로교 보관소에 보내야 한다. 회중 기록의 경우(해산된 회중 기록 포함), 당회 회의록과 회중 등록부만 복사할 필요가 있다.

5. 개인 문서를 예치하려면, 기증자가 서명한 기증 서약서가 필요하다. 이 양식에는 기록의 소유권을 캐나다 장로교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6. 의결기관의 서기는 그 의결기관의 모든 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적절한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기록의 정기적 백업을 수행하여 그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G-4 보관소에 기록 예치

1. 보관소는 자신의 수집 목적(G-2.1 항 참조)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용한다. 보관소는 일반적으로 기증자와 협의하여 기록 가치가 있는 자료만 보관소에 예치될 수 있도록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중은 당회 회의록과 회중 등록부의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디지털화를 준비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또는 승인된 디지털 사본은 필요에 따라 보존 및 참고 목적으로 보관소에 예치되며, 원본은 교회에 반환된다. 추가 교회 기록도 복사될 수 있다. 보관소 담당자는 승인된 디지털 복사본의 준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3. 노회와 대회는 자신들의 회의록(원본, 마이크로필름 및/또는 승인된 디지털 형식), 보고서 및 위원회 기록을 보관소에 예치하는 것을 요청받는다. 또한, 노회는 정기적으로 보관소에 회의록 사본을 보내야 한다.

4. 보관소에는 "곰팡이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곰팡이 또는 곰팡이 자국이 있는 기록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록이 보관소에 예치되기 전에 해당 의결기관의 비용으로 전문적으로 청소하도록 보관소 담당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모든 관련 의결기관은 기록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보관해야 한다.

G-5 보관소 기록의 접근과 제한

1. 보관소에 예치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개 접근이 가능하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기록에는 접근 제한이 있다:

1. 50 년 이하인 당회 회의록은 접근이 제한되며, 당회의 허가서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50 년 이상 된 당회 회의록은 공개 접근이 가능하다.

2. 인사/개인 정보 파일은 최근 75 년간 접근이 제한된다.

3. 특별 위원회와 위원회 기록은 보관을 위해 제출한 의결기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는 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다.

4. 100 년 이하인 세례 기록은 접근이 제한된다. 개인은 자신의 세례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록에 기재된 경우 부모도 가능하다.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척은 사망자의 세례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위원,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또는 법정 후견인은 권한을 승인받은 대리인으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본은 필요에 따라 보관소 직원이 전사 형태로 제공하거나, 적절할 경우 사본으로 제공된다. 100 년 이상 된 세례 기록은 공개 접근이 가능하다.

5. 75 년 이하인 결혼 기록은 접근이 제한된다. 신랑이나 신부는 자신의 결혼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신랑이나 신부가 사망한 경우, 신랑이나 신부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위원,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의 권한을 승인받은 대리인도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본은 필요에 따라 보관소 직원이 전사 형태로 제공하거나, 적절할 경우 사본으로 제공된다. 75 년 이상 된 결혼 기록은 공개 접근이 가능하다.

6. 75 년 이하인 사망/장례 기록은 접근이 제한된다.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척은 개인의 사망/장례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위원, 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은 권한을 승인받은 대리인으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사본은 필요에 따라 보관소 직원이 전사 형태로 제공하거나, 적절할 경우 사본으로 제공된다. 75 년 이상 된 사망/장례 기록은 공개 접근이 가능하다.

7. 담당자/기록 관리자는 수석 서기의 권한에 따라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2. 경찰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총회 기관에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수석 서기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더 자세한 정보 및 교회 기록에 관한 도움을 위해 presbyterian.ca/archives 에서 보관소에 연락하십시오..

부록 H

법적 용어 정의

다음은 1992 년 총회에서 승인하고 양식서 부록에 포함하도록 명령한 법적 용어의 정의이다.

법

법은 법령 또는 오랫동안 확립된 원칙을 의미할 수 있다. 법은 공식적으로 제정되었든 관습적이든 국가나 공동체가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규칙 체계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법은 제재나 법적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입법 허용

입법은 명시적인 법령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며,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기본법 또는 준거법이라고도 합니다.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기관은 주권 입법 기관이 통과시킨 기본법 또는 준거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제정해야 하며, 그 관할권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용어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법령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서류들을 부여하는 법령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되고 지방 의회는 주법에 명시된 제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마찬가지로 신탁관리위원회는 "캐나다 장로교 신탁관리위원회 설립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총회는 신탁관리위원회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결의,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규정

규정은 어떤 사항의 관리, 행위의 규제를 위해 규정된 규칙, 방향에 대한 통치 교훈으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라 규정 및 부칙과 같은 법적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하급 기관에 위임된다.

판례

판례란 실제로 법원의 심의와 판단을 위해 제시된 법의 원칙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향후 지침의 규칙으로 작용하도록 선언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사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권위 있는 규칙 또는 패턴으로 작용하는 이전의 사법적 결정, 소송 진행 방법 또는 문서 초안도 포함될 수 있다.

교회의 관행

관행은 반복적이거나 관습적인 행위, 습관적인 수행, 유사한 종류의 행위의 연속, 습관, 관습, 사용으로 정의되어 왔다. 또한 이 용어는 법률이 정한 규칙과 원칙 또는 법원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 소송이나 기타 사법 절차를 개시하고 그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끝까지 수행하는 형식, 방식 또는 순서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교회의 실행은 지역 교회 또는 회중의 실행이 아니라 그 회중이 지역 교회로 소속된 교단의 실행을 의미한다고 한다.

교회의 관습

관습은 관행과 유사하다. 관행은 습관적인 사용, 확립된 실행 또는 여러 사람을 대신하는 관습적인 행동 양식으로 정의된다. 또한 특정 상호작용이 한 지역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공공 관습으로 정의되며,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거나 매우 잘 확립되어 있고 일반적이며 통일적이어서 당사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관행은 태고적부터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관습과 다르다. 관행 또는 관습이 용례 또는 관례로 구체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운영, 공개적인 행사, 평화적이고 권리로서 수행된 행사,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의무적인 성격, 다른 관습과의 일관성 및 법령과의 적합성.

일반

이러한 용어가 교단의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고려할 때, 목회자 임명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채택된 규칙은 회원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체결된 상호 계약의 문제로 간주되며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국가 권력에 의해 부과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 해석에 대한 규칙은 법령이 아닌 계약법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가 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정당하게 구성된 교단 의결기관의 권한 내에 있고 교단의 규칙, 규정 및 규율에 따른 것이라면 간섭하지 않는다.

이 용어들의 상호 관계는 1874년 특정 장로교회의 연합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정될 당시의 일부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은 교단이 스스로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입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관례는 예를 들어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교단이 채택한 "모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고 인정했다. 교단에 법령의 의미 내에서 "헌법"이 없는 경우, 교단의 관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행에 따라 연합을 목적으로 소집된 회의가 정기적으로 소집되고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를 지닌다.

부록 I

청빙 또는 단기임명 목사가 없는 회중과 관계된 목사

회중에 의해 청빙되거나 단기임명되지 않은 양호하고 정규적인 지위에 있는 목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소속은 그들이 주로 노회의 보살핌과 권징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지시킨다.

노회는 서기 또는 지정된 위원회를 통해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임 목사는 목사는 자신이 관계하고자 하는 교회를 선택하고 서기에게 관계를 공식화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무임 목사가 몇 달 동안 서기(또는 위원회)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서기(또는 위원회)는 무임 목사에게 연락하여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회중이 선택되면 서기는 선택된 회중의 당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야 한다:

1. 목사가 협력 목사로서 회중의 회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2. 목사의 이름을 회중의 명부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며,
3. 이 요청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당회는 다른 회중 구성원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목회적 관심을 해당 목회자에게 하기로 동의한다,
 2. 목사는 회중에서 시무 장로로 선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정기 고백회원에 부여되는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된다,
 3. 당회는 결국 목사를 징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노회에 그 문제를 회부하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4. 당회와 목사는 협력 목사가 회중과 목사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성격에 관한 합의를 작성하고, 이 합의서의 조건을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청한다. 당회와 협력목사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록 J

후보자에 대한 목회 돌봄 과정

목적

J-1 후보자의 목회 돌봄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단 목사 후보자 과정에 들어오고 그 과정을 밟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 감독, 시험, 적절한 격려를 제공한다.
2. 후보자들이 인준에서부터 임직 또는 안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그 과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없도록 한다. 다만, 후보자들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승인, 조건부 승인(시험적 승인), 또는 비승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4. 교단에 가능한 최고의 후보자를 제공한다.

배려와 상호신뢰

J-2 배려와 상호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을 권장한다:

1. 노회의 목회 위원회(또는 후보자 위원회)는 최소 연 1 회 후보자들과 만남을 갖는다.
2. 후보자들과의 연례 저녁 식사를 갖는다.
3. 후보자들은 매년 노회에 제출된다.
4. 후보자 그룹이 있는 경우, 역할극 및 기타 그룹 활동을 통해 목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5. 대학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각 노회는 자신이 돌보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이 위치한 노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해당 노회가 학기 중에 목회적 돌봄의 역할을 맡도록 요청할 책임이 있다.

인간적 및 실질적 문제

J-3 목사 후보자들과의 관계에서 신학적 문제와 목회 실천 문제가 핵심 요소이지만, 당회와 노회는 다음과 같은 인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

1. 가족 상황
2. 재정 계획 및 재정 관리 능력
3. 워드 프로세서 사용 및 타이핑 능력.
4. 조직 및 시간 관리 능력.

5. 취미 및 기타 여가 시간 활동.
6. 대중 연설 능력, 명료한 표현력, 개인적인 존재감.

당회의 추천

J-4 처음 추천을 위해 당회가 물어야 할 질문들

1. 예수님을 “구주이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2. 왜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는 왜 다이어코널 평신도 사역을 준비하십니까?
3. 교회에서의 당신의 개인사와 경험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당신의 신앙 여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4. 교회 봉사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소명 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5. 캐나다 장로교회 또는 다른 교단의 사역을 위한 구분된 과정에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진행되었고, 왜 중단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6. 현재 당신의 여정에서, 복음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7. 사역을 위해 부여받은 특정한 은사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8. 목회 후보자 과정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우려/두려움/걱정은 무엇입니까?
9. 목회 준비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배우자 및 가족 지원 포함)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J-5 당회가 추천을 고려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1.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2. 어떻게 이 후보자에게서 목회의 은사를 발견할 있습니까?
3.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후보자가 우리 회중의 일원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회중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4. 명백한 성격 문제가 있습니까? (이는 "아니오"라고 말할 이유는 아니지만, 절차를 계속 진행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문제일 수 있다).
5. 후보자가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6. 이 사람이 오늘 졸업한다면, 본인의 회중에서 직분 후보자로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까?
7. 기혼자에게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와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배우자도 면접에 참여해야 한다. 결혼한 배우자 모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교회가 고용에 대한 기대치를 논의한다. 목사 부부에 대한 상담과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은 중요하다. 장로들은 가정 생활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

첫 인준

J-6 노회가 물어야 할 질문

1. 당회의 질문 항목과 동일하다

2. 현재의 영성 훈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기도, 경건, 성경 읽기의 실천. 성경 전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3. 목회 준비를 마치고 안수나 인준을 받을 때, 회중의 부름이나 필요에 따라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회에 대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4. 목회에 대한 부름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기대합니까?

5. 귀하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목회에서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후보 과정에서 노회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7. 교단의 유아 세례 및 여성 안수에 대한 입장을 알고, 이해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J-7 노회가 고려해야 할 문제

1. 후보자는 총회가 요구하는 대로 캐나다 장로교회의 회원으로 최소 1년 이상 활동했습니까?
(A&P 1984, p. 403, 31)

2. 이 사람이 오늘 졸업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고용할 의향이 있는가?

3.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4. 후보자의 성장 가능성, 즉 기꺼이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들에 개방적이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5. 후보자가 자신의 신앙과 사상을 검토하고, 질문하고, 조사하고, 확장하는 신학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가?

6. 목회 사역에 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후보자가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들은 배려하는 사람인가?

7. 명백한 성격 문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후보자와 후보자가 공부할 대학의 이익을 위해 설명할 수 있는가?

8. 지원자의 개인 생활에서 교회 봉사를 위한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재정, 가족, 의료, 정서, 학업 등)? 예를 들어, 후보자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9. 후보자가 목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노회와 어떤 종류의 연락이 가장 도움이 될까?

10. 후보자가 목회를 준비하는 동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구체적인 과정, 개입,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권고는 이미 확인된 특정 은사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1.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사용하는 지원자

1. 이러한 응시자에게는 구두 영어 능력에 대한 진실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충 과정을 수강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몰입형 과정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후보자들이 취업 전망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1. 후보자들은 신학적, 교회론적 특성을 포함하여 안수 또는 임명 받을 교회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2. 후보자가 준비 교육에서 받은 학업 성적표를 검토하여, 필수 학업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13. 노회는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학문적 문제를 후보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1. 비인가 대학 또는 본 교단 외의 신학대학에서 학업을 선택하는 것의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2. 편입학점 계획
3. 학부 수준에서 종교 과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양 과목을 선택하는 지혜.
4. 신학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성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재인준

J-8 노회가 물어야 할 질문

1.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신학 공부가 당신의 신앙을 어떻게 도전하고 발전시켰습니까? 당신이 기독교 신앙과 삶에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2. 신학적 공부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나 통찰은 무엇입니까? 이를 당신의 삶과 교회 및 목회에 대한 견해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습니까?
3. 여러분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에 어떤 면에서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노회는 후보자에게 개인 신앙고백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당신은 목회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하는가? 졸업 후 어떤 형태의 목회를 계획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특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정한 목회 유형이 있습니까?
5. 캐나다 장로교회가 정한 안수 또는 임직 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6. 주일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7.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신학적 및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8. 현재 이슈에 대한 답변: 예: 유아 세례, 성찬에서의 어린이, 여성 안수, 포용적 언어, 해방 신학.
9. 교회의 관행, 관습, 전통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보통 어떻게 대응합니까?
10. 직장 및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세요.
12. 당신의 지원 시스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J-9 노회가 고려해야 할 문제

1. 결혼했거나 약혼한 후보자:

주의: 이 분야에서 노회의 관심은 평가적이기보다는 주로 목회적이다.

1. 후보자와 배우자(또는 약혼자)와의 조기 상담: 목회적 관심에서 가능한 한 일찍, 이후로는 매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맞벌이 부부: 누구의 경력이 우선시될 것인가? 그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까?
3. 성직자 부부: 관계 및 역동성을 탐색합니다.
4. 배우자와 함께 성장할 계획: 배우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까?
5. 당신의 지원 시스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2. 여름 선교 단기 임명 보고서(캐나다 선교국-생명과 선교부, 해당 노회, 지원자), 현장 교육 배치 보고서, 후속 상담 보고서, 학업 진척도 보고서를 살펴보고,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본다.

3. 신학 공부의 마지막 해에 들어가기 직전 해의 재인준은 후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재인준은 후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4. 노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수습 재인준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노회가 후보자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분야를 확인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습 중'이 된 후보자는 수습을 해제하기 전에 우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당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시간을 문서로 제공받아야 한다.

수습 재인준의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직되거나 지나치게 개방적인 신학적 입장 또는 모순된 접근법을 포함하는 절충주의.
2. 특정 교리(성서, 세례, 교회 등)에 대한 우려.
3. 목회 기술 및 실천과 관련된 우려 사항.

참고: 최초 인증 시에는 수습 또는 조건부 인증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능력이나 적합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첫 번째 인준 후보자에게는 해당 우려 사항과 추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프랑스어권 후보자: 프랑스어권 후보생이 있는 노회는 해당 학생이 목회를 준비하는 언어와 관련하여 위의 지침을 당연히 적용할 것이다.

6. 영어 제 2 언어 지원자: 신학과 2 학년 재인준 시점에 후보자의 영어 구술 능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시점에서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보자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안수 후보자 인준 시험 재시험 절차

J-10 신청

1.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며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 규정에 따라 노회에 목사 안수 적합성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2. 후보자는 노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노회가 심사 과정에서 신학적 및 관계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출물을 요청받을 수 있음을 통보받는다).

1. 개인 보고서

-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기 위한 의사와, 청빙이나 단기 임명이 있을 때 서임 서문 및 캐나다 장로교회의 부가적인 표준을 준수할 의도를 밝히는 서면 진술서.

- 후보자의 신앙 여정에 대한 서면 진술서.

- 후보자의 목회 경험에서 사안을 다룬 사례 연구 보고서. (사례 연구 개발을 위한 형식과 지침은 생명과 선교부의 목회 및 교회 사명국에서 제공).

- 주석과 이에 근거한 설교문

후보자는 노회 또는 노회 심사위원회가 마련한 공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원고 사본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학에 관한 하나 이상의 논문

해당 대학의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후보자가 졸업 전에 지원한 경우, 증명서는 예정서만 제출할 수 있다.)

2. 감독 현장 보고서

지원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감독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평가서.

J-11 심사

1. 노회 또는 노회 심사위원회는 면접 전에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들을 숙지해야 한다.

2. 노회의 심사는 후보자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후보자는 이미 노회의 관리를 받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시험은 이전의 인준 면접에서 얻은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다.

후보자가 안수 후보자로서 인준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노회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 노회는 후보자가 이전에 캐나다장로교회의 다른 노회에서 안수 인준 심사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가 다른 교단에서 교단 전입을 신청하는 경우, 노회는 후보자가 해당 교단의 선별 과정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 노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1. 후보자가 교회 사역에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2. 후보자가 목사직의 압박을 견디는 데 필요한 영적 및 개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가?

3. 후보자가 자신의 신앙을 진실하고 명료하게 통합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가?

4. 후보자에게 성장과 지속적인 개인적 발전의 증거가 있는가?
 5. 후보자의 신학이 개혁 전통에 부합하는가?
 6. 후보자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는가?
 7. 후보자가 대인 관계 기술을 잘 갖추었는가?
 8. 후보자가 캐나다 장로교회 내 의견 및 실천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4. 인터뷰는 질문, 토론, 사례 연구, 가상의 상황 등을 통해 정보를 이끌어내는 형태일 수 있다.

J-12 노회의 조치

1. 후보자는 심사 보고서가 고려될 때 노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1. 이 과정이 후보자가 수학 중일 때 이루어지면, 노회는 졸업을 조건으로 심사를 승인하고, 의장은 후보자에게 임시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중에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양식서 215.1).
 2. 206.2 항에 따라 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증을 받고 노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 의장은 출석한 후보자에게 이제 안수 후보로 인준되었으므로 청빙이나 단기임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다.
2. 서기는 후보자에게 인준서 발췌본을 발급한다.
3. 노회는 생명과 선교부의 목회 및 교회 사명국 담당 직원에게 인준된 모든 안수 후보자의 이름과 인준 날짜를 통보한다.
4. 생명과 선교부는 매년 총회에 모든 안수 인준 후보자의 명단을 보고하며, 이는 법령과 회의록에 포함될 것이다.

J-13 지위와 책임

1. 안수 후보자로 인준된 사람은 자신을 인준한 노회 범위 내에서 거주, 일 및/또는 공부하거나 해당 노회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한, 자신을 인준한 노회의 관할 하에 속한다.
2. 후보자가 자신을 인준한 노회의 경계를 벗어나 캐나다의 다른 곳에서 거주, 근무 및/또는 공부하는 경우 해당 관할 노회로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
3. 후보자는 노회의 회의 공지를 받을 수 있다.
4. 후보자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후 노회에서 지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는 인준된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의 지위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회해산 절차

1. 대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산 계획을 준비한다:
 - A. 해산 결정에 이르는 대회의 절차를 요약하는 서문.

- B. 대회가 관할하는 모든 자산 또는 부채를 관할 범위 내의 노회 또는 노회들에 양도.
 - C. 직원, 자산 및 현재 또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관할 노회에 이전.
 - D. 총회 관련 예산 항목을 관할 노회에 이전.
 - E. 연례 노회 간 회의 기록 검증 계획 (양식서 32).
 - F. 관할 구역 내 노회들 중에서 대회에서 임명된 총대들을 재분배하는 방식.
 - G. 대회 임명직을 지명위원회에 재분배하는 방식(양식서 제 288.1 항).
 - H. 대회 직원 또는 기타 총회 보조금에 대한 생명과 선교부와 협의.
- I. 향후 총회의 계획 수정 요청에 대한 노회 간의 협력 방식.
 - J.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대회는 이 계획을 관할 구역 내 노회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노회는 관할 구역 내 회중들과 협의한 후 승인, 수정 요청 또는 불승인을 표시하여 대회에 보고한다.
 3. 대회는 해산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하여 법안 및 헌의위원회를 통해 총회에 전달하여 최종 승인을 받는다.
 4. 총회는 해산 계획을 고려하고 특정 날짜에 해산을 승인하거나 계획을 대회로 되돌릴 수 있다.
 5. 총회가 승인한 후, 대회는 임명된 임원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고, 자선단체 지위를 취소하고 (적용되는 경우) 기타 법적 사항을 결론지어야 한다.
 6. 대회 회의록과 공식 보고서는 캐나다장로교회 기록 보관소로 이관하고 모든 법적 문서는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이관한다.

동성 결혼 및 LGBTQI 의 목사 안수에 관한 정책

2021 년 총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Barrier Act 에 따라 승인했다:

안건 B, 2019 – 결혼의 정의

캐나다 장로교회는 결혼에 대해 두 가지의 병행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언약 관계 또는 성인 두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회중, 당회, 장로 및 목사는 결혼에 대해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는다.

안건 C, 2019 – LGBTQI 의 목사 인준

회중과 노회는 LGBTQI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를 목사로 청빙하거나 안수할 수 있고 시무장로 선출하고 서임할 수 있으며, 목사 안수, 청빙 및 장로 임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양심과 행동의 자유가 부여된다.

